

연구보고 2016-03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현대호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6-03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현 대 호

전자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Legal Study on Fairness of Electronic
Commerce

연구자 : 현 대 호(선임연구위원)
Hyeon, Dae-Ho

2016.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오늘날 인터넷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기반의 보편적인 통신수단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거래도 급증하고 있음
- 전자상거래는 상품과 용역에서 디지털 콘텐츠로까지 거래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거래계약도 복잡화되고 있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적극 시장에 참여하는 현상도 나타남
-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하여 글로벌 수준에 맞게 국내법의 체계를 개선하고 소비자나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입법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전자상거래 국제규범의 동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OECD, EU 및 그 회원국(영국과 독일), 일본의 주요 법제를 분석함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의 입법사항에 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II. 주요내용

□ 법체계의 개선방안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칭)원격판매법(또는 (가칭)통신 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법’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

□ 주요 입법사항의 개선방안

○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정방안

- 법명의 변경과 함께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 통신판매중개 및 서비스제공자(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과 구매권유광고 등 정보사회서비스에 관련되는 공통의 입법사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
-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자율적 거래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되, 형벌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

○ 전자문서법의 개정방안

-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여 전자문서법으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

○ 전자서명법의 개정방안

- 글로벌 수준의 전자상거래를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폐지하거나(용도를 제한하거나)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일반전자서명의 효력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방안

-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정보사회서비스에 관련 공동된 입법사항(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광고메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포함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

○ 저작권법의 개정방안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입법 사항을 삭제하고 대신에 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

Ⅲ. 기대효과

-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입법방향 제시 및 기초자료 제공

○ 정부 및 국회에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된 국내법의 체계화와 입법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

-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집행에 기여

-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통한 국민경제의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시 정책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전자상거래,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법률, 전자서명

Abstract

I . Background and Purpose

Background of this study

- The Internet has become a common means of wired and wireless communication anyone can use anytime and anywhere. Recently, mobile-based transactions have surged as well.
- As the objects of transaction in the electronic commerce have expanded from products and services to digital contents, transactional contracts have grown complicated. In this situation, customers are also actively participating in the market practices of electronic commerce.
-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ought to contribute to the fairness of electronic commerce by improving the domestic legal regime in line with the global standards while organizing national legislations for a better understanding of consumers or business operators.

Purpose of this study

- In order to identify the trend of international electronic commerce rules and their implications, this study analyzed major legal regimes of the OECD, EU and its member states(UK and Germany), and Japan.

- Improvements have been presented in this study regarding legislations such as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Digital Signature Act,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Copyright Act.

II. Main Contents

Legal regime improvement

- For a fair electronic commerce, it is necessary to align the domestic legal regimes.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etc., needs to be refined into the Remote Sales Act (provisional title) (or Act on Telemarketing and Electronic Commerce (provisional title)).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needs to be improved to the Electronic Documents Act.

Specific improvements of each major legislation

-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Act on The Consumer Protection in Electronic Commerce.
 -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Act by changing its title and definition of electronic commerce. The electronic commerce definition needs to be changed into the activity of trading products, etc. in electronic trading methods.

- Remove the provisions on the duties of telemarketing brokerage and service providers (brokers) and common provisions on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such as soliciting advertisement. Instead, these need to be regulated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Revise the roles of government to more respect the self-regulatory market order while minimizing punishments.
-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Act on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 Remove the provisions on electronic transactions and newly incorporate the governmental roles on electronic documents to re-organize the Act.
-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Digital Signature Act
 - To facilitate world-class electronic commerce and foster fair trading order, it is necessary to abandon (limit the purposes of use of) the certified digital signature or equalize the effectiveness of the signature to that of general digital signature.
-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 It is necessary to amend the Act to include the common legislative aspects (service providers' duties, advertisement mai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etc.) regarding the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cluding electronic commerce.

- Improvement suggestions for the Copyright Act

- It is necessary to delete provisions on the duties of online service providers. Instead, incorporate these provisions in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III. Expected Effect

- Present legislative goals and basic materials to reinforce the fairness in electronic commerce
- Utilized as the basic materials in the domestic legal improvement efforts by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for electronic commerce fairness
- Contribution to job creation via enhanced national economy competitiveness as well as relevant government policy building and implementation efforts
- Utilized as policy materials in policy building necessary for national economic competitiveness reinforcement and job creation through electronic commerce activation

 **Key Words** : electronic commerce, electronic transactions, consumer protection, laws, digital signature

목 차

요 약 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16
제 2 장 전자상거래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19
제 1 절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쟁점	19
1.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최근의 주요 쟁점	19
2.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쟁점	23
제 2 절 일반거래에서 불공정행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23
1. 민법상 거래질서의 공정화	23
2. 각종 법률상 불공정행위의 규제와 주요내용	28
3. 시사점	34
제 3 장 전자상거래 관련 외국법의 체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37
제 1 절 개 관	37
제 2 절 OECD	37

1. 개 요	37
2. 주요내용	39
3. 시사점	40
제 3 절 유럽연합(EU) 및 회원국	41
1. 유럽연합	41
2. 영 국	44
3. 독 일	47
4. 시사점	55
제 4 절 일 본	57
1. 개 요	57
2. 특정상거래법 제2장 제3절 통신판매의 주요내용	60
3. 소비자계약법	64
4. 시사점	66
제 4 장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체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방안	69
제 1 절 개 관	69
제 2 절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법률의 변천과 주요사항	70
1. 개 요	70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과 주요내용	70
3. 전자문서법의 제·개정과 주요 내용	82
4. 전자서명법의 제·개정과 주요내용	96
5. 방문판매법의 전부개정과 시사점	101

제 3 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안)	104
1. 개 요	104
2. 제19대 국회에 상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05
3. 19대와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전자문서법의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10
4. 19대 국회에 상정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13
제 4 절 현행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법제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118
1. 개 요	118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120
3. 전자문서법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124
4. 전자서명법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125
5. 정보통신망법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126
6. 저작권법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127
제 5 장 결 론	129
참 고 문 헌	131

【부록 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OECD 권고	141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161
【부록 3】 영국의 전자상거래법제	197
【부록 4】 독일의 전자거래통합법(특정한 전자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률)	229
【부록 5】 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245
【부록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253
【부록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신구조문대비표 ...	275
【부록 8】 『전자서명법』의 신구조문대비표	295
【부록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315
【부록10】 『저작권법』의 신구조문대비표	32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인터넷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유·무선기반의 보편적인 통신수단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모바일을 통한 거래¹⁾도 급증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는 인터넷과 모바일 등 유·무선 통신에 기반을 둔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거래대상도 상품과 용역에서 디지털 콘텐츠로까지 확대됨에 따라 거래계약(매매계약, 제공계약, 이용허락계약)도 복잡화되고 있으며,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²⁾ 따라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는 전자적 거래방식의 다양화와 거래대상의 확대 등에 따라 어느 때보다도 강조되고 있고 국가경쟁력과 국민경제의 발달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소비자가 국경을 초월하여 해외에서 상품 등을 구매하는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상거래 거래질서를 국내시장에만 적합하도록 고집할 수 없으며, 관련 법제도의 개선과 새로운 IT 기술의 도입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었다.³⁾ 따라서 글로벌 전자상거래에 적합한 국내법의 개선이 필요하게 되었다.⁴⁾ 그런데, 우리나라의

-
- 1) 전자상거래의 유형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Kenneth C. Laudon, Carol Guercio Traver(김범수, 강현정, 문용은, 옥석재 옮김), 전자상거래, 시그마프레스, 2015. 13면~16면 참조할 것.
 - 2) 모바일 전자상거래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고희석,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조작실수방지의무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IT와 법연구 제7집, 2013. 117면~140면 참조할 것.
 - 3)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에 따른 법적 문제에 관하여는 이은영,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2015. 1면~27면 참조할 것.
 - 4)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하여는 박상철,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소위 '해외직구'와 '역직구'를 중심으로, 유통법연구 제2권제1호, 한국유통법학회, 2015.6. 156면~157면 참조할 것.

전자상거래사업자는 여전히 국내시장에 집착하고 있고 해외의 소비자가 적극 참여하는 글로벌 수준의 전자상거래 쇼핑몰(예컨대, e-bay, amazon 등)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에 관련한 법체계나 입법내용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사업자나 소비자가 관련 법령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정부규제 등도 강하게 작용하여 새로운 거래방식의 도입과 해외로의 시장개척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현상이 두드러진다.⁵⁾

이상과 같은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특성을 반영하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OECD, EU와 그 회원국(영국과 독일) 및 일본의 주요 법제를 분석할 필요가 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저작권법 등에서 나타난 체계상 및 내용상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을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확정하고자 한다. 먼저,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는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품이나 용역(서비스)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거래’를 의미하는 개념으로 사용하되,⁶⁾ 디지털콘텐츠 거래도

5)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문제점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은영,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결과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2.11. 1~2면 참조할 것.

6)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라는 용어가 법률상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고 ‘전자상거래’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즉 전자거래라는 용어는 (구)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4호에서 “전자거래라 함은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라는 개념정의를 통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담배사업법’ 등에서 거

포함하는 의미⁷⁾로 사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공정화(公正化)’라는 용어⁸⁾는 사전적인 의미에서 ‘거래질서를 공평하게 하다’ 또는 ‘거래질서를 평등하게 하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일반거래에서 공정화란 ‘거래질서를 공평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는데⁹⁾, 경우에 따라서는 사업자와 소비자간 또는 사업자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동시에 거래질서를 공평하게 한다는 의미로도 사용된다. 여기서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 또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포함하여 거래질서를 공평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래방식의 일종을 의미하는 용어로 전자거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다른 한편, ‘전자상거래’라는 용어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서 “전자상거래란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를 통하여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관세법’, ‘은행법’, ‘외식산업 진흥법’, ‘전자금융거래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스포츠산업 진흥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등으로 그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제외한 법률에서는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를 통하여 재화나 용역을 상업적(또는 영리적)인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 7)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는 CD 또는 DVD와 같은 유체적 저장장치에 담겨있는 경우 상품(물품)으로 취급된다(김진우, 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개념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덧붙여 -, 서울법학 제23권제2호, 2015. 119면).
- 8) 공정(公正)이라는 용어는 통상 ‘공평(公平)하다,’ 또는 ‘평등(平等)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현행법에서 ‘공정거래(fair trade)’에서의 ‘공정’이라는 용어는 ‘공평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 9) 예컨대, 현행법령에서 공정화(공정)는 일반거래와 관련해서 거래질서를 공평하게 한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공정(또는 공정화)’라는 단어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사업자 간의 공정화를 포함하여 거래질서 공정화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용된다. 다른 한편, ‘공정화(또는 공정)’라는 용어는 거래 이외에서도 사용되는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정한 채권추심’과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도 사용된다.

제1장 서론

제2장에서는 ‘전자상거래와 거래질서의 공정화’라는 제목 하에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쟁점, 일반거래에서 불공정행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외국법의 체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라는 제목 하에 OECD의 전자상거래권고, EU의 전자상거래지침, 영국과 독일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현황과 시사점, 일본의 전자상거래 관련 법제 현황과 시사점을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체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방안’이라는 제목 하에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법률의 제·개정과 주요내용, 19대와 20대 국회에 상정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현행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법제의 체계화와 개선방안을 살펴본다. 제5장에서는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 현행법의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한다.

제 2 장 전자상거래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제 1 절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쟁점

1. 전자상거래의 현황과 최근의 주요 쟁점

(1) 전자상거래의 현황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상품군별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즉 통계청 보도자료(< 표 1>)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규모가 2012년 34조원에서 2015년 53조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1 >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¹⁰⁾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컴퓨터 및 주변 기기	가전· 전자· 통신 기기	소프트 웨어	서적	사무· 문구	음반· 비디오 · 악기	의류 및 패션관련상품				
								의복	신발	가방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2012	34,068,231	3,079,221	3,751,205	65,183	1,272,781	414,799	141,643	5,609,523	-	-	-	-
2013	38,497,861	3,083,543	4,104,898	59,728	1,196,149	514,550	152,792	6,280,654	-	-	-	-
2014	45,302,487	3,413,900	4,962,096	58,431	1,280,404	470,926	162,549	7,346,479	5,111,328	846,577	622,277	766,297
2015p	53,933,733	3,604,719	5,880,319	60,359	1,150,897	460,386	169,036	8,463,852	5,839,194	940,261	785,119	899,277

※ p는 잠정치임.

최근에는 전자상거래가 모바일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그 규모도 상품별로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

10) 통계청 보도자료(2015년 12월 및 연간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1/3/index.board?bmode=read&bSeq=&aSeq=35131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최종방문 2016.10.30)

거래액 중 모바일거래액은 아래의 통계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3년 6.5조원에서 2015년 24조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 2 > 상품군별 모바일쇼핑 거래액¹¹⁾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컴퓨터 및 주변기기	가전·전자·통신 기기	소프트웨어	서적	사무·문구	음반·비디오·약기	의류 및 패션관련상품				
								의복	신발	가방	패션용품 및 액세서리	
2013	6,559,633	-	-	-	-	-	-	-	-	-	-	-
2014	14,869,803	497,573	1,356,133	5,244	221,499	61,950	32,360	2,924,868	2,088,386	339,390	217,154	279,937
2015p	24,426,591	870,100	2,235,335	8,478	279,249	108,120	53,839	4,599,233	3,224,974	511,379	401,421	461,458

※ p는 잠정치임.

(2)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최근의 주요 쟁점

(가) 전자상거래의 특성과 소비자 보호

전자적 방식의 거래가 가지는 다음과 같은 특성 때문에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따라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전자상거래는 장소적·시간적인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따라서 판매자가 어디에 있는지, 거래상대방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받는지 불분명한 경우가 발생한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전자계약이 체결되고 거래가 성립한다. 따라서 전자적 형태의 거래방식에 따른 문제로 계약의 성립시기, 계약서의 무형성, 상품 등의 확인 결여 등에 따른 각종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높다. 셋째, 전자상거래는 판매나 제공하는 대상이 상품이나 용역에서 디지털 콘텐츠로까지 확대

11) 통계청 보도자료(2015년 12월 및 연간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1/3/index.board?bmode=read&bSeq=&aSeq=35131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최종방문 2016.10.30)

된다. 따라서 오프라인의 거래 방식(대면거래)보다 복잡하고 다양한 계약(매매계약, 제공계약 또는 이용허락계약)이 체결될 수 있으며 보다 많은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넷째, 전자상거래는 판매자가 직접 소비자 등에게 상품 등을 배송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의 경우 배송업자를 통하여 상품 등을 인도하게 된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상품 등에 하자가 발생하거나 오배송의 문제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은 모바일 거래의 특성, 즉 상품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이나 표시 등에 취약하고 충동적 구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동기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 등에서 소비자와 사업자간에 공정한 거래질서의 마련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¹²⁾ 국회의 정책자료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구제 건수와 전년대비 증가율 등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표 3 >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피해 접수현황¹³⁾

(단위: 건)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건수	4,467	4,561	5,195
전년대비 증가율(%)	4.1	2.1	13.9
전체 피해구제 중 전자상거래 피해구제 비중(%)	15.1	16.3	15.7

12)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기기의 경우 화면 크기 등 물리적 제약이 있을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7조에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본다(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대한 OECD 이사회 권고’에 관련 보도자료(2016.3.31.)

(http://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6650&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1&searchVal=전자상거래&startdate=&enddate= 최종방문 2016. 10.30.).

13) 박대동, 전자상거래 동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정책자료집), 국회, 2015. 5면.

(나) 전자상거래의 발달에 따른 주요쟁점

올해 OECD의 전자상거래권고¹⁴⁾에서 나타난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 쟁점을 요약하여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아래 도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는 인터넷에서 모바일을 활용한 거래로 확대되고 거래 대상도 상품이나 용역에서 디지털 콘텐츠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가 소극적인 소비주체에서 적극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행위자로 역할을 하고 있다(소비자의 추천 등). 이 밖에도 온라인 환경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및 아동의 보호 문제가 어느 때보다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 표 4 > 전자상거래 관련 주요이슈¹⁵⁾

구 분	내 용
BtoC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온라인 광고나 결제 등의 영역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출현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대두
모바일 거래의 출현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기반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출현
판매자로서의 소비자 등장	BtoC 뿐만 아니라 CtoC 규모가 증가하면서 새로운 소비자문제 발생
디지털재화로의 확대	디지털재화(영화, 음악, 게임 등)의 규모 확대
소비자의 참여	소비자가 사회관계망 등에서 후기 및 평가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
온라인에서의 아동보호	아동의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법적 지위, 프라이버시 등 온라인에서 아동 보호 필요성 증대
전자상거래에서의 신뢰확보	지속가능한 전자상거래 시장 환경을 위한 사업자, 소비자의 신뢰관계 형성·유지 필요성

14)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http://www.oecd.org/sti/consumer/ECommerce-Recommendation-2016.pdf> 최종방문 2016.10.30.)

15) 이금노·황미진, 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연구(정책자료집), 한국 소비자원, 2016. 35면.

2.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쟁점

전자상거래는 전자거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상품과 용역을 포함하는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에 따라 규율되며 이들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입법사항이 전자상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사항에 대한 체계화를 통하여 글로벌 수준의 전자상거래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것이 하나의 큰 쟁점에 해당되며, 이와 관련된 법체계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요구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입법사항이 적절한가 라는 것이 또 하나의 큰 쟁점이 된다. 즉 이들 법률의 입법사항이 통일적으로 상호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아니면 중첩적이거나 중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에 관한 입법사항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제 2 절 일반거래에서 불공정행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1. 민법상 거래질서의 공정화

(1) 개 요

민사거래는 당사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거래 내용과 거래 상대방을 선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법은 계약내용이나 거래

방법 등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또는 거래당사자의 현저히 불리한 상황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거래의 실효성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즉 민사거래는 거래당사자 간 대등한 지위에서 각자의 합리적(이성적) 판단에 따라 거래내용이 결정되는 것을 전제한다. 그리고 민법은 계약이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체결된 경우 민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한 그 계약에 따른다. 이 경우 거래의 공정성 판단은 민법의 개별조항에 따른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와 민법의 일반조항에 따른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후자의 조항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예컨대, 전자에는 민법 제607조와 제608조의 소비대차에 관한 강행규정, 민법 제652조의 임대차에 관한 강행규정 등이 해당되고, 후자에는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위반에 관한 강행규정,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강행규정 등이 해당된다. 이들 강행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행위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는 민법 제103조 및 민법 제750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한편, 민법에서 전제하고 있는 사인 간의 거래질서 공정화는 민법 이외의 많은 민사특별법에 따라 보완 내지는 수정된다. 예컨대, 소비자계약의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거래주체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기본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조항을 마련하고 있다.

(2)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된 일반조항

민사거래에서 거래공정화와 관련된 법률은 크게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와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로 구분되며, 이들 조항에 위반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민사거래에서 불공정한 거래행위가 민법 제103조 또는 제104조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더 나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되어 손해배상책임까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거래의 법적 효력에 차이가 발생한다.

(가) 민법 제103조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선언하여 사회의 객관적 가치(또는 거래질서)를 존중한다. 여기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사회질서의 근간에 반하는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그 법률행위가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와 상대방에게 표시되거나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도 포함한다.¹⁶⁾

따라서 민법 제103조는 사회의 객관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를 무효화시킨다. 즉 민법 제103조는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정화 기준에 해당된다.

(나) 민법 제104조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행위’라는 제목하에 「당사자의 궁박(窮迫), 경솔(輕率) 또는 무경험(無經驗)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¹⁷⁾

16) 대판 2009.9.10. [2009다37251]; 현대호, 민법총칙, 동방문화사, 2015. 131면.

17) 현대호, 위의 책, 136면.

이 경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음을 모두 입증하여야 한다.¹⁸⁾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먼저,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공박·경솔 또는 무경험 중 어느 하나에 기인하여야 한다.¹⁹⁾ 여기서 ‘공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 경제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고, 정신적 또는 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공박의 상태에 있는지 여부는 그의 신분과 재산상태 및 그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등 제반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²⁰⁾ 다음으로, 당사자의 주관적 요건과 함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어야 한다.²¹⁾ 여기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시가와의 차액 또는 시가와의 배율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체적·개별적 사안에 있어서 일반인의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한다.²²⁾

(다)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를 불법행위라 한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와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분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불법행위의 유형과 성립요건에 대하여

18) 대판 1970.11.24. [70다2065]

19) 당사자 일방의 공박, 경솔, 무경험은 모두 구비하여야 하는 요건이 아니고 그중 어느 하나만 갖추어져도 충분하다(대판 1993.10.12. [93다19924]).

20) 대판 1992.4.14. [91다23660]; 현대호, 위의 책, 137면.

21)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공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대판 2010.7.15. [2009다50308]).

22) 현대호, 위의 책, 138면.

는 침묵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민법 제750조의 태도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불법행위에 유연하게 대응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³⁾ 민법 제750조에서 불법행위는 그 결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다. 다만, 불법행위의 경우 그 침해가 계속되고 있거나 원상회복이 필요하면 침해제거청구가 허용되고 드물게는 침해예방청구도 가능하다. 우리나라의 민법은 제214조의 소유물방해제거 및 방해예방청구권(금지청구²⁴⁾)과 같이 소유권을 중심으로 한 배타적 권리를 중심으로 입법화되어 있다.²⁵⁾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는 4가지의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한다.²⁶⁾ 첫째, 유책성(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둘째, 위법행위이어야 하며, 셋째, 위법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넷째, 손해가 발생하여야 한다. 여기서 민법 제750조의 ‘위법행위’는 ‘배타적인 권리침해²⁷⁾’, ‘개인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법규의 위반행위²⁸⁾’ 및 ‘고의에 의한 선량한 풍속의 위반행위²⁹⁾’를 말한다.³⁰⁾ 판례는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에 대하여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23) 현대호, 채권법, 동방문화사, 2015. 358면.

24) 민법 제764조에서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특칙으로 일종의 금지청구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았다(헌재 1991.4.1. [89헌마160]).

25) 현대호, 위의 책, 361면.

26)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현대호, 위의 책, 359~363면 참조.

27) 여기서 ‘배타적 권리’란 생명·신체·건강·자유·소유권 및 지식재산권과 같은 절대적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를 의미한다(현대호, 위의 책, 361면).

28) 여기서 ‘타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모든 사법과 공법(특히, 형법)을 의미하며, 단순한 공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아니한다(현대호, 위의 책, 361면).

29) 이 불법행위는 배타적 법익의 침해가 아니라 순수한 경제적 이익의 침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0) 현대호, 위의 책, 358면.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³¹⁾ 위법행위는 보호법익에 따라 입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³²⁾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적 불법행위가 포함된다. 불공정거래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은 ‘고의에 의한 선량한 풍속위반’에 기반을 둔 경제적 불법행위로 볼 수 있다. 여기서 경제적 불법행위는 ‘허위표시에 관련된 불법행위’와 ‘부정한 수단 사용에 관련된 불법행위’로 구분할 수 있고, 이들 불법행위는 다시 세부적인 불법행위로 유형화할 수 있다.³³⁾ 전자의 경우에는 사기·침해적 허위표시·사칭의 불법행위가 있고, 후자의 경우에는 ‘공모’·‘협박’·‘계약위반의 유인’ 및 ‘부정한 수단을 이용한 영업의 간섭’ 등이 있는데,³⁴⁾ 아래에서 살펴보는 각종 법률상 불공정행위는 판례가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경제적 불법행위에서 발달된 불공정행위로 볼 수 있다.

2. 각종 법률상 불공정행위의 규제와 주요내용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중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는 판례가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인 사건별로 규제하는 방식에 해당된다. 오늘날처럼 시장경제에 기반을 둔 발달된 거래환경에서는 법률에서 구체적인 불공정행위의 유형과 그 성립요건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대표적인 법률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관련 행위 전체를 일체로만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개별적·상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어느 시설을 적법하게 가동하거나 공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로부터 발생하는 유해배출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위법성을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그 유해의 정도가 사회생활상 통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것인지 여부이다(대판 2003.6.27. [2001다734]).

32) 현대호, 위의 책, 361면.

33) 현대호, 위의 책, 363면.

34) 현대호, 위의 책, 363면.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이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상의 불공정행위는 공정거래법의 불공정행위를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불공정행위

공정거래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는 것을 규율하는 동시에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참조). 이 법은 ‘독점거래규제’라는 정책적인 차원의 금지규정과 ‘불공정행위’라는 불법행위를 규제하는 차원의 금지규정을 동시에 담고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중에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불법행위, 즉 경제적 불법행위에 기초하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은 제4장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과 제5장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들 금지행위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손해배상책임, 형벌 등이 부과된다.

먼저, 이 법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i)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ii)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iii)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iv)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

한하는 행위 (v)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vi)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vii)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등을 설립하는 행위 (viii)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競落者), 투찰(投札)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 (ix)이들 외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하거나 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공정거래법 제19조제1항 참조).

다음으로, 이 법에서 불공정거래행위로 다음을 열거하고 있다. 즉 사업자는 (i)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ii)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iii)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iv)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v)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vi)부당하게 ①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또는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vii)이들 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 참조).

(2) 그 밖의 법률상 불공정행위

(가) 하도급법의 불공정행위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즉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서 출발한 불공정행위로 하도급계약에서 나타난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유형을 명시하고자 제정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은 일본의 하청법(하청대금지불지연 등 방지법)과 달리 공정거래법과는 특별법관계로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하는 경우 하도급법에 따른 시정권고 이외에 시정 명령,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손해배상책임,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³⁵⁾

하도급법에서 불공정행위는 부당한 특약의 금지,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부당반품의 금지,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 청구의 금지,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부당한 경영간섭의 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탈법행위의 금지 등에 의해 금지된 행위를 원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하는 것을 의미한다.

(나) 표시광고법의 불공정행위

표시광고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

35) 우리나라의 하도급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의 적용을 배제한다. 즉 우리나라의 경우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은 특별법 관계에 있으며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이 배제된다. 그렇지만 일본의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법에 따라 원사업자에게 권고를 하면, 대부분의 경우 원사업자는 이에 따른다. 왜냐하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적독점 금지 및 공정거래 확보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 등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참조). 이 법에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임시중지명령, 과징금, 손해배상책임, 형벌 등이 부과된다.

여기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i)거짓·과장의 표시·광고 (ii)기만적인 표시·광고 (iii)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iv)비방적인 표시·광고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표시광고법 제3조제1항 참조).

(다) 대규모유통업법의 불공정행위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에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참조). 이 법은 하도급법과 유사하게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및 제5호(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와 특별법 관계가 성립한다. 이 법은 공정거래법 2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즉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와 같은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즉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불공정행위를 대규모유통업에 그 유형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법률에 해당된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불공정행위로 ‘상품대금 감액의 금지’(같은 법 제7조), 상품판매대금의 지급(같은 법 제8조), 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같은 법 제9조), 상품의 반품 금지(같은 법 제10조),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같은 법 제11조), 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같은 법 제12조),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같은 법 제13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같은 법 제14조),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같은 법 제15조), 매장 설비비용의 보상(같은 법 제16조), 상품권 구입 요구 금지 등(같은 법 제17조), 불이익 등 금지(같은 법 제18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형벌, 손해배상책임, 과태료 등을 부과한다.

(라) 대리점법의 불공정행위

대리점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금지시키하고자 하는 법률이다. 이 법은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행위, 즉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대리점거래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행위로 규정하고자 하며, 공정거래법과 특별법관계가 성립한다. 이 법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이 법에 따라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과태료,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된다.

대리점법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구입강제 행위의 금지’(같은 법 제6조),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행위의 금지’(같은 법 제7조), ‘판매목표 강제 행위의 금지’(같은 법 제8조),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같은 법 제9조), ‘경영활동 간섭 금지’(같은 법 제10조), ‘주문내역의 확인요청 거부 또는 회피 금지’(같은 법 제11조), ‘보복조치의 금지’(같은 법 제12조)를 규정하고 있다.

(마) 가맹사업법의 불공정행위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불공정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참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가맹사업거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한한다)·제3호(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에 한한다)·제4호(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제5호(거

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에 한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법은 공정거래법과 특별법관계가 성립하며, 이 법의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시정권고, 시정조치, 과징금, 형벌, 과태료, 손해배상책임 등이 부과된다.

가맹사업법은 불공정거래행위로 가맹본부가 (i)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ii)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iii)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iv) 계약의 목적과 내용, 발생할 손해 등에 비하여 과중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v)이들 외의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가맹본부의 가맹점사업자를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등 가맹사업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한다(같은 법 제12조제1항 참조). 또한 이 법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등(같은 법 제12조의2),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같은 법 제12조의3),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같은 법 제12조의4)를 규정하고 있다.

3. 시사점

이상 살펴본 사항 중에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법 제104조는 민법 제정당시의 거래환경에서 나타난 사인간의 불공정한 행위를 전제하고 있어서 다른 불공정행위 등에 확대하여

적용할 여지가 높지 않다. 민법 제103조는 전자상거래의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계약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일반조항으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민법 제103조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도 당사자의 의사나 매매계약에 따라 해결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대하여 계약의 공정성과 위법성 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작용한다.

둘째, 민법 제750조는 민법 제103조 등에 위반하는 위법행위가 불법행위에까지 도달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운다. 전자상거래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불법행위(사기, 부실표시 등)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가 적용되고, 나아가 민법 제750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불공정행위 등도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민법을 대신하여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시도하고 있는 각종의 민사특별법이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관련 민사특별법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거래질서 공정화를 위한 입법사항도 규정하고 있다.

셋째, 민법 이외에 특별하게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민사특별법으로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표시광고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에서 분야별로 거래의 공정성을 보충 내지 보완하는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다면 전자상거래사업자 간에도 이들 특별법과 유사한 법률이 필요한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에서 사이버몰판매 중개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19대 국회에서 ‘사이버몰판매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 추진된 사례도 있지만, 전자상거래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입법 필요성은 낮다고 보여진다(자세한 것은 아래에서 별도로 다룬다).

넷째,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는 민법이나 민사특별법으로 규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문서법, 전자서명법, 정보

제 2 장 전자상거래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통신망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상품 등의 거래질서에 관한 공정화 규정이 필요하며, 아래에서는 이들 법률에서 나타난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입법사항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고찰하는 것이 요구된다.

제 3 장 전자상거래 관련 외국법의 체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제 1 절 개 관

오늘날 전자상거래는 국경이나 장소를 전제하는 거래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전세계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거래방법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더욱 더 글로벌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내의 산업을 발달시키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수준에 적합한 전자상거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전자상거래는 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발달하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한정하여 외국의 입법례 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즉 OECD와 EU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권고 및 지침을 고찰하고 전자상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행 중인 영국과 독일 및 일본의 법규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 2 절 OECD

1. 개 요

OECD는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번째 국제적 법적 지침(이하 “1999년 권고”)을 1999년에 채택하였으며, 이 이후에도 전자상거래는 엄청난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따라서 OECD이사회는 2016년 3월 24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권고’(이하 “OECD권고”라 한다)를 통하여 최신의 동향과 역동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문제를 다루게 되었으며, 국경 없는 세계에서 전자상거래의 가능성에 주목하게 되었다. OECD권고의 서문에서 밝힌 개정이유와 경과에 대하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9년 OECD권고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핵심적 내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및 광고 관행, 영업, 상품 및 서비스, 적절한 분쟁해결 수단과 손해배상시스템을 포함한 절차, 결제대금 보호수단, 사생활 보호에 관한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조하였다. 또한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2008년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각료들의 권고에 따라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 기회를 더욱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9년 권고에 관한 개정 검토에 착수하였다.

2009년 워싱턴DC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리 증진: 인터넷 경제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소비자정책에 관한 OECD소비자정책위원회(Committee on Consumer Policy ; CCP)는 모바일과 온라인 결제,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구매 그리고 참여형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동향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 작업을 통하여 가격경쟁에 관한 선택의 폭 확대 또는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방법 제공 등 전자상거래가 지난 십년간 소비자에게 가져다 준 많은 장점들이 밝혀졌다.

그렇지만 온라인 환경과 소비자 관련 위험도 지적되었다. 예컨대, 모바일 결제나 선불카드 같은 비전형적인 결제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 또는 웹(Web)·전자책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이해하는 데에 여러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OECD소비자정책위원회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모바일 기기를 활용하는 경우 그동안의 경험에 기초하여 전자상거래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OECD는 전자상거래에서 효과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9년 권고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 주요내용

2016년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권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자세한 것은 “[부록 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OECD 권고”의 번역문을 참조).

첫째, 비금전적 거래를 포함시켰다. 즉 소비자들은 자신의 개인적 정보를 교환하는 대가로 “무료” 상품과 서비스를 취득할 수 있는데, 이러한 거래는 향후 명시적으로 이 권고의 범위 안에서 다루게 된다. 이 권고는 각국의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비금전적 거래로 피해를 받은 소비자들에게 배상 조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둘째,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시켰다. 즉 디지털 콘텐츠를 포함하는 거래는 종종 기술상으로 또는 계약상으로 접근이나 사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나타나고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들 제한에 대하여는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추가하였다.

셋째, 참여형 소비자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즉 오늘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는 상품의 홍보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소비자의 등장으로 사업자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권고의 적용 범위에 참여형 소비자의 활동까지 포함시켰으며 참여형 소비자의 활동을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하였다.

넷째, 모바일 기기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켰다. 즉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기기의 사용 증가에 대응하여(예를 들어, 작은 스크린 위에) 정보 공개를 효과적으로 하고 소비자가 정보를 저장하도록 해주어야 하는 몇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 권고는 기술상 제한이나 사용 기기의 특수한 성질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2개의 새로운 규정을 포함시켰다.

다섯째, 사생활 침해와 보안상의 위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였다. 즉 소비자 정보는 많은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며 사생활 침해와 보안상의 위험을 증대시킨다. 따라서 이 권고는 다른 OECD지침과 일관되게 이러한 위험성을 제시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B2C 전자상거래에서 특별한 보호책을 강조하는 2개의 새로운 규정을 포함시켰다.

여섯째, 결제대금 보호를 강화하였다. 즉 이 권고는 결제대금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유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전체 결제시스템에 걸친 소비자 보호의 최소 단계를 함께 개발하도록 요구하였다.

일곱째, 상품 안전성에 관한 사항을 강화하였다. 즉 몇몇 나라에서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리콜이 된 불안정한 상품들이 전자상거래에서 판매가 가능하다. 불안정한 상품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해당 기업은 관련 기관과 함께 문제 상황을 공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새 규정이 추가되었다.

여덟째, 이 권고에서는 몇몇 규정을 개선하였다. 하나는, 소비자보호 기관의 본질적 역할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권한의 강화 필요성, 정보교환 및 국제거래에서의 협력에 관련되어 있다. 다른 하나는, 정보와 행동경제학에서 도출된 통찰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이 분야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증 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3. 시사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OECD전자상거래권고는 OECD회원국이 자국의 국내법과 관련 정책 등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

로 참고하는 것에 해당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문서법,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매매방지법”이라 한다), 아동·청소년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정보보호법”이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등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문제에 대하여 나름 구체적인 조항으로 OECD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법체계상 전자거래 일반에 관한 사항과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사항이 법률마다 산만하게 규정되어 있거나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정부규제가 다른 외국과 비교하여 과도하거나 중첩되는 문제점이 있다.

제 3 절 유럽연합(EU) 및 회원국

1. 유럽연합

(1) 개 요

유럽연합은 유럽 내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소비자계약이나 전자상거래 등에서 나타난 다양한 불공정한 거래행위로부터의 소비자 보호와 회원국 간의 통일적인 규율을 위하여 다양한 지침을 제정하여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소비자계약에서의 부당조건에 관한 1993년 4월 5일 위원회 지침(93/13/EEC), 원격계약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지침(97/7/EC), 허위경쟁 광고에 관한 1984년 9월 10일 위원회 지침(84/450/EEC), 패키지여행 또는 패키지 휴가에 관한 1990년 7월 13일 위원회 지침(90/314/EEC) 등이 있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 측면에 대한 2000년 7월 8일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2000/31/EC)”도 유럽연합 내의 회원국에게 국내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³⁶⁾

유럽연합은 EU전자상거래지침을 통하여 유럽에서 국경에 관계없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유럽국민 간의 정보사회서비스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또한 정보사회에서의 전자상거래 발전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유럽 내 회사들의 경제성장 및 투자를 촉진하며 유럽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보았다.³⁷⁾ 이 지침은 유럽 내의 시장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며, 회원국 사이의 정보사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EU전자상거래지침의 주요내용

이 지침은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이 지침 제1장에서는 총칙에 해당하는 일반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제1조에서는 이 지침의 목적과 적용범위를, 제2조에서 용어 정의를, 제3조에서 역내시장에서 회원국의 역할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둘째, 이 지침 제2장(‘일반원칙’)에서는 제1절 정보(제4조에서 사전인가의 금지 원칙, 제5조에서 일반적인 정보제공)를, 제2절 상업통신(제6조에서 정보제공, 제7조에서 원하지 않은 상업통신, 제8조에서 규제된 직업)을, 제3절 전자매체로 체결된 계약(제9조 계약의 체결, 제10조 정보제공, 제11조 주문)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제3장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12조 단순한 정보전송서비스, 제13조 일시저장서비스, 제14조 호스팅서비스, 제15조 일반적인 감시의무 배제)을 규정하고 있다. 넷째, 이 지침 제4장(집행)에서는

36) [부록 2] EU전자상거래지침 참조.

37) [부록 2] EU전자상거래지침 참조.

제16조에서 행위규정을, 제17조에서 재판외 분쟁조정을, 제18조에서 법원의 조치를, 제19조에서 협력을, 제20조에서 제재를 규정하고 있다. 다섯째, 이 지침 제5장(보칙)에서는 제21조에서 제조사를, 제22조에서 교환을, 제23조에서 이 지침의 효력발생을, 제24조에서 이 지침의 공표를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자세한 것은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의 번역문을 참조).

첫째,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 활동에 사전적인 허가나 이와 유사한 정부규제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와 관계 기관이 쉽고,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①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② 서비스 제공자의 주소, ③ 전자메일을 포함하여 신속하게 연락 가능한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의사소통 방법 등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세부 사항, ④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자 등록이나 유사 등록을 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 내용 및 등록 번호 또는 이와 유사하게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상업통신의 경우 ① 명백하게 상업통신이라고 인식 가능할 것 ② 통신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을 명백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이 지침에 따라 전자메일을 통하여 요청하지 않은 상업통신을 허용한 회원국들은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상업통신을 수신자가 받는 즉시 명백하고 분명하게 상업통신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다섯째,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허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회원국은 전자계약에서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전자계약의 체결에 장애가 되거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법적 효과와 유효성을 박탈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섯째,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전자계약 체결시 일정한 정보를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분명하게 이용자의 주문 이전에 서비스제공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일곱째,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이용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주문하는 경우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① 수신자의 주문에 대한 수신 확인과 ② 당사자가 주문과 수신 확인에 접근할 수 있는 때에 수신한 것으로 간주된다는 원칙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여덟째,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중개서비스제공자의 책임으로 단순전송(mere conduit), 캐싱(Caching) 및 호스팅(Hosting)에 따라 책임을 구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아홉째,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은 서비스제공자가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정보에 대한 일반적인 감시의무나 불법행위처럼 보이는 사실이나 상황을 찾기 위한 일반적인 검열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열 번째, 이 지침에 따라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른 국내이행법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수단을 도입하되, 그 제재는 효율적이고 비례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2. 영 국

(1) 개 요

영국의 경우 2014년 이전까지는 원격판매규칙(Distance e-Selling Regulation 2002)과 전자상거래규칙(E-commerce Regulation 2002), 방문

판매규칙(Off- Premises Regulation 2008)이 있었다. 2014년 이후에는 소비자계약(정보, 철회, 추가적 부담)규칙(Consumer Contract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이 발효되면서 원격판매규칙과 방문판매규칙은 폐지하였다. 2015년부터는 ① 소비자계약(정보, 철회, 추가적 부담)규칙과 ② 전자상거래규칙으로 구분되어 전자상거래를 규율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2015년에 제정된 소비자권리법(Consumer Right Act 2015)은 변심에 의한 철회 이외에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오배송 등을 이유로 한 철회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2002년 전자상거래규칙의 주요내용

2002년 전자상거래규칙은 EU전자상거래지침에 따라 전자상거래와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자세한 것은 “[부록 3] I. 2002 전자상거래규칙 (2002 No. 2013 전기통신)”의 번역문을 참조).

첫째,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온라인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여야 할 일반정보에 대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예컨대,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 집행기관이 쉽게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i) 서비스제공자의 이름 (ii)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주소 (iii) 서비스제공자와 신속하게 연락하고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전자메일주소를 포함한 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세부 사항 (iv) 일반에 공개된 서비스제공자의 사업자 등록 등에 관한 세부 사항과 등록번호 기타 확인할 수 있는 수단 등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품 등의 가격, 관련 세금 및 배송비 등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둘째, 상업적인 목적으로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할 것과 원하지 않는 메일을 보내는 경우에

수신자에게 상업통신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셋째, 소비자와 서비스제공자 간에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입력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넷째,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콘텐츠에 대한 면책과 관련하여 단순 전송, 캐싱(Caching), 호스팅(Hosting)으로 구분하여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3) 2013년 소비자계약규칙의 주요내용

2013년 소비자계약규칙의 주요내용은 판매자가 거래 이전에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할 정보의 내용, 그 정보의 제공 방식, 통신판매 또는 방문판매에서 변심한 소비자의 권리(철회권), 기본 옵션에 대한 추가적 부담 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다(자세한 것은 “[부록 3] II. 2013년 소비자계약규칙 제2장 제3절 철회권”의 번역문을 참조).

특히, 이 규칙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원격계약 및 영업장소 이외의 장소에서 체결된 계약에 적용된다. 이 규칙에 따라 소비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4일의 철회기간 내에서 어떤 이유나 추가비용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원격계약 및 영업장소 외 계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정보제공의무 위반에 따라 철회기간을 연장하는 예외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규칙에 따라 소비자가 철회권을 행사하면 계약상 당사자의 의무는 종결되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배송비를 제외한 소비자로부터 받은 모든 비용을 환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는 상품을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곤란한 상품은 사업자가 수거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의 경우 철회기간 동안에는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서비스 공급을 요청한 경우 외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계약에서도 소비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없는 한 철회기간

내에 제공할 필요가 없으며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에 합의한 경우 철회권은 상실된다.

3. 독일

(1) 개요

독일은 EU지침을 국내법화하기 위하여 2001년에 전자상거래법(Elektronischer-Geschäftsverkehr-Gesetz: EEG)³⁸⁾을 제정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연방법과 주법을 통일적으로 규율하였다. 이 법은 전기통신서비스법(Teledienstegesetz), 민사소송법 및 전기통신서비스데이터보호법(Teledienstdatenschutzgesetz)을 개정하는 일종의 일괄개정법률로 입법화되었다. 이후에 독일은 ‘2001년 전자거래법’을 대신하는 ‘2007년 전자거래통합법(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Elektronischer-Geschäftsverkehr-Vereinheitlichungsgesetz(EIGVG))’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전기통신서비스법(Telemediengesetz; TMG), 청소년보호법(Änderung des Jugendschutzgesetzes), 접근통제서비스보호법(Änderung des Zugangskontrolldiensteschutz-Gesetzes) 및 서명법(Änderung des Signaturgesetzes)을 개정하는 일괄개정법률에 해당된다(자세한 것은 “[부록 4] 독일의 전자거래통합법(특정한 전자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률)³⁹⁾”의 번역문을 참조).

38) 독일의 2001년 전자상거래법(Elektronischer-Geschäftsverkehr-Gesetz: EEG)의 번역문은 현대호,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부록 II]을 참조할 것.

39)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Elektronischer-Geschäftsverkehr-Vereinheitlichungsgesetz EIGVG)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웹사이트 (<https://www.gesetze-im-internet.de/aktuell.html> 최종방문 2016.10.30.)

독일의 경우는 2001년 11월 26일의 채권현대화법(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에 의한 민법전의 개정으로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통신수강자법(Gesetz zum Schutz der Teilnehmer am Fernunterricht), 방문판매법(Gesetz über den Widerruf von Haustürgeschäften und ähnlichen Geschäften), 소비자 신용법(Verbraucherkreditgesetz), 주택의 정기이용권의 양도에 관한 법률(Gesetz über die Veräußerung von Teilzeitungrechten an Wohngebäuden), 원격판매법(Fernabsatzgesetz) 등 민사특별법을 민법전으로 편입하였고,⁴⁰⁾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소비자계약을 민법전에서 규율하는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여 왔으며, 통신판매와 전자거래도 민법전으로 편입하였다.⁴¹⁾

(2) 전자거래통합법

(가) 제정의 경과

2004년 연방정부와 주 정부는 미디어관련 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통신서비스(Teledienst) 및 미디어(방송)서비스(Mediendienst) 규정을 연방의 통신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으로 통합하자는 것에 의견을 합치하고 ‘특정전자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률; (약칭)전자거래통합법’을 제정하게 되었다.⁴²⁾ 이 법률은 제정 이전인 1997년에 연방차원에서 ‘정보통신서비스법’(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Gesetz: LuKDG)과 통신서비스법’(Gesetz über die Nutzung von Telediensten: Teledienstgesetz)으로, 주(州) 차원에서 ‘미디어서비스-주간(州間)협약’(Mediendienste-Staatsvertrag: MDStV)으

40) 독일의 소비자계약 관련 법률의 민법전 편입에 관한 자세한 것은 양창수, 독일의 새로운 민법개정제안, 서울대학교법학 제41권제4호, 2001. 121~122면을 참조할 것.

41) 현대호, 위의 보고서, 15면.

42) Drucksache 556/06, s.1

(<https://www.uni-hamburg.de/elearning/hoou-alt/drucksache-20-14262.pdf> 최종방문 2016.10.30.)

로 제정되어 시행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연방국가의 특성상 통신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가 각각 연방과 주의 고유입법권한에 귀속되는 상황에서 ‘통신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주간협약’은 통신과 미디어의 융합 영역에서의 규율에 관한 연방과 주의 관할권을 둘러싼 헌법문제를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⁴³⁾ 이에 대응하는 조치로서 연방과 주의 고유한 관할권을 고수하면서 통신·미디어 융합서비스 영역만을 관장하는 ‘전자거래통합법’이 연방영역에서 제정되었으며, 주 영역에서는 ‘제9차 방송주간협약(9. Rundfunkänderungsstaatsvertrag)’의 개정이 이루어졌다.⁴⁴⁾

전자거래통합법은 주로 ‘유럽전자상거래지침(E-Commerce-Richtlinie)’⁴⁵⁾을 내부화한 법률에 해당하는 기존의 ‘통신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 - 주간협약(MDStV)’ 상의 경제 관련 규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의 제정에 따라 통신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는 “통신미디어”라는 개념으로 통합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통신서비스와 미디어서비스의 분리로 인하여 복잡하게 규율되었던 적용영역을 단순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⁴⁶⁾

43) Drucksache 556/06, S.13

(<https://www.uni-hamburg.de/elearning/hoou-alt/drucksache-20-14262.pdf> 최종방문 2016.10.30.); 홍승희, 독일의 인터넷콘텐츠 규제와 형법의 역할, 원광법학 제28권 제1호, 2012, 330면; 김기영, 독일 통신미디어법의 새로운 틀과 전망,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2009, 1~2면.

44) Drucksache 556/06, S.14.

(<https://www.uni-hamburg.de/elearning/hoou-alt/drucksache-20-14262.pdf> 최종방문 2016.10.30.)

45) Richtlinie 2001/31/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08. Juni 2000 über bestimmte rechtliche Aspekte der Dienste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sbesondere des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s, im Binnenmarkt(“Richtlinie über den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46) Drucksache 556/06, S.14.

(<https://www.uni-hamburg.de/elearning/hoou-alt/drucksache-20-14262.pdf> 최종방문 2016.10.30.)

(나) 주요내용

전자거래통합법은 조항법(Artikelgesetz)이며, 제1장(Artikel)은 이 법의 핵심내용으로서 ‘통신미디어법’ 제정에 관한 내용으로 총 16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청소년보호법’⁴⁷⁾ 개정, 제3장에서는 ‘접속통제서비스보호법(Zugangskontrolldiensteschutzgesetz: ZLDSG)’의 개정, 제4장에서는 ‘전자서명법(Signaturgesetz)’의 개정, 그리고 마지막 제5장에서는 이 법 효력의 발생 및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통신미디어법’의 제정과 관련하여 거주지원칙, 허가제 배제, 정보제공의무, 책임 관련 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은 유럽전자상거래지침에서 제시되었던 요구사항을 내부화한 것으로 ‘전자거래통합법’의 주요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통신서비스 및 미디어서비스에 관련한 데이터보호규정도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또한 통신서비스법, 통신서비스정보보호법(Teledienstdatenschutzgesetz) 등 기존 규정의 통합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그 동안 문제되었던 방송과 통신영역의 경계부분에 있는 융합서비스를 이 법에서 새롭게 규율하였다는 것이다.⁴⁸⁾ 이 법은 특별한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는 이메일 광고에 있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성요건(스팸 메일 방지 기능)에 대해서도 새롭게 규율하고 있다. 이외에도 이 법은 통신미디어 정보보호와 정보통신 정보보호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기존에 통신미디어 정보보호법 영역과 정보통신 정보보호법 영역 모두에 구속되어 왔던 서비스제공자의 중요 요구사항이 고려될 수 있게 되었다.⁴⁹⁾

47) 독일의 청소년보호법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홍승희, 독일의 인터넷콘텐츠 규제와 형법의 역할, 원광법학 제28권제1호, 2012. 337면~341면 참조.

48) Drucksache 556/06, S.2.

(<https://www.uni-hamburg.de/elearning/hoou-alt/drucksache-20-14262.pdf> 최종방문 2016.10.30.)

49) Drucksache 556/06, S.2.

(<https://www.uni-hamburg.de/elearning/hoou-alt/drucksache-20-14262.pdf> 최종방문 2016.10.30.)

한편, 전자거래통합법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신미디어법이고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정보통신법의 정보통신서비스(Telekommunikationsdienste)와 통신법의 정보통신기반서비스(Telekommunikationsgestützte Dienst) 또는 방송주간(州間) 협약(Rundfunkstaatsvertrag)의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전자정보 및 통신서비스에 적용된다(통신미디어).

둘째, 이 법에 따라 통신미디어는 허가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셋째, 이 법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상업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되는 통신미디어(서비스)와 관련하여 ① 성명 및 개업지로 등재되어 있는 주소(법인의 경우 대표자) ② 서비스제공자와의 신속한 전자통신 및 직접적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전자우편 주소 포함) ③ 서비스가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공되거나 공급되는 경우 관할 감독청에 대한 정보 ④ 서비스제공자가 등재되어 있는 상업등기부, 사단등기부, 동업자등기부 또는 협동조합등기부 및 그 등록번호 등에 관한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접속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이용가능 하도록 유지해야 한다(일반적 정보제공의무).

넷째, 이 법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상업통신을 하는 경우 ① 상업통신으로서 명확하게 식별 가능하고, ② 상업통신 제공을 위임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명확하게 표시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특별한 정보제공의무).

다섯째, 이 법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에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일반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전달하거나 저장한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행위를 암시하는 정황을 탐색해야 할 일반적인 감시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여섯째, 이 법에 따라 ① 서비스제공자가 그 전송을 유도하지 않았을 경우, ② 서비스제공자가 전달된 정보의 수신자를 선별하지 않았을 경우, ③ 서비스제공자가 전달된 정보를 선별 내지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에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일곱째, 이 법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자동화되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임시저장에 대해 서비스제공자가 ①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② 정보에 대한 접속 조건을 준수하고, ③ 정보에 대한 최근(널리 인정되고 사용되는 산업표준에서 확정된) 규정을 준수하고, ④ 정보이용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이용되는 (널리 인정되고 사용되는 산업표준에서 확정된) 기술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저해하지 않으며, ⑤ 정보가 전송의 최초 시점에 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정보로의 접속이 차단되었거나 법원이나 행정관청이 삭제 또는 차단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즉시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행한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여덟째, 이 법에 따라 서비스제공자는 저장되는 타인의 정보에 대하여 ① 서비스제공자가 위법한 행위 또는 정보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나 정보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만한 사실이나 상황이 없는 경우, 또는 ② 서비스제공자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 책임지지 아니한다.

아홉째, 서비스제공자는 이 법 또는 명시적으로 통신미디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규에서 허용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통신미디어의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법 또는 다른 법규에서 허용하거나 이용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통신미디어 공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열 번째,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이 개시된 시점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의 종류·범위 및 목적 그리고 이용자 정보가 처리되고 있다는 것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고지하여야 하고, 고지 내용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열한 번째,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통신미디어 이용에 관한 계약관계의 설정, 내용 형성 또는 변경에 필수적인 경우에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열두 번째,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통신미디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이용정보) 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3) 민법전의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독일민법은 제2편(채권관계의 법) 제2장(소비자계약에서의 원칙과 특수한 거래형태) 제2절(영업장소 밖에서 체결된 계약 및 통신판매계약)과 제3절(전자거래상의 계약)에서 ‘통신판매’와 ‘전자거래’에서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민법전에서 통신판매와 전자거래를 함께 규율하는 입법방식을 도입하고 있고 통신판매와 전자거래를 새로운 거래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민법에서 ‘통신판매계약’이란 사업자 또는 그의 이름으로나 그 위탁을 받아 행위하는 사람과 소비자가 계약의 교섭 및 체결에 원격통신수단만을 사용하여 행하여진 계약을 말한다. 다만, 계약 체결이 통신판매를 위하여 수립된 판매시스템 또는 용역제공시스템의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⁵⁰⁾ 이 법

50) 독일민법 제312조의c 제1항; 양창수역, 독일민법전 - 총칙, 채권, 물권 -, 박영사, 2015. 171면.

에서 ‘원격통신수단’이란 계약당사자들이 직접 대면함이 없이 계약을 유치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의사소통수단, 특히 편지·카탈로그·전화·모사전송·이메일·단문메시지서비스(SMS) 및 전파방송과 원격매체를 말한다.⁵¹⁾

둘째, 영업장소 밖에서 체결된 계약 및 통신판매계약에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그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행하여진 사업자의 진술은 계약의 내용이 된다. 그러나 계약당사자들이 명시적으로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제외된다.⁵²⁾

셋째, 사업자는 화물운임, 배달요금 또는 발송비 및 기타의 비용에 관하여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게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 한도에서 소비자로부터 이들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⁵³⁾

넷째, 영업장소 밖에서 체결된 계약에서 사업자는 즉시 소비자에게 ① 계약체결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게 서명한 계약문서, 또는 ② 계약의 내용이 나타나 있는 계약확인의 서면을 교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계약의 서면에 갈음하여 다른 지속적 자료저장장치가 사용될 수 있다.⁵⁴⁾

다섯째, 통신판매계약에서 소비자는 철회권을 가진다.⁵⁵⁾ 다만, 소비자의 주문으로 제작한 상품에 관한 계약, 특성상 반품이 부적합한 상품에 관한 계약 등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아니하는 한 철회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⁵⁶⁾

여섯째,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계속적 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경우 소비자가 계속적 채무관계를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업자가

51) 독일민법 제312조의c 제2항; 양창수역, 위의 책, 171면~172면.

52) 독일민법 제312조의d 제1항; 양창수역, 위의 책, 172면.

53) 독일민법 제312조의e; 양창수역, 위의 책, 172면.

54) 독일민법 제312조의f 제1항; 양창수역, 위의 책, 172면~173면.

55) 독일민법 제312조의g 제1항; 양창수역, 위의 책, 175면.

56) 독일민법 제312조의g 제2항; 양창수역, 위의 책, 175면~179면.

그 해지를 종전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대리권을 소비자로부터 수여받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해지 또는 해지대리권 수여에 문면방식이 필요하다.⁵⁷⁾

일곱째, 이 법은 전자거래에서의 일반적 의무를 규율하고 있다. 즉 사업자가 상품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원격매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① 주문 전에 입력의 오류를 인식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력이 있으며 접근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제공하여야 하고, ② 주문 전에 적시에 정보를 명료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여야 하고, ③ 고객의 주문이 도달하였음을 지체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또한 ④ 계약 체결시에 일반거래약관을 포함하여 계약내용을 불러내고 재현가능한 방식으로 기억장치에 저장할 가능성을 제공하여야 한다.⁵⁸⁾

여덟째, 이 법은 소비자에 대한 전자거래에서의 특별한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즉 소비자와의 전자거래를 위한 웹사이트에는 일반적 의무 외에도 추가적으로 주문과정의 개시 전에 공급이 제한되고 있는지 여부 및 받아들여지는 지급수단을 명료하고 분명하게 고지하여야 한다.⁵⁹⁾

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사항 중에서 시사점을 중심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전자상거래지침은 OECD의 2016년 전자상거래권고와 비교하여 2002년에 제정되었기에 모바일거래나 디지털 콘텐츠 거래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이슈를 보다 풍부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⁶⁰⁾

57) 독일민법 제312조의h; 양창수역, 위의 책, 179면~181면.

58) 독일민법 제312조의i 제1항; 양창수역, 위의 책, 181면.

59) 독일민법 제312조의j 제1항; 양창수역, 위의 책, 181면~182면.

60) 독일의 경우 ‘소비자의 권리에 관한 지침’에서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에 관한 통

그렇지만 EU전자상거래지침은 OECD전자상거래권고와 달리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도록 하는 지침이라는 점에서 OECD전자상거래권고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전자거래 일반에 관한 입법사항과 전자상거래소비자 보호에 관한 입법사항을 구분하는 법체계의 정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EU전자상거래지침은 상품 등을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 소비자보호에 관한 입법사항은 물론 전자거래에서 공통적으로 문제되는 입법사항(예컨대,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둘째, EU전자상거래지침은 영국의 경우 2002년 전자상거래규칙에 반영되었는데, 이 규칙은 EU전자상거래지침에서 회원국의 국내법으로 입법화하도록 한 입법사항을 반영하여 만들어졌다. 아울러 영국은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관련하여 2014년 소비자계약규칙에서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에 따른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에 관한 입법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EU전자상거래지침은 독일의 경우 ‘2002년 전자거래법’의 제정으로 반영되었는데, 이 법을 대신한 ‘2007년 전자거래통합법’을 통하여 국내법으로 구체화하였다. 2007년 전자거래통합법은 EU전자상거래지침을 형식상 하나의 법률이나, 이 법률 내에서는 다시 4개의 법률(통신미디어법, 청소년보호법, 접속통제서비스보호법 및 전자서명법)을 제·개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 통합법에서 전자상거래는 통신미디어법과 직접 연계된다. 이와 같이 독일은 EU전자상거래지침에서 담고 있는 대부분의 입법사항을 단순히 전자거래를 활용한 상품 등의

일된 규정을 마련하여 소비자보호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이병준,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내지 요금 청구와 소비자보호, 서울법학 제23권 제3호, 2016. 66~68면; 김진우, 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덧붙여 -, 서울법학 제23권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105면 이하 참조할 것.

판매에 따른 소비자보호에만 한정된 것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정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입법사항으로 취급하였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해야 하는 입법 사항과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의 구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의 경우 전자상거래는 민법에서 전자계약과 관련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소비자의 철회권 등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법 개정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개선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⁶¹⁾

제 4 절 일 본

1. 개 요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법률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관련 법률과 전자거래 일반 관련 법률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에는 특정상거래 법과 소비자계약법이 있고, 후자에는 전자장부 보존법, 전자서명법, IT 서면일괄법, e-문서법 등이 있다.⁶²⁾

(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련 법률

일본의 경우 전자거래에서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소비자보호만을 규정하는 법률, 즉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같은

61) 우리나라의 소비자보호법에서 청약철회기간의 행사기간 및 기산일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고희석,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일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3권 제3호, 2012. 306면~311면 참조할 것.

62) 일본의 경우에도 전자상거래에 관련하여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90조의 공서양속에 위반하는 계약조항, 소비자계약법 제8조 내지 제10조에 위반하는 계약조항 또는 경쟁제한법(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계약조항 등에 대하여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자세한 것은 노태약, 일본 전자상거래준칙 해설, 정보법학 제8권 제2호, 2005. 80~81면 참조할 것).

법률은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일본은 ‘특정상거래법’ 제2장 제3절에서 통신판매라는 명칭하에 일반적인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를 함께 규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소비자계약법’이라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에 계약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존재하고 있고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도 전자거래에서 나타난 청약과 승낙에 관한 특례를 규율하고 있다. 이들 법률 중에서 전자상거래의 거래질서 공정화에 주로 관련된 법률은 특정상거래법과 소비자계약법이고, 이들 법률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2) 전자거래 일반에 관련 법률

일본의 경우도 전자거래 일반에 관련된 조항은 여러 법률에 존재한다.

첫째, 전자장부 보존법(1998년 7월 시행)은 주로 국세관계의 장부를 자기 테이프나 광디스크 등에 전자 데이터로서 보존하는 수단 등을 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정식명칭은 '전자계산기를 사용하여 작성하는 국세관계 장부서류의 보존방법 등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며, 종래 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종이로 관리하고 있던 회계기록을 종이형태로 7년간 보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은 전자장부의 진실성 확보, 가시성 확보 등 일정 보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장부서류를 전자데이터로 보존 가능하도록 하였다.⁶³⁾

둘째, 전자서명법(2001년 4월 시행)은 전자서명이 서명이나 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정한 법률이다. 이 법의 정식명칭은 ‘전자서명 및 인증업무에 관한 법률’이다. 일본 민사소송법 제228조 4항에서 ‘사문서는 본인 혹은 그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있을 때에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에 상응하여

63) 電子契約導入のポイント(<http://digitalstorage.jp/e-contract/law/> 최종방문 2016.10.30.)

일본 전자서명법 제3조에서는 ‘전자적 기록이면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은 당해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대해 본인에 의한 전자서명이 되어 있을 때에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⁶⁴⁾

셋째, IT서면 일괄법(2001년 4월 시행)은 고객보호 등의 관점에서 사업자에게 서면의 교부나 서면에 의한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 법률에 대하여 고객 등의 승낙을 조건으로 서면을 대신하여 전자메일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을 정한 법률이며, 이 법의 정식명칭은 ‘서면의 교부 등에 관한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을 위한 관계 법률의 정비에 관한 법률’이다. 경제의 IT화가 진전됨에 따라 서면의 교부 또는 서면에 의한 절차를 의무화하고 있는 각종 규제(예컨대, 증권거래법, 할부판매법, 방문판매법, 여행업법, 하청대금 지불지연 등 방지법 등)가 전자상거래 등의 저해요인이 되어 계약의 체결 시 일정한 서면의 교부의무를 정한 법률에 대하여 송부 받은 상대방의 동의를 조건으로 서면 교부를 대신한 전자적 수단(전자메일, FAX 등)을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⁶⁵⁾

넷째, e-문서법(2005년 4월 시행)은 '민간사업자 등이 행하는 서면의 보존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과 '민간사업자 등이 행하는 서면의 보존 등의 정보통신기술의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른 관계 법률의 정비 등에 관한 법률'을 총칭한다. 재무·세무 관계장부·전표나 회의기록 등 상법(및 그 관련법령)이나 세법으로 보관이 의무화되어 있는 문서에 대해 종이문서 뿐만 아니라 전자화된 문서과 일로의 보존을 인정한다.⁶⁶⁾

64) 電子契約導入のポイント(<http://digitalstorage.jp/e-contract/law/> 최종방문 2016.10.30.)

65) 電子契約導入のポイント(<http://digitalstorage.jp/e-contract/law/> 최종방문 2016.10.30.)

66) 電子契約導入のポイント(<http://digitalstorage.jp/e-contract/law/> 최종방문 2016.10.30.)

2. 특정상거래법 제2장 제3절 통신판매의 주요내용

일본의 ‘특정상거래법 제2장 제3절 통신판매’⁶⁷⁾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자세한 것은 “[부록 5] 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번역문을 참조).⁶⁸⁾

첫째, 이 법에서 ‘통신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우편 그 밖의 주무성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받아 하는 상품이나 지정권리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 제3호)고 규정하여 전자상거래를 일반통신판매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둘째, 통신판매에 대한 광고를 규율하고 있다. 즉 이 법 제11조에서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이나 지정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주무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에 ① 상품이나 권리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판매가격에 상품의 배송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가격 및 상품의 배송료), ② 상품이나 권리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불시기 및 방법, ③ 상품의 인도시기나 권리의 이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④ 상품이나 지정권리의 매매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교부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시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

67) 特定商取引法の条文(<http://www.no-trouble.go.jp/search/raw/P0203001.html/> 최종방문 2016. 10.30.)

68) 2008년 일본의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의 번역문에 관한 자세한 것은 현대호, 특수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부록 5] 참조할 것.

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사항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셋째, 과대광고 등의 금지를 규율하고 있다. 이 법 제12조에서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이나 지정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그 상품의 성능 또는 권리나 용역의 내용, 그 상품이나 권리의 매매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그 밖의 주무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시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넷째, 과대광고 여부 표시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 제12조의2에서 주무장관은 과대광고 표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표시를 한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표시를 뒷받침하게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그 표시는 과대광고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다섯째, 승낙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전자메일광고의 제공금지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 제12조의3에서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예외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이나 지정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되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자메일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의 상대방

으로부터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받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울러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때에는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의 승낙을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록으로서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것을 작성하고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때에는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에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이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여섯째, 통신판매에서의 승낙등의 통지를 규율하고 있다. 이 법 제 13조에서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상품, 지정관리 또는 용역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한 자로부터 그 상품의 인도, 권리의 이전 또는 용역의 제공에 앞서 그 상품이나 권리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는 것으로 하는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우편 등에 의해 그 상품, 권리 또는 용역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받고 그 상품이나 권리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약을 승낙한다는 내용 또는 승낙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 청약을 한 자에게 통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품이나 권리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상품을 송부하거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대신하여 그 청약을 한 자

의 승낙을 받아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 그 밖에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일곱째, 주무장관의 지시권한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 제14조에 따라 주무장관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무장관은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 수탁사업자에 대하여도 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여덟째, 업무의 정지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 제15조에서 주무장관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사업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주무장관은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 수탁사업자가 이 법에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나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 수탁사업자가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 수탁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아홉째, 통신판매에서의 계약의 해제 등을 규율하고 있다. 이 법 제 15조의2에서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 또는 지정권리의 판매조건에 대한 광고를 한 판매업자가 그 상품 또는 지정권리의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한 자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구입자는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의 인도나 지정권리를 이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그 매매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를 할 수 있다. 다만, 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에 대한 특약을 그 광고에 표시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한편,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의 인도나 지정권리의 이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는 그 인수 또는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소비자계약법

일본의 경우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보력·교섭력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소비자의 이익옹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0년 4월에 제정하여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법은 사업자와 소비자 간에 소비자의 오인, 곤혹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일반에 관한 취소 및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히 저해하는 계약조항을 무효화하는 법률에 해당된다.⁶⁹⁾ 이 법은 2006년 법개정에 의하여 소비자단체소송제도가 도입되어 2007년 6월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2006년의 법 개정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대상이 경품표시법과 특정상거래법에까지, 2015년의 법개정에서는 식품표시법에까지 확대되었다.⁷⁰⁾

69) 일본의 (구)소비자계약법에 대한 자세한 것은 현대호, 소비자계약관련입법의 체계화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24~25면과 [부록 II.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참조할 것.

70) 일본 소비자청의 소비자계약법

(http://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ystem/consumer_contract_act/ 최종방문 2016. 10.30.)

< 그림 > 2016년 일본 소비자계약법의 주요 개정사항(71)

소비자계약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6년 법률 제61호)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정보·교섭력의 격차를 감안하여 계약 취소와 계약조항의 무효 등을 규정

1. 계약의 취소	
<p>< 현행규정 > 사업자가 이하의 행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취소가 가능 ① 부실고지(중요사항[=계약의 목적물에 관한 사항]이 대상) ② 단정적 판단의 제공 ③ 불이익사실의 미고지 ④ 불퇴거/퇴거방해</p>	
< 과 제 >	< 개정내용 >
고령자의 판단능력의 저하 등을 틈타 대량으로 상품을 구입시키는 피해 사안	⇒ 과량의 내용의 계약의 취소(새로운 취소사유)
계약 목적물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부실고지에 따른 피해 사안 (예: 바닥에 흰 개미가 있어 집이 붕괴)	⇒ 중요사항의 범위 확대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경과한 피해사안	⇒ 행사기간의 연장(단기를 6개월→1년으로 연장)
<p>○ 이외, 취소 효과에 대해서도 규정</p> <p>○ 이 외, 소비자단체 소송제도(금지 청구)에 관한 규정이 설치되어 있다.</p>	

71) 일본 소비자청 소비자계약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http://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ystem/consumer_contract_act/pdf/consumer_contract_act_0001.pdf 최종방문 2016.10.30.)

2. 계약조항의 무효	
<p>< 현행규정 >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조항은 무효 ①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② 소비자가 지불하는 손해배상액의 예정 조항 ③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조항(일반조항)</p>	
<p>⇒ [10조] ① 민법, 상법 등의 임의규정의 적용에 따른 경우와 비교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이면서, ② 신의칙에 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은 무효</p>	
<p>< 과 제 ></p>	<p>< 개정내용 ></p>
<p>소비자의 해제권을 일절 인정하지 않는 조항의 존재 (→결함제품이어도 잔금을 계속 지불한다) (예: [어떤 경우라도 해제할 수 없습니다])</p>	<p>⇒ 사업자의 채무불이행 등의 경우라도, 소비자의 해제권을 포기시키는 조항(무효로 하는 조항의 추가)</p>
<p>법10조의 ①은 명문규정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법리 등도 포함하도록 하는 최고재판소 판결</p>	<p>⇒ 법10조에 예시를 추가(※)</p>
<p>(※) 소비자가 부작위를 가지고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p>	
<p>○ 이 외, [민법의 규정에 따른다]라는 문언을 삭제</p>	

○ 시행기일은,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1년을 경과한 날(2017년 6월 3일)

4.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입법 사항 중에서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거래질서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은 특정상거래법과 소비자계약법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특정상거래법에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특별히 구분하여 차이를 두지 않고 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해제권 또는 철회

권을 인정하고 전자메일을 이용한 광고에 대하여서도 비교적 상세한 조항을 두고 있다. 소비자계약법은 소비자와 사업자의 정보력·교섭력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오인, 곤혹으로 인하여 체결한 계약에 대한 취소와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히 저해하는 계약에 대한 무효를 규정하고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전자계약에도 적용된다.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은 아직까지 다른 특정상거래와 분리하여 입법화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유사하게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를 함께 규율하고 있고 광고메일이나 철회권(또는 해제권)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유사하다. 그렇지만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에서 전자상거래는 단순하고 간명하게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를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등이 복잡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통신판매 중개계약 등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특정상거래법에서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에 의존하여 소극적인 방식으로 입법화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정부 주도의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정부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둘째, 일본의 경우에는 전자거래 일반에 관한 조항은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으며, 전자문서(또는 전자장부)에 관한 법률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또한 일본의 전자서명법은 우리나라와 달리 ‘공인전자서명’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고 지정전자서명의 경우 그 효력은 일반서명과 동일하게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하는 효력만을 규정하고 있다(즉 ‘지정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서명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으로 추정하거나’ 또는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라는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상품 등을 거래하는 경우 암

호 등과 같이 거래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 보안수단 중의 하나로 전자서명을 인정하고 있을 뿐이다.

셋째, 일본의 경우에는 위에서 다루지 않았지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독립된 단일법으로 2013년에 개정된 ‘특정 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⁷²⁾ 이 법은 특정전기통신에 의한 정보의 유통에 의해 권리의 침해가 있었던 경우에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를 청구하는 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72) 일본의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2010)’에 관한 번역문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10075> 최종 방문 2016.10.30.)

제 4 장 전자상거래 관련 국내법의 체계와 거래질서의 공정화 방안

제 1 절 개 관

우리나라는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를 법률상 구분하여 달리 입법화하고 있으며, 그 주된 법률로 전자는 ‘전자문서법’이고 후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다. 먼저, 전자문서법은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규정하고 있어서 정부의 정책 등을 추진하기 위한 입법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고, 전자거래 전반에 관련한 실체적인 입법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입법사항이 중심을 차지하지만 이외에도 전자거래 일반에 관한 입법사항과 전자상거래 관련 정부의 역할이나 정부규제가 다른 외국보다 많이 입법화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는 다른 외국의 경우와 달리 전자서명법(특히, 공인인증서)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발달하여 왔다. 즉 전자서명법의 공인전자서명이 국내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안전성에 직접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공인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은 일반전자서명보다 월등히 강한 증명력을 가진다. 이렇다 보니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전자서명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일상생활에서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아래에서는 전자상거래의 거래질서에 관련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법 등이 어떻게 전자상거래 거래질서를 형성하여 왔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현행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바람직한 공정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 2 절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법률의 변천과 주요사항

1. 개 요

우리나라의 경우 최초 입법당시와 비교하여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현행법은 여러 차례의 제·개정되어 많은 변화가 이루어져 왔다. 또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의 제정 당시 또는 현재 정부부처(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입장 등에 따라 관련 입법사항에 차이가 나타나는 등 관련 법조항에서 실효성이 낮은 사례도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률의 체계상 및 내용상 적합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자문서법 및 전자서명에서 나타난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의 연혁을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개정과 주요내용

(1)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이유로 “인터넷의 발달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종전의 통신판매제도만으로는 이에 대처하기에 한계가 있어 통신판매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분리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하고,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통신판매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며,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기존 방문판매법의 ‘통신판매’를 ‘전화권유판매’와 분리하여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전자상거래와 통합하여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골자이다.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특수거래와 구분하여 별도로 입법한 사례는 다른 외국에서도 발견된다. 예컨대, 독일의 (구)원격판매법은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를 ‘원격판매’라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포섭하여 규율하였다. 일본의 경우에도 현행 특정상거래법에서 통신판매에 전자상거래를 포함시켜서 입법화하고 있다.

(나) 주요내용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사업자는 소비자와 사전에 약정하여 지정한 주소로 전자문서를 송신한 경우 외에는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하되, 소비자가 다른 주소로 송신된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당해 전자문서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5조제1항). 둘째,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소비자의 조작실수에 따른 의사표시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청약이나 거래대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내용의 확인 및 정정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법 제7조). 셋째, 통신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조건없이 당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외 교부일(재화 등의 공급이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외 교부일보다 늦은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일)부터 7일간으로 하였다(법 제17조제1항). 넷째,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련사업자에게 소비자피해보상금의 지급을 위한 보험계약이나 금융기관과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법 제24조제1항). 다섯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전자상거래에 관한 기록의 보존, 통신판매업의 신고 등 법령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등 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2조제1항). 여섯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시정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위반행위관련 매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32조제4항 및 제34조).

이와 같이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하나의 법률에서 통합하여 규율하는 차원에서 기존보다 한 단계 개선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법은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하나의 장에서 규율하면서도 각 조항별로는 별도로 입법화 한 경우도 있어서 해석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즉 이 법은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를 통합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사항과 별도로 규율할 사항에 대한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서 모호한 입법에 해당된다.⁷³⁾ 또한 이 법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실제법적인 조항(철회권 등)을 마련한 거래법이지만, 정부의 역할(예컨대, 제3장 소비자 권익의 보호, 제4장 조사 및 감독,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7장 벌칙 등)이 강하게 나타나 다른 외국의 입법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입법에 해당된다(우리나라의 경우 방문판매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에서도 정부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7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 시 문제점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현대호, 전자거래 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35~36면 참조할 것.

(2) 2005년 3월 31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의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2005년 3월 31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 개정이유로 “비대면(非對面) 선불거래방식인 통신판매에 있어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통신판매업자의 무차별적인 구매권유광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비자가 구매권유광고의 수신을 거부하는 의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상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 주요내용

2005년 3월 31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불식 통신판매의 거래안전을 위한 결제대금예치 제도를 도입(법 제24조제2항 내지 제4항 신설)하였다. 즉 비대면, 무점포의 선불식(先拂式) 거래관행으로 인하여 통신판매거래의 안전성 및 신뢰성에 취약한 부분이 있고,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 이어서 선불식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을 때까지 그 결제대금을 제3자에게 예치하도록 하거나, 통신판매업자 본인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되, 신용카드거래, 배송이 필요 없는 거래, 10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소액거래 등에 대하여는 그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였다. 둘째, 소비자보호를 위한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도입(법 제24조의2 신설)하였다. 즉 통신판매업

자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전화·모사전송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구매권유광고를 무차별적으로 행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을 통하여 구매권유광고에 대한 수신거부의사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통신판매업자는 그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 등록시스템에서 소비자의 구매권유광고 수신거부의사를 확인하여 구매권유광고의 수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소비자에게는 구매권유광고를 발송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대금지급에 있어서 결제대금의 예치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도입한 점에 있어서 소비자의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이번 개정에서 구매유인광고(전자우편메일)의 발송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수신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송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한 점에 있어서는 소비자 보호에 다소 취약한 입법방식을 가지고 있다.

(3) 2007년 7월 19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의 이유 및 주요내용

2007년 7월 19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의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행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지연이자율을 그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아니한 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행정부의 자의적인 행정입법으로 인하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될 여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그 지연이자율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은 소비자가 통신판매업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한 경우 지급하는 지연배상금의 산정기준을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하는 것에 해당된다.

(4) 2010년 3월 22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3월 22일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현행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양벌규정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개정에 해당된다.

(5) 2012년 2월 17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의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2012년 2월 17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의 이유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체결하여야 하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신판매업자로 하여금 재화 등의 정보와 환불지연배상금에 관한 사항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를 할 수 있도록 사이버몰 구축 및 서버 관리 등을 해주는 호스팅서비스사업자에게 사업자의 신원확인 의무를 부과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나) 주요내용

2012년 2월 17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계약의 청약 등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철회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5조제4항 신설). 둘째, 전자적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경우 소비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재화 등의 가격, 용역의 제공기간 등에 대한 고지 및 고지한 사항에 대한 소비자의 확인절차를 마련하도록 하였다(안 제8조제2항). 셋째, 결제수단의 신뢰도 확인과 관련된 사항 등의 고지 의무 및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의무를 지는 선지급식 결제수단 발행자의 범위를 종전의 다수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에서 1개 이상의 사이버몰에서 사용되는 결제수단의 발행자로 확대하였다(안 제8조제4항). 넷째,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사업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요청에 따라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하는 등 분쟁해결에 협조하도록 하였다(안 제9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섯째, 통신판매업자가 계약체결 전에 재화 등의 정보, 환불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표시·광고 또는 고지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3조

제2항). 여섯째, 통신판매중개자가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되,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였다(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일곱째,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소비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설명·고지하지 않고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설치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였다(안 제21조제1항제7호 신설). 여덟째, 이 법을 위반한 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26조제6항 신설). 아홉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분쟁이 조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정을 의뢰한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다(안 제33조제5항 신설).

이번 개정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전자적 대금지급 관련 소비자의 확인, 통신판매업자의 정보제공의무 및 설명의무 등을 개정하여 소비자 보호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개정에서 규정한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와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에 관련해서는 다른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성이나 법체계상 적절한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6) 2013년 5월 28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의 이유 및 주요내용

2013년 5월 28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의 이유 및 주요 내용으로 “현행법령은 통신판매업자가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결제대금예치의 이용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의 체결을 선택하는 경우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거

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하는 ‘구매안전 보호 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거래를 1회 결제를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로 한정하고 있는바, 5만원 이하의 소액 거래에 대해서도 이러한 ‘구매안전 보호조치’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은 역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에 해당된다.

(7) 2016년 3월 29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의 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2016년 3월 29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의 이유로 “카페·블로그 서비스를 통해 방문자 수 증대 및 검색광고 유치 등 상당한 이익을 누리고 있는 포털사이트 등에게 소속 카페·블로그가 이 법상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는 일정한 책임을 부여하며,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용역 및 디지털콘텐츠 등에 대한 청약철회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또한, 청약접수 및 대금결제 등 거래과정에서 중요한 업무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는 오픈마켓, 앱스토어 등 통신판매중개업자가 그 역할에 부합하는 책임을 수행하도록 하고, 현행법 상 영업정지 제도는 증거자료의 확보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전자상거래 분야의 위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신속하게 방지하기 위해 임시 중지명령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신설 제도 등과 관련하여 제재 규정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 포털사이트의 책임과 청약철회 기간,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청약철회,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규제 강화 등 내용상으로 다소 큰 변화가 이루어졌다.

(나) 주요내용

2016년 3월 29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신원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 중에서 ‘분쟁의 당사자인 소비자’에 대해 단서를 달아 ‘소비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로 한정하였다(제9조제3항). 둘째,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 전자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전자게시판의 개념이 포함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게시판의 개념을 사용하여 게시판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로 정의하고, 이들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을 통해 위법한 전자상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고,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와 소비자 간의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였다(제9조의2 신설). 셋째, 청약철회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청약철회 가능기간을 방해행위 종료일부터 기산하도록 하고, 가분적 용역 및 가분적 디지털콘텐츠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며, 디지털콘텐츠에 대해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표시와 함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 청약철회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하였다(제17조). 넷째, 소비자에게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사업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의 주체를 종전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에서 ‘통신판매중개업자’로 확대하여 모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신원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하고,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를 받거나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역할에 상응하는 의무를 부여하되, 이러한 의무는 기본

적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있는 것이므로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만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하였다(제20조제2항, 제20조의3 신설). 여섯째, 시정조치 대상에서 사업자에 대한 의무부여 규정이 아닌 소비자의 권리행사 근거 규정과 소비자단체의 자료제출 의무 규정 등을 삭제하고, 신설 규정과 관련된 부분을 시정조치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영업정지 대상인 ‘소비자 피해방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서 ‘현저히’ 요건을 삭제하고, ‘시정조치만으로는 소비자 피해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를 영업정지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제고하였다(제32조제1항 및 제4항). 일곱째,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에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정식 시정조치 결정 이전에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 관련사업자에게 해당 의무제공의 중단 등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협조 의무를 부과하였다(제32조의2 신설). 여덟째, 물리적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영업정지명령 위반에 대한 벌칙을 상향조정 하며, 임시중지명령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하였다(제40조, 현행 제41조 삭제, 제45조).

이번 개정에서 청약 철회기간과 디지털 콘텐츠에 관한 개정은 입법상 적절하다고 보여진다. 다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정보제공의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시정조치 대상 확대, 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 관련사업자에게 해당 의무제공의 중단 등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협조의무, 그 밖에 벌칙과 행정처분이 강화되었는데, 이들 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일면 적절하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이들 개정 사항이 과연 전자상거래소비자법에서만 문제되는 입법사항인지(물론 전자상거래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문제되는 것을 정하

여야 하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 아니면 전자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법률행위에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것으로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규율해야 하는 입법사항이 아닌지 의문이 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도 두드러진 특징으로 정부의 규제가 강화(과태료 등)되었는데,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 개입하는 것에 따른 정부실패의 부작용(예컨대, 새로운 유형의 전자상거래 기피, 정부의 기준에 맞춘 소극적 거래방식 등)도 문제될 수 있다.

(8)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제정 당시부터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를 통합하여 규정하였지만 각 조항별로 마치 별개의 거래로 다루는 혼란이 있었고 법체계상으로도 전자거래와 전자상거래의 구분이 문제되었다.⁷⁴⁾

둘째, 다른 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전자문서법에서 각자 소비자 보호조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법체계상 모호한 문제가 있다.

셋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를 하나의 장(‘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으로 통합하였지만, 각 조항별로는 별도로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 등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이 법은 다른 외국(독일, 영국 등)의 전자상거래에 관련한 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항과 비교하여 법체계나 법조항의 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하여 제정 당시부터 졸속한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74) 전자문서법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고희석,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6권제3호, 2005. 143면~187면 참조할 것.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나 소비자가 보다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법 체계와 입법사항을 정비하는 것이 요구된다.

넷째,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다른 외국의 경우보다도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 과연 그러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시장의 거래 질서 공정화에 근본적으로 부합하는지가 문제된다.

다섯째,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와 관련 사업자의 책임, 광고규제 등이 다른 법률(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해야 하는 입법 사항이 아닌가가 문제된다.

3. 전자문서법의 제·개정과 주요 내용

(1) 1999년 2월 8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

(가) 제정 취지

1999년 2월 8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은 제정이유로 “정보화시대의 도래에 따라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문서와 동일한 수준의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거래의 신뢰성 확보, 소비자의 보호,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추진등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반인이 안전하게 전자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거래를 촉진하려는 것임”이라 밝히고 있다.

이 법의 제정 당시까지 문서는 서면을 중심으로 한 종이문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되어 왔으며, 통신거래도 전기통신을 통한 구두계약만을 그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인터넷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 전자문서에 기반한 전자거래를 가능하게 함에 따라 (구)전자거래기본법의 제정을 통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문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계기가 되었다.

(나) 주요내용

1999년 2월 8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골자에서 나타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첫째,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문서에 대하여 서면에 의한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고, 전자서명 역시 서면상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도록 하였다(법 제5조 및 제6조). 둘째, 전자거래당사자 등이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에게 이를 알리도록 하고, 수집한 정보는 당초 수집한 목적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였다(법 제13조). 셋째,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당사자의 신원을 확인해 주는 공인인증기관을 전자서명법의 규정에 따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6조 및 제17조). 넷째,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주도에 의하여 추진하도록 하되,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자거래촉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다섯째, 전자거래에 관한 국내의 조사연구등 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한 전자거래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법 제22조 및 제28조). 여섯째,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비자에의 정보제공, 소비자피해보상기준의 적용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법 제29조 내지 제32조).

이 법의 주요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은 첫째, 전자문서의 법령상으로 서면과 동일한 효력을 주는 것과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 서명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역할에 해당된다. 둘째, 전자거래를 통하여 생성되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과 그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한 제한을 사업자의 의무로 규정하였지만 관련 벌칙을 규정하지는 않았다. 셋째, 이 법은 이 밖에 전자거래 촉진을 위하여 정부의 역할을 규정하고 관련 기관을 설립하여 전자거래의 표준화, 전자거래 기술개발 및 전자거래 분쟁조정 등에 관련하여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역할을 부여하고 민간부문의 역할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구)전자거래기본법은 우리나라에서 전자거래와 전자문서의 도입 초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과 정부의 역할을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법에서 정부의 역할은 전자거래 및 전자문서에 관한 기반조성과 정부지원 등을 규정한 것이어서 순수한 거래에 관한 입법으로 보기가 어려워 ‘기본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 2002년 1월 19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의 전부개정

(가) 개정 이유 및 의미

2002년 1월 19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은 그 개정이유로 “전자거래기본법이 1999년 제정·공포된 이래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전자거래의 법률관계를 규율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전자거래의 활성화와 기반조성에 기여하였으나 전자거래의 확산 및 기술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바, 전자거래의 법률관계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법적 논란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분쟁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번 개정으로 전자거래(전자문서)와 전자상거래에 관한 구분이 더욱 모호하게 되었다. 이번 개정에서 전자거래, 즉 전자상거래의 법률

관계를 규정하려고 한 점과 나아가 소비자보호 및 피해구제까지 규정 한 점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였다. 물론 당시에는 아직까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지 아니하여 이와 같은 혼란은 다소 적을 수 있었지만 이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시행으로 입법사항의 중첩성 또는 중복성 등이 나타났다.

(나) 주요내용

2002년 1월 19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의 작성자 또는 수신자가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종전에는 그의 주된 거주지에서 전자문서가 송신되거나 수신된 것으로 보았으나, 앞으로는 그의 상거소(常居所)에서 전자문서가 송신되거나 수신된 것으로 보는 등 전자문서의 송신 및 수신에 관한 사항과 수신확인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였다(법 제6조·제7조 및 제9조). 둘째,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16조 및 제18조). 셋째, 정부는 전자거래의 촉진을 위하여 민간주도에 의한 추진, 규제의 최소화, 전자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 국제협력의 강화 등의 원칙에 따라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법 제19조). 넷째, 정부는 전자거래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민간교육기관 그 밖의 관련기관에 대하여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법 제26조). 다섯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전자거래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였다(법 제27조). 여섯째, 현재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

원회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동위원회의 구성·운영, 분쟁조정절차, 조정의 성립 및 불성립 등을 상세히 규정하며,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였다(법 제32조 내지 제38조).

이와 같이 2002년 개정 (구)전자거래기본법은 전자거래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하고 소비자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었다. 아울러 이 개정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전자거래에 관련한 각종의 지원과 건전한 거래환경 및 거래기반 조성에 역할을 하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가 시장에서 어느 범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적절한가의 문제도 발생하였다.

(3) 2005년 3월 31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의 일부개정

(가) 개정 이유

2005년 3월 31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은 그 개정 이유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문서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요구되어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등을 수행할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문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각종 문서의 기록·보관 및 비치 등을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전자문서가 널리 활용되고 다른 법령에서도 전자문서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함에 따라 전자문서의 보관과 증명력을 높이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나) 주요내용

2005년 3월 31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 효력의 적용대상을 확대(법 제4조제2항 및 별표 신설)하였다. 즉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사인에게 각종 문서의 작성·보고·보관 또는 비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전자문서의 효력여부에 대하여는 당해 법률에 규정된 바가 없어 전자문서의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종 문서 또는 자료의 작성·보고 등의 행위가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문서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하도록 국민들에게 영향이 큰 법률의 구체적인 조문을 일괄하여 규정하였으며, 사인이 작성한 전자문서에 대하여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종이문서의 전자문서화를 촉진시켜 각종 문서 또는 자료의 보관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를 도입(법 제31조의2 내지 제31조의14 신설)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선적으로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에 비하여 손쉽게 위조·변조·훼손 또는 멸실될 수 있어 전자문서 보관시스템이 필요하나 그 구축비용이 높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이 전자문서의 보관 등의 업무를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능력이 있는 자를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불변경성,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발급하는 증명서의 진정성에 대한 추정력,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이용자의 정보보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배상책임 및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증명서 발급에 따른 수수료에 대한 규정 등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정에서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사인의 문서행위(법 제4조제2항 관련)를 별표에서 열거하는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다른

법률에서 세세히 전자문서의 효력을 규정하기 보다는 이 법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차원에서 의미 있는 개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역으로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되는 문제도 있다. 또한 이번 개정에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전자문서의 불변경성과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발급하는 증명서의 진정성을 추정하는 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이들 조항은 공인전자문서보관소와 사설전자문서보관소를 차별하여 법적 효력에 현저한 불평등을 둔 점에 있어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다. 즉 정부가 전자문서보관소 시장에 적극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련 민간분야의 시장형성을 정부가 주도하여, 시장의 자유경쟁을 원초적으로 막아버리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를 지정하고 우월한 법적 효력의 부여하여 전자문서보관소에 관련 시장에 바로 안정성을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

(4) 2007년 5월 17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의 일부개정

2007년 5월 17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이유에서는 “종이문서의 전자적 보관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 법률에서 규정하는 종이문서의 보관 의무를 전자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전자문서의 보관요건을 보완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점검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7년 5월 17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 보관요건을 보완(법 제5조)하였다. 즉 종이문서 보관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보관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자문서 중 종이문서 등을 스캐너

를 통하여 정보처리시스템이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하는 방법으로 작성한 전자화문서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형태면에서 전자화대상 문서인 종이문서 등과 동일하게 작성되고 전자문서의 보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보관에 같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자화문서의 보관이 촉진되어 문서보관비용의 절감 및 업무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였다. 둘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대한 정기점검제도를 도입(법 제31조의8제4항 및 제31조의10 신설)하였다. 즉 전자문서의 안전한 보관 등을 위하여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지정 후에도 시설 및 장비의 적절성에 대하여 외부의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은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정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영업의 양도·합병 시 이용자에 대한 통지 제도(법 제31조의14 신설)를 마련하였다. 즉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문서의 계속 보관 여부에 대하여 선택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한 경우 이용자에게 영업의 양도 또는 합병하려는 날의 6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였다. 넷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영업 폐지 시 보관문서 인계 제도(법 제31조의15 신설)를 마련하였다. 즉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하는 등의 경우에도 문서보관업무의 계속성 확보가 필요하고,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영업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보관 중인 전자문서를 다른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인계하도록 하고,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한국전자거래진흥원으로 하여금 보관문서를 인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은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관한 일부 미진한 사항을 보완하는 개정에 해당된다.

(5) 2012년 6월 1일 (구)전자거래기본법의 일부개정

(가) 개정이유

2012년 6월 1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개정이유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전자문서 송수신 정보를 보관하며, 유통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하고, 전자문서의 송수신 또는 중계를 전담하는 자를 지정하는 전자문서중계자제도를 새로이 도입하며, 우수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구)전자거래기본법의 개정은 기존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가 차지하는 입법사항이 많아짐에 따라 법령을 개정하여 전자문서와 전자거래를 동시에 규율하는 법률로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1장 총칙, 제2장 전자문서,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제4장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제6장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제7장 보칙, 제8장 벌칙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내용상으로는 ‘제5장의2 공인전자문서센터와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신설한 것이 주된 개정이어서 변화는 크지 않았다. 그렇지만 이 법의 전반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은 전자거래가 아니라 전자문서라는 점에서 법명에 전자문서를 명시한 것은 적절하다.

(나) 주요내용

2012년 6월 1일 (구)전자거래기본법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 제명을 변경(안 제명)하였다. 즉 이 법이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개인과 민간기관간 또는 이들 상호간의 전자문서 유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의 대부분 조문에서 “전자거래”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로 일률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법률 제명을 “전자거래기본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공인전자주소제도를 도입(안 제2조제8호, 제18조의4 및 제18조의5 신설)하였다. 즉 전자문서 유통 수단인 이메일 전자주소는 송신과 수신 사실을 당사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위조·변조 및 보안성에 취약하여 전자문서 유통의 안전성과 확실성을 보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공인전자주소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려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하여 전자문서가 송신 또는 수신되거나 열람된 경우 송신 또는 수신 일시 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도록 하며, 작성자 및 송신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유통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 등(안 제2조제10호, 제31조의18부터 제31조의23까지 신설)을 규정하였다. 즉 공인전자문서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문서 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전자문서센터 외에 공인전자문서 유통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필요가 있으며,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유통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와 재정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하고,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 유통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며, 보유한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하여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터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도록 하였다. 넷째,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의 유사표시를 금지(안 제18조의2 및 제46조제2항제1호 신설)하였다. 즉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하고 있으나,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광고 송신 금지를 신설(안 제18조의7 및 제46조제1항제2호 신설)하였다. 즉 전자문서 유통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하는 것을 금지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 여섯째, 전자거래 분쟁조정실의 실효성을 강화(안 제35조제3항)하였다. 즉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당사자 간 합의와 동일한 효력만 부여하여 전자거래와 관련된 조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문제점이 있었다. 따라서 조정이 성립하여 조정조서에 위원회의 위원장 및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경우에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하였다.

(6) 2014년 10월 15일 전자문서법의 일부개정

2014년 10월 15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현재는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에 관한 피해나 분쟁으로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분쟁 대상인 거래와 관련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그대로 진행되어 조정 신청을 못하거나 조정 중이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바, 앞으로는 분쟁조정을 신청한 후에 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으로써, 분쟁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자문서나 전자거래와 관련

된 분쟁을 낮은 비용으로 보다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은 이 법의 시행과정에서 분쟁조정위원회 조정대상 거래와 관련하여 소멸시효 진행을 막고자 하는 내용으로 실무상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것이다.

(7) 2015년 6월 22일 전자문서법의 일부개정

2015년 6월 22일 전자문서법의 일부개정 개정 이유로 “실효적인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를 위하여 조정안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업자의 법령위반을 발견한 경우 관계 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유사 입법례에 따라 전자문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명을 법률에서 명시하지 않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2015년 6월 22일 전자문서법의 일부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기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2조제1항). 둘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에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 피해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33조제5항). 셋째,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도록 하였다(제33조의2 신설).

(8) 2015년 12월 22일 전자문서법의 일부개정

2015년 12월 22일 전자문서법의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현재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더라도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다시 공인전자문서중계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공인전자문서중계센터 및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결격사유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확대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전자문서중계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개정하는 것으로 실무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는 것에 해당된다.

(9) 2016년 1월 19일 전자문서법의 일부개정

2016년 1월 19일 전자문서법의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민법」 개정을 통해 보증제도를 개선(2016.2.4. 시행)하면서, 보증인이 경솔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고, 보증계약의 성립 여부 및 그 내용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며, 보증인 보호 및 거래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를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하여야 보증계약의 효력을 발생하도록 '보증의사의 서면주의'를 규정"하고, 나아가 전자문서에 의한 경솔한 의사표시를 방지하고 그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보증의 의사를 전자적 형태(전자문서 등)로 표시한 경우에는 보증의 효력이 없도록"하였음. 그러나, 신용보증기금,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계약을 전문적으로 체결하는 기관이 하는 이른바 '기관보증' 등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자적 방식으로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전자적 방식의 기관보증 등은 신중한 보증계약 체결 도모라는 당초의 「민법」 개정 취지의 측면에서 보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고, 오히려 위 전자적 방식의 보증계약이 일률적으로 효력이 부정될 경우 거래계의 혼란이 예상되며,

이미 구축한 전자적 방식 외에 추가로 서면 송달 등을 해야 한다면 이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될 우려도 있으므로, 「민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보증 등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하는 보증의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의 보증도 효력이 인정되도록 특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전자문서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전자문서로 표시한 기관보증 등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민법」에서 보증의 효력을 인정하는 서면으로 간주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은 민법의 보증제도 개선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전자적 형태의 보증을 제한하여 보증인의 경솔한 보증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에서는 소위 ‘기관보증’의 경우는 전자적 방식의 보증을 허용하여 보증인 자신의 영업이나 사업을 위한 전자적 형태의 보증효력에 대하여 서면성을 인정한 것에 해당된다.

(10) 시사점

이상과 같이 전자문서법은 제정 이후에 수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며 근래에는 주로 전자문서를 중심으로 변화가 이루어져 왔고 전자거래의 경우는 제정 당시부터 실체법적인 조항이 적었기에 커다란 변화가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입법 사항은 주로 정부의 역할과 정책 등 전자거래 관련 시책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어서 직접적으로 전자상거래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전자거래의 기반조성이라는 측면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전자문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와 제4장 중에서 ‘전자거래 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그리고 제5장 중에서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 및 제6장 중에서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등이 계속하여 필요한 것인가가 문제된다.

4. 전자서명법의 제·개정과 주요내용

(1) 1999년 2월 5일 전자서명법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정이유

1999년 2월 5일 전자서명법이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이유로 “21세기 정보화사회의 도래로 전자문서 이용의 확산이 예상됨에 따라 전자문서의 안전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 및 공인인증기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명에 대한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전자문서의 이용을 확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제2장 공인인증기관, 제3장 인증서, 제4장 인증업무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제5장 보칙, 제6장 벌칙으로 구성되었으며, 제정 당시부터 공인인증서를 중심으로 제정되었고 일반전자서명에 관하여는 침묵하였다. 다시 말해서 일반전자서명의 경우 이를 사용하는 당사자가 공인인증서에 인정되는 법적 효력을 주장·입증하도록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공인인증서가 전자상거래를 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게 되었으며, 공인전자서명의 발급이 국내에서만 이루어짐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의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재화 등을 구입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예컨대, G마켓, 옥션, 11번가 등 온라인쇼핑몰이 주로 국내에서만 활용되는 온라인쇼핑몰로 전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공인전자서명은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전자적 방법

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에 적극 활용됨에 따라 국내에서 보안수단(암호 등)의 발달을 막는 역효과도 초래하였다.⁷⁵⁾

(나) 주요내용

1999년 2월 5일 전자서명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하는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보고,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는 당해 명의자가 서명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하도록 하였다(안 제3조). 둘째,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적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증업무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였다(안 제4조). 셋째, 공인인증기관은 적정한 인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인증업무준칙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안 제6조). 넷째,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하는 인증서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인증서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다(안 제15조 내지 제18조). 여섯째, 공인인증기관은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증관리체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하고, 전자서명을 이용하는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대비하여 가입자의 인증서 등 인증업무관련 기록을 10년동안 보관하도록 하였다(안 제19조 및 제22조). 일곱째,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안 제24조).

이와 같이 전자서명법은 제3조에서 공인전자서명을 도입하여 일반서명보다 높은 법적 효력을 인정하여 공인전자서명의 활용을 적극 촉진하고자 하였다. 즉 일반전자서명과 달리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

75) 정보기술과 사회변동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손진화, 전자상거래법, 신조사, 2016. 3면~8면 참조할 것.

서에 포함된 전자서명검증키에 대응하는 전자서명생성키로 생성한 전자서명은 법령이 정한 서명 또는 기명날인으로 의제하였으며, 또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당해 전자문서 명의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하였다. 이를 통하여 전자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거래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전자거래에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면 긍정적인 효과도 가져왔다.

(2) 2001년 12월 31일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1.12.3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개정이유로 “현행법은 전자서명을 위한 기술을 “전자서명키” 등 특정기술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앞으로의 전자서명 및 인증기술의 발전추세에 대비하여, 보다 다양한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의 개념을 새로이 정의하고,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날로 확대되는 국제거래 상의 전자서명 인증문제를 명확하게 규정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2001.12.31. 전자서명법 일부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정한 기술로 한정하던 전자서명을 관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가능한 모든 기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하였다(법 제2조 및 제3조). 둘째, 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공인인증업무와 관련된 시설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의 안전운영 여부의 점검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법 제18조의3 및 제19조 제2항·제3항). 셋째, 정부는 전자서명의 안전성과 신뢰성의 확보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법 제26조의2). 넷째, 외국정부와 상호인증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과 인증서에 대하여 우리 전자서명법이 정하는

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도록 하였다(법 제 27조의2제4항).

이번 개정에서는 제3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 동안 일반전자서명의 효력에 대하여 침묵하는 태도를 버리고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 따라 일반전자서명은 결과적으로 공인전자서명보다 낮은 증거능력을 가지게 되어 활용가능성이 낮게 되었으며, 관련 조항의 신설이 실질적으로 의미가 있는지(법률에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3) 2005년 12월 30일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5.12.30. 전자서명법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공인인증시장의 균형적 발전과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공인인증 제공역무 영역을 설립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서명에 대한 공인인증서 이용자의 급속한 증가와 공인인증서 활용분야의 확대에 대비하여 공인인증기관의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등 공인인증서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공인인증업무를 표준화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인인증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의 재량행위의 투명화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행정권이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번 개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자서명 관련 시장에서 공인전자서명이 대부분을 점하게 됨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을 중심으로 공인인증업무에 대한 책임과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전자서명법 제26조를 개정

하여 공인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무과실 손해배상책임에 가까운 내용으로 개정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의무화하였다.⁷⁶⁾

(4) 시사점

정부는 올해에도 전자서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는데, 종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및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의 징수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종래 공인전자서명이 가져온 전자상거래의 국내로의 한정되는 문제점 및 보안기술의 발달을 저해하는 문제점 등을 해결에는 소원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의 전자서명법은 나름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전자상거래의 급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최근 전자상거래사업자가 국내시장에만 머물고 있고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전자서명법의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를 국내에 한정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공인전자서명 사업자와 일반전자서명 사업자 간의 불공정성을 초래하고 국내의 보안산업 발달에 부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서명법의 공인전자서명을 폐지하거나(또는 용도를 제한하여 일반서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그 효력을 일반전자서명과 유사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현시점에서는 우선적으로 공인전자서명을 지정전자서명으로 수정하고 그 전자서명의 효력을

76) 제26조(배상책임)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
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축소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 이를 통하여 새로운 보안기술이 전자상거래에도 널리 사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며 새로운 보안기술과 상호 형평성을 유지하고 국내외 전자상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 조성에 부합할 수 있다.

5. 방문판매법의 전부개정과 시사점

(1) 2002년 3월 30일 방문판매법의 전부개정

2002년 3월 30일 방문판매법의 전부개정에서는 그 개정 이유로 “통신판매에 관한 규정을 보완하여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을 방문판매 및 다단계판매 중심으로 개편하고,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전화권유판매·계속거래 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 새로이 추가하는 한편, 다단계판매업자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에 가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명령·과징금제도 등을 도입함으로써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는 특수판매분야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법의 개정 이전에 “통신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용역업자가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광고를 하고 우편·전기통신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2조제6호)”고 규정되어 있어서 전자상거래도 포함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전자상거래의 특성이나 그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방문판매법에서 분리하였다.

당시 방문판매법에서는 통신판매업을 신고업으로 규정하였고(법 제17조 제1항),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원칙적으로 20일로 규정하고 있었다

(법 제21조제1항). 그런데 당시 방문판매법 제21조제1항의 청약 철회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32조의 무조건적인 철회와는 차이가 있다. 즉 당시 방문판매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소비자는 ① 소비자에게 인도될 당시 당해 상품이 훼손된 경우 ②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우 ③ 상품의 인도 또는 용역의 제공이 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에 표시된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보다 늦어진 경우 ④ 통신판매업자가 광고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청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상품을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한편, 2002년 3월 30일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면서 통신판매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편입되었는데, 이 법에서 “통신판매라 함은 우편·전기통신 그 밖에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권유판매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개념을 일부 변경하는 차원에서 용어 정의를 수정하였지만 신고업으로 유지되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통신판매는 전화권유판매와 결별하게 되는 동시에 무조건적 청약철회를 원칙적으로 규정하고 그 철회기간을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변화가 이루어졌다.⁷⁷⁾ 따라서 소비자

77)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있다.

1.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

보호라는 차원에서 보면, 비록 철회기간이 짧아졌다고 하여도 무조건적 청약철회가 도입되었다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다.

(2) 시사점

올해에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박용진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⁷⁸⁾과 이종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안⁷⁹⁾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었는데, 이들 법안은 금융투자업자가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무조건적 청약철회도 가능하기에 이를 배제하고자 하는 법안에 해당된다.

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78) 이 법안에서 개정이유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회사등)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함(안 제3조제4호 신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79) 그 개정이유로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종전에는 금융투자업자(은행, 증권회사 등)의 영업점 내에서 종이문서로만 가능했던 계좌개설 및 금융투자상품 판매업무가 무선통신기기와 전자문서 등을 이용하여 영업점 밖에서도 가능하게 되었음. 그러나 영업점 밖에서 무선통신기기 등을 이용하여 금융투자상품 등을 판매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구속받게 됨. 특히 이 법 제8조의 청약철회가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한 후 투자자가 손실이 발생하였을 때 청약을 철회하게 되면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분을 고스란히 금융투자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이 법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금융투자업자가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거래를 제외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조제4호 및 제5호 신설)”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2002년 방문판매법의 전부개정과 2002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에서 통신판매업이 신고업으로 유지되었고 전자상거래의 경우도 신고업으로 규정되었는데, 전자상거래의 경우는 반드시 신고업을 고집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표시의무를 강화하여 대신하는 방안도 가능한가가 문제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방문판매법의 특수거래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의 철회기간에 차이가 있는데, 사업자나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통일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고 현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철회기간을 연장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도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이 연구에서는 이들 입법과제에 대하여 개선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향후 입법과제로 남겨 두었다).

제 3 절 제19대와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전자상거래 관련 법률(안)

1. 개 요

제19대 국회에서 상정된 법안은 2015년 12월 31일에 국회를 통과한 전자문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포함하여 총12건이 상정되었으며, 제19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전자문서법 일부개정 법안 중에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주요 개정사항을 다룬 일부개정안은 2건이 존재한다(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법안 일부개정안⁸⁰)은 전자문서에 한정된 것이어서 제외한다).

제20대 국회에서도 2016년 8월 12일에 민경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⁸¹과 정부가 2016년 8월 25일

80)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4343, 발의연월일 2015.3.17.)

81)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3, 발의연월일 2016.8.12.)

에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⁸²⁾이 있다.

2. 제19대 국회에 상정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 개 요

제19대 국회(2012~2016)에서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으로 여러 건이 상정되었으며, 김용태의원이 2014년 3월 21일에 대표발의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⁸³⁾과 정부가 2014년 12월 30일에 제출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⁸⁴⁾을 통합한 정무위원회 위원장대안이 2016.3.29.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 일부개정안⁸⁵⁾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와 같이 19대 국회에서 상정된 일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법제화되었지만, 19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도 재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아래에서는 19대 국회에 상정되어 자동 폐기된 법안을 간략히 살펴본다.

(2) 주요내용

제19대 국회에 상정되었으나 처리하지 못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은 총11건(유사 법안은 제외)이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82) 정부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3, 제출연월일 2016.8.25.)

83)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826, 발의연월일 2014.3.21.)

84) 정부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418, 제출연월일 2014.12.30.)

85) 정무위원회 대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641, 제안연월일 2016.3.2.)

첫 번째는, 박민수의원대표발의안⁸⁶⁾으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라는 규정의 해석상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불명확한 법문 규정으로 인해 혼돈의 여지가 있어서 할부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과 같이 ‘소비자를 위한 정보제공’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개정안이다(안 제13조).

두 번째는, 김우남의원대표발의안⁸⁷⁾으로 현행법에서 긴 공휴일이 청약철회기간에 포함되어 있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간이 과도하게 짧아질 수 있어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을 7일에서 7영업일로 수정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안이다(안 제17조제1항).

세 번째는, 강창일의원대표발의안⁸⁸⁾으로 시용기간을 정하여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시용기간과 청약철회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을 구분·명시함으로써 무료 마케팅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안이다(안 제17조).

네 번째는, 이찬열의원대표발의안⁸⁹⁾으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인종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를 규정함으로써 소비자가 공정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다(안 제21조제1항제8호).

다섯 번째는, 이상직의원대표발의안⁹⁰⁾으로 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이

86)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971, 발의연월일 2015.2.13.)

87)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2239, 발의연월일 2014.10.31.)

88)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0431, 발의연월일 2014.5.1.)

89)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0247, 발의연월일 2014.4.18.)

90) 이상직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버몰이 사행심을 유발하는 등 피해를 유발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와 호스팅서비스에 관한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사이버몰에 대한 접근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이버몰 이용자의 피해 확산을 방지하려는 안이다(안 제9조제4항 신설). 또한 이 안에서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 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안 제25조의2 신설).

여섯 번째는, 김정훈의원대표발의안⁹¹⁾으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에게 미리 고지하였더라도 청약의 접수 등 통신판매업무의 일부를 수행한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안이다(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일곱 번째는, 이찬열의원대표발의안⁹²⁾으로 전자상거래의 거래대금 지급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 사업자와 전자결제업자 등이 소비자에게 실제로 지불해야 하는 최종가격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의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준수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다(안 제8조 및 제21조).

(의안번호 10086, 발의연월일 2014.4.7.)

91)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0084, 발의연월일 2014.4.7.)

92)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934, 발의연월일 2014.3.30.)

여덟 번째는, 김용태의원대표발의안⁹³⁾으로 위조상품 판매사이트, 사기사이트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전자상거래 업체에 대해 정식 시정 조치 결정 이전에 게시물 삭제, 사이트 임시폐쇄 등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시 중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안 제32조의2제1항), 임시중지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호스팅사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 관련사업자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협조의무를 부과하고자 하는 안이다(안 제32조의2제3항). 또한, 이 안에서는 신속한 소비자피해 방지를 위해 한국소비자원,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등 관련 소비자보호 기관 및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임시중지명령 발동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안 제32조의2제4항), 그 이행 확보를 위해 임시중지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임시중지명령 협조의무를 위반한 관련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안 제40조 및 제45조).

아홉 번째는, 김희선의원대표발의안⁹⁴⁾으로 전자상거래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 대한 채권 중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채권 양도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양수인에 관한 정보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 등을 미리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부당한 채권추심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하려는 안이다(안 제22조의2, 제42조제1호의2 및 제45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열 번째는, 변재일의원대표발의안⁹⁵⁾으로 토익, 토플 등 특정한 언어능력의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능력평가사업자’로 규정하는

93)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826, 발의연월일 2014.3.21.)

94) 김희선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001, 발의연월일 2014.1.6.)

95)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6569, 발의연월일 2013.8.28.)

한편 취소형태에 따른 취소기간의 차별을 금지 등 규정한 안이다(안 제24조의3 및 안 제34조의2).

열 한번째는, 권은희의원대표발의안⁹⁶⁾으로 통신판매업자에게 사이버물을 제공하여 소비자와의 거래를 알선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식품을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의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고지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과 더불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사이버물의 건전한 운영 책임을 부과하려는 안이다(안 제20조제4항 신설 및 안 제34조제1항).

(3) 시사점

이상과 같이 제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살펴보았는데, 그 중에서 김우남의원대표발의안⁹⁷⁾과 김정훈의원대표발의안⁹⁸⁾ 등이 소비자 보호를 강화와 관련성이 높으므로 20대 국회에서도 우선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제19대 국회에 제출된 많은 법안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의 법체계나 내용에 대한 본질적인 개선을 제안하는 법안은 없었다. 그 원인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지닌 법체계 및 법조항의 난해성과 외국의 입법례나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관한 심도 있는 분석의 결여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무엇보다도 전자상거래에서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적합한 법체계나 입법사항에 대한 인식 부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96)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3039, 발의연월일 2012.12.7.)

97)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2239, 발의연월일 2014.10.31.)

98)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0084, 발의연월일 2014.4.7.)

3. 19대와 제20대 국회에 상정된 전자문서법의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 19대 국회에 상정된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법안 일부개정안⁹⁹⁾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법안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로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의 유지로 인하여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인증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법정인증제를 과감하게 폐지하고 불필요한 인증에 대한 규제를 개선하여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개정법안의 주요 개정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부여하는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에 대한 제반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과태료 규정도 삭제하며(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46조제2항제1호 삭제), 또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 부여의 법률 근거를 삭제하고 그밖에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 조사, 인증 취소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삭제한다(안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고 밝히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폐지와 전자화문서의 작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하여 인증을 폐지하는 법안에 해당된다. 즉 전자문서법에서 도입되어 있는 제도 중에서 그 실효성이 낮은 제도를 폐지하여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주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20대 국회에서 민경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과 동일하다.

99)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번호 17922, 발의연월일 2015.11.27.)

(나)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법안 일부개정안¹⁰⁰⁾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법안 일부개정안의 개정이유로 “현행 법은 전자문서의 효력을 일반적 문서의 효력과 같은 것으로 선언하면서 동시에 전자문서가 법적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경우를 별표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이러한 규정은 법률에서 열거하는 전자문서 이외에는 법적인 효력을 제한하는 규제로서 전자문서의 이용 확산을 저해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에 전자문서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의 효력을 소극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전자문서의 문서로서의 효력을 널리 인정하고자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안 제4조제2항 및 별표 삭제).

이 개정안은 종래 전자문서법의 개정으로 제4조제2항(“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법률에 따른 기록·보고·보관·비치 또는 작성 등의 행위가 전자문서로 행하여진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이 신설된 이후 그 부작용을 해소하는 차원의 개정안으로 볼 수 있다. 사실 전자문서법 제4조제2항은 필요한 경우 해당 개별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어서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안¹⁰¹⁾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전자문서법 제4조제2항 별표에서 빠진 법률의 전자문서 보관 등에 대한 효력을 부정하는 해석도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법 제4조제2항을 삭제하고 관련 개별법에서 필요한 경우 해당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가능하나, 전자문서법의 입법취지(전자문서화의 촉진)를 볼 때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현실에 적합한 측면도 있다.

100)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755, 발의연월일 2015.1.20.)

101)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755, 발의연월일 2015.1.20.)

(2) 20대 국회에 상정된 전자문서법 개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2016년 8월 12일에 민경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²⁾은 앞서 살펴본 19대 국회에 상정되었던 박민식의원 대표발의안¹⁰³⁾과 유사하다. 즉 현재 실적이 저조한 인증제도의 유지로 인하여 인증 취득·유지에 불필요한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서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의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법정인증제를 폐지하고 민간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우수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고, 인증 표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규정 등 우수전자거래사업자 인증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및 제46조제2항제1호 삭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을 삭제하며 운영 실태 조사 등을 포함한 전자화문서의 작성 시설 또는 장비에 대한 인증 관련 제반 규정을 삭제(안 제22조제1항제1호,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삭제)하는 개정안이다.

2016년 8월 25일에 정부가 제출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¹⁰⁴⁾은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위원의 윤리성 확보와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업무 관련 비위(非違)가 있는 위원 등에 대한 면직 또는 해촉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르거나,

102)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563, 발의연월일 2016.8.12.)

103)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원번호 17922, 발의연월일 2015.11.27.)

104) 정부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3, 제출연월일 2016.8.25.)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다.

(3) 시사점

이상과 같이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전자문서법의 일부 개정안이 계속하여 제출되고 있으며, 이들 개정안은 대부분 전자문서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전자문서법의 전자거래조항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보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중복성이 있고 전자거래 일반에 관한 실체조항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으며 전자거래에 관한 정부의 역할 등은 그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4. 19대 국회에 상정된 ‘사이버물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1) 제안이유

19대 국회에서 김영환의원의 대표발의안으로 ‘사이버물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¹⁰⁵⁾이 제안되어 19대 국회의 회기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다. 이 법안의 제안 이유로 “최근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되면서 사이버물을 통한 판매중개시장(소위 오픈마켓) 역시 급속도로 성장하여 2014년 기준 거래액이 약 18조 원 규모임. 이에 따라 중소기업인들의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상거래 진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대형 인터넷

105)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사이버물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5198, 발의연월일 2015.5.20.)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기업인 간에 불공정거래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감시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또한 “2014년 12월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실시한 ‘오픈마켓 불공정거래 실태조사’에서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중소기업인 비율이 82%에 육박하고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한 사례는 없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고 있는 동시에 사이버물중개거래에 한정하여 불공정한 사례도 많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제재한 실적이 없다는 것이다. 이 법의 제안 이유에서는 계속하여 그 이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어 왔음을 고려할 때, 적용대상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제재하고, 조정원 내 별도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여 보다 공정한 거래를 담보하는 내용들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즉 오프라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할 여지가 높지만 사이버물중개거래의 경우에는 오픈마켓의 특성 때문에 구체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명시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법안의 제안이유로 거듭 사이버물판매중개 거래의 공정화를 담보하는 내용으로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나타난 독특한 입법안에 해당된다. 이 법안에서 열거하고 있는 불공정행위가 공정거래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정부가 해당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우리나라의 경우는 이미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주요내용

이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법은 사이버몰판매중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도록 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안 제1조). 둘째,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는 각자의 거래 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였다(안 제4조). 셋째, 사이버몰판매중개자는 중개계약을 체결한 즉시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를 제공하고 중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였다(안 제7조). 넷째,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부당한 거래 거절, 차별적 취급, 사업활동 방해행위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다(안 제8조). 다섯째,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는 자율규약을 정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9조). 여섯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도록 하였다(안 제10조). 일곱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0조). 여덟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1조 및 제22조). 아홉째, 영업정지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시정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안 제23조).

이 법에서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와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 간의 대등한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규정한 실체법적 사항으로 크게 2가지로 들 수 있다. 먼저, 이 법안 제7조에 따르면, 사이버몰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이용사업자가 되려는

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한 즉시 ①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③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④ 그 밖에 중개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명시된 사이버물판매중개계약서를 제공하도록 하였고, 사이버물판매중개자는 계약서를 중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3년간 보관하도록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이버물판매중개자에게 건전한 사이버물판매중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중개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이버물판매중개거래에서 표준이 되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그 시행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이 법안 제8조제1항에 따르면, 사이버물판매중개자는 ① 사이버물 이용사업자나 사이버물이용사업자가 되려는 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사이버물판매중개를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② 사이버물이용사업자등이 취급하는 재화 등의 가격, 거래상대방, 판매량,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③ 사이버물이용사업자등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경제적 이익 제공, 다른 재화 등의 구입, 부가서비스 가입, 판촉행사 참여 등을 강요하는 행위 ④ 사이버물이용사업자등에게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행위 ⑤ 부당하게 사이버물이용사업자등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⑥ 사이버물이용사업자등에게 판매 등에 관한 중요한 경영자료(가격, 판매량, 할인율 등 매출에 대한 세부정보를 포함한다)를 부당하게 자신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⑦ 사이버물이용사업자등에게 다른 사이버물판매중개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이버물판매중개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⑧ 사이버물이용사업자에게 수수료 등의 정산 시 정산 관련 세부내역을 알리지 않거나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⑨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사이버물이용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등 부당하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⑩ 사이버물이용사업자의 재화 등의 판매금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하

는 행위 ⑪ 이들 외의 행위로서 사이버몰판매중개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사이버몰판매중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시사점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법안은 사이버몰판매중개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가 대등한 지위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이를 위하여 계약서의 제공 및 기재사항과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이버몰판매중개 거래에서 사이버몰판매중개자와 사이버몰이용사업자 간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특별법을 만들어서 규제해야 할 정도로 입법화가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가, 그리고 사이버몰판매중개 거래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간의 거래,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대리점거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가맹사업거래처럼 취급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들 문제점에 대한 대답은 국가마다 그 나라의 경제나 정치 등의 상황에 따라 정책적으로 입법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은 법체계(공정거래법과는 특별법 관계)상으로는 내용(과태료, 과징금, 형벌, 손해배상 등)상으로 매우 독특한 입법에 해당된다. 또한 전자상거래는 이들 거래와 달리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제약을 받지 아니하는 거래기반을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차원의 자유경쟁질서 마련이 필요한 분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는 국내에서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야로 취급하기에는 부적절하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특별하게 규제해야 할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아니하는

한(이 법안에서 밝히 입법이유로는 충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사이버몰중개거래를 특별법으로 규제하거나 사이버몰중개거래를 정형화시키는 방식(표준약관 등)으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제고할 필요가 있다.

제 4 절 현행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 관련 법제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1. 개 요

우리나라에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는 여러 법률에 관련되어 상호 긴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여기서 우선적으로 문제되는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고,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법체계상으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를 모호하게 하거나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즉 전자상거래에 어느 법률의 적용을 받는지, 어떠한 불공정행위가 어느 법률에 따라 위반되어 벌칙 등을 받는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 법률이 중복되거나 중첩되는지 등에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법률은 다른 외국법보다 체계상으로나 내용상으로 복잡하고 난해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하여 먼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광고메일의 규제 및 개인정보의 보호 등에 관련된 조항과 정보통신망법, 저작권법, 성매매방지법¹⁰⁶⁾, 청소년성보호법¹⁰⁷⁾, 자본시

106) 성매매방지법 제33조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성매매방지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2명 이상이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이 포함된 디지털콘텐츠로서, 디지털콘텐츠의 대화 화면에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내용 및 성매매가 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게 게시하여야 한다. 성매매방지법 제33조제1항은 정보통신망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는 차별화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이어서 이 법에서 규정할 수 있다.

107) 청소년보호법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장법¹⁰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통된 사항을 정비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된 입법 사항 중에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항과 전자문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입법사항이 중첩되거나 전자문서법의 전자거래 관련 조항을 체계화하여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즉시 삭제하고, 전송을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되,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거나 발견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고자 하였으나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여 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컴퓨터 등에 저장된 저작물 등을 검색하거나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를 할 경우 해당 화면이나 전송프로그램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한 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17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와 관련하여 일종의 특례로 사전적 조치의무와 표시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이 법에서 규정할 수 있는 입법사항으로 판단된다.

10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15에 따르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을 통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 소개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①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게시판을 이용하여 온라인소액투자중개가 이루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경우 투자광고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 ② 게시판을 이용하여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주소를 소개하거나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가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 (i) 위반자에 대한 접속 제한, 법을 위반하여 게재된 정보의 삭제 등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ii) 위반자의 법 위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이행을 이행하여야 하고,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1) 체계화 방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에 관련된 법률의 중첩성을 해소하고 규율하는 입법사항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기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통신판매를 분리하고 전자상거래를 추가하고 새롭게 ‘통신판매중개’를 포함시켜 그 법명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고 명명하였다. 이 법에서 규율하는 대상은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이고 이들 거래질서를 공정화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사항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법에서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 이외의 거래를 규율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이 법에서 ‘소비자보호’라는 명칭이 적합한지가 의문이다. 이 법이 제정되기 이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통신판매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당시 법명에서도 ‘소비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입법사항은 소비자보호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자상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마련하는 차원의 입법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법은 ‘(가칭)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가칭)원격판매법’으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둘째, 이 법에서는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를 구분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혼용하여 사용하는 등 법체계상으로 복잡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하여 통신판매를 중심으로 체계를 정비하고 통신판매와 전자상거래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서는 법체계의 정비와 함께 거래질서를 공정화하는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입법사항의 개선도 필요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부록 6]에 첨부되어 있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조하되, 해당 대비표에서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예시하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시하였음을 밝혀 둔다).

첫째, 이 법 제2조제1호에서 전자상거래에 관한 개념 정의에는 ‘상행위’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는데, 외국의 입법례에서 찾아볼 수 없고 ‘상행위’와 ‘소비자보호’는 상호 모순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 법 제2조제1호의 개념정의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서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개정하고 해당 사업자를 전자상거래업자로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부록 6] (가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개정안 참조).

둘째, 이 법에서 추가한 ‘통신판매중개’가 과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해야 할 사항인지는 의문이며, 독일의 경우는 통신미디어법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독일의 통신미디어법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망법과 유사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한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되는 모든 법률행위에 적용되는 정보통신망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즉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에 규정한 통신판매중개는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에만 나타나는 고유한 현상이 아니어서 이를 삭제하고 정보통신망법에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형태로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부록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제3조제3항, 제9조제2항 및 제3항, 제9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32조의2 제2항 개정안 참조).¹⁰⁹⁾ 물론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도 통합적으로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도록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이 법은 제24조의2¹¹⁰⁾에서 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즉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매권유광고는 정보통신망법에서 제50조¹¹¹⁾ 등에서 통일적

109) 국내 법률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관한 조항은 다수의 법률에 산재해 있고 그에 따라 각 영역별로 개별 법률을 근거로 하여서만 논의가 이어져 온 것이 현실인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근거가 궁극적으로 민법 제760조제3항에 있다는 점을 확인한 이상 개별 영역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인 책임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신지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法的 責任에 대한 研究 -民法上 不法行爲論에 따른 構造 分析을 기초로-,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260면).

110) 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11)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으로 규정할 수 있어서 이를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부록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 개정안 참조).

넷째, 이 법 제29조에서 평가 및 인증 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반드시 정부차원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자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를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를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를 철회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수행하여야 할 사업으로 볼 수 없으며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필요 이상의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그 실효성이 낮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부록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 개정안 참조).

다섯째, 이 법은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특히, 이 법 제7장(벌칙)에서는 다른 외국과 달리 형벌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고 볼 수 있다. 즉 이 법 제42조와 제43조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위법행위를 과도하게 형사벌로 규제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형벌보다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으로 완화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부록 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3조, 제42조 개정안 참조).

3. 전자문서법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전자문서법은 전자상거래의 거래질서 공정화에 가장 긴밀한 관계를 가진 법률에 해당된다. 이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은 전자거래의 도입 초기에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과 중첩되는 사항(소비자보호 등)도 발견된다. 따라서 법률의 중첩성과 규율하는 입법사항의 실효성 등을 분명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체계 및 입법사항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첫째, 전자문서법은 제정당시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되어 있다가 2012년 개정에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으로 변경되었는데,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자문서에 관한 사항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거래에 관한 입법사항은 전자거래의 도입 초기에 필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전자상거래와 정보통신에 관련한 법률 등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 있고 관련 정부부

처도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서 그 필요성이 낮다. 따라서 이 법의 법명을 ‘전자문서법’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둘째, 이 법에서 법명의 개정과 함께 전자거래에 관한 제3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제4장 전자거래기본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장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¹¹²⁾ 등이 문제되는데, 이들 입법사항은 전자거래소비자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 여지가 높아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마찬가지로 이 법 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 제18조의2(인증의 표시), 제18조의3(인증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입법사항은 그 실효성이 낮고 전자상거래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초래하여 이를 삭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부록 7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개정안 참조).

4. 전자서명법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우리나라 전자서명법의 공인전자서명은 다른 외국과 비교하여 강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렇다보니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전자서명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서 이로 말미암아 전자상거래가 국내시장으로 국한되는 현상과 전자서명사업자 간의 불공정성이 문제된다. 즉 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며, 또한 제2항에서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이 법 제3조제3항에 따르면, 공인전자서명외의 전자서명은 당사자간의 약정에

112)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한 분쟁조정위원회의 현황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은영, 소비자법, 박영사, 2013. 398면~407면 참조할 것.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인전자서명과 일반전자서명 간에 그 법적 효력에 있어서는 현저한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의 전자상거래에서 공인전자서명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공인전자명서명에서 ‘공인’이라는 단어가 가지는 모호성과 전자서명사업자 간의 불공정성을 해소하고 전자상거래 거래질서를 글로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폐지하는 방안(또는 일반서명을 대신하는 용도로만 그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 또는 공인전자서명을 대신하는 지정전자서명과 그 효력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들 개선방안 중에서 후자의 경우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대신한 지정전자서명의 도입과 그 전자서명의 효력을 수정하는 개정안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즉 [부록 8] 전자서명법의 개정방안은 공인전자서명을 지정전자서명으로 수정하고 그 전자서명의 효력도 일반서명을 대신하는 것으로 하는 동시에 지정전자문서가 첨부되어 있는 해당 전자문서의 성립에 진정성을 추정하는 법적 효과만을 가지도록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부록 8] 전자서명법 제3조 개정안 참조).

5. 정보통신망법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정보통신망법은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통신판매중개를 삭제하는 경우와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삭제하는 경우 이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법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부록 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4 내지 제45조의 8 개정안 참조).

둘째, 이 법은 제50조에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의2를 대신할 수 있어서 이를 삭제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이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의 전송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¹¹³⁾,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의2와 전자문서법 제18조의7¹¹⁴⁾ 등과 같이 다른 법률에서 유사한 조항을 다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이 법에서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통일적으로 광고메일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제24조의2와 전자문서법 제18조의7를 삭제하여도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이하의 조항으로 규율할 여지가 있다.

6. 저작권법의 체계화와 개선방안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6장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이라는 장을 마련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같은 법 제102조), 복제·전송의 중단(같은 법 제103조),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같은 법 제103조의2),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같은 법 제103조의3),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같은 법 제104조)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들 조항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통신판매중개자 책임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다. 즉 저작권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규정은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거래되는 디지털 콘텐츠의 경우에 적용될 여지가 높으며,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이루어지

113) 우리나라의 스팸메일의 규제 현황과 전망에 대하여는 김태환, 스팸메일의 규제 동향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5집제1호, 동광문화사, 2006. 467면~470면 참조할 것.

114) 제18조의7(광고 송신의 금지) 누구든지 수신자의 공인전자주소에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광고를 송신할 수 없다.

는 모든 법률행위의 경우에도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이 문제된다. 따라서 전자상거래로 거래되는 상품 등에 관한 판매업자, 중개업자, 서비스제공자 등의 책임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이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저작권법 제6장(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등)을 삭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부록 10] 저작권법 개정안 참조).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입법사항 중에서 주요 개선사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는 글로벌 수준의 자유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에 적합한 국내의 법체계와 입법사항에 관한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상거래에 관련 법률은 복잡하고 난해하며 정부의 역할이 어느 나라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따라서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명을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또는 (가칭)원격판매법)’으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법’이라는 법명으로 법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그 법명의 변경과 함께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로 수정하고 전자상거래의 개념을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품 등을 거래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신판매중개 및 서비스제공자(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조항과 구매권유광고 등 정보사회서비스에 관련된 공통적인 입법사항을 삭제하고 정부의 역할도 시장의 자율적 거래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전자문서법은 그 법명의 변경과 함께 전자거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전자문서에 관한 정부의 역할을 새롭게 설정하여 전자상거래의 공정한 거래질서가 시장의 자율에 따라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서명법의 공인전자서명은 전자상거래 거래질서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글로벌 수준의 전자상거래

제5장 결론

거래질서 조성을 위하여 공인전자서명을 폐지하거나(용도를 제한하거나) 또는 공인전자서명의 효력을 일반서명의 효력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섯째, 정보통신망법은 전자상거래를 포함하여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일반법으로서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도 규정하고 있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광고메일 등 공통된 입법사항은 이 법에서 통일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여섯째, 저작권법은 제6장에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해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어서 이를 삭제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 논문 및 서적

김태환, 스팸메일의 규제동향에 관한 고찰, 법과 정책연구 제5집제1호, 동광문화사, 2006.

김기영, 독일 통신미디어법의 새로운 틀과 전망, KHU 글로벌 기업 법무 리뷰 제2권 제1호, 2009.

김진우, 소비자권리지침의 주요내용 및 적용범위에 관한 고찰 - 우리 소비자계약법의 개정방향을 덧붙여 -, 서울법학 제23권제2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고형석, 전자상거래에 있어서 조작실수방지의무와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 모바일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 IT와 법연구 제7집, 2013.

_____, 청약철회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일에 관한 연구, 홍익법학 제13권제3호, 2012.

_____,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호간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가천법학 제6권제3호, 2005.

노태약, 일본 전자상거래준칙 해설, 정보법학 제8권제2호, 2005.

박대동, 전자상거래 동향과 소비자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정책자료집), 국회, 2015.

박상철,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의 법적 쟁점과 정책적 시사점: 소위 ‘해외직구’와 ‘역직구’를 중심으로, 유통법연구 제2권제1호, 한국유통법학회, 2015.6.

참 고 문 헌

- 손진화, 전자상거래법, 신조사, 2016.
- 신지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法的 責任에 대한 研究 - 民法上 不法 行爲論에 따른 構造 分析을 기초로 -,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 이은영,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개정을 위한 연구(결과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12.11.
- _____, 소비자법, 박영사, 2013.
- _____, 전자상거래의 다변화와 소비자보호, 세창출판사, 2015.
- 이금노·황미진, 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 방향 연구(정책 자료집), 한국소비자원, 2016.
- _____, 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과 의의, 소비자정책동향 (제70호), 한국소비자원, 2016.05.31.
- 이병준, 전자상거래에서 부당한 대금 내지 요금 청구와 소비자보호, 서울법학 제23권제3호, 2016.
- 양창수, 독일의 새로운 민법개정제안, 서울대학교법학 제41권제4호, 2001.
- 양창수역, 독일민법전 - 총칙, 채권, 물권 -, 박영사, 2015.
- 홍승희, 독일의 인터넷콘텐츠 규제와 형법의 역할, 원광법학 제28권 제1호, 2012.
- 현대호, 민법총칙, 동방문화사, 2015.
- _____, 채권법, 동방문화사, 2015.
- _____, 전자거래입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법제연구원, 2002.
- _____, 소비자계약관련입법의 체계화방안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3.

_____, 특수거래의 적정화에 관한 법제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Kenneth C. Laudon, Carol Guercio Traver(김범수, 강현정, 문용은, 옥석재
옴김), 전자상거래, 시그마프레스, 2015.

2. 웹사이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대한 OECD 이사회
권고’ 관련 보도자료(2016.3.31.)

(http://ftc.go.kr/news/ftc/reportboView.jsp?report_data_no=6650&tribu_type_cd=&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1&searchVal=전자상거래&startdate=&enddate= 최종방문 2016.10.30.)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http://www.oecd.org/sti/consumer/ECommerce-Recommendation-2016.pdf> 최종방문 2016.10.30.)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0L0031&rid=1> 최종방문 2016.10.30.)

Drucksache 556/06

(<https://www.uni-hamburg.de/elearning/hoou-alt/drucksache-20-14262.pdf> 최종방문 2016.10.30.)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dienste (Elektronischer-Geschäftsverkehr-Vereinheitlichungsgesetz-ElGVG) (Bundesministerium

참 고 문 헌

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https://www.gesetze-im-internet.de/aktuell.html> 최종방문 2016.10.30.)

법제처의 “정보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측면, 특히 역내시장의 전자상
거래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0” 번역문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EU/law/20669?astSeq=403>
최종방문 2016.10.30.)

통계청 보도자료(2015년 12월 및 연간 소매판매 및 온라인쇼핑동향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1/3/index.board?bmode=read
&bSeq=&aSeq=35131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1/3/index.board?bmode=read&bSeq=&aSeq=351319&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Target=title&sTxt=) 최종방문 2016.10.30)

2002 No. 2013 ELECTRONIC COMMUNICATIONS The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http://www.legislation.gov.uk/ukxi/2002/2013/pdfs/ukxi_20022013_](http://www.legislation.gov.uk/ukxi/2002/2013/pdfs/ukxi_20022013_en.pdf)
[en.pdf](http://www.legislation.gov.uk/ukxi/2002/2013/pdfs/ukxi_20022013_en.pdf) 최종방문 2016.10.30.)

Consumer Contract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http://www.legislation.gov.uk/ukxi/2013/3134/pdfs/ukxi_20133134_](http://www.legislation.gov.uk/ukxi/2013/3134/pdfs/ukxi_20133134_en.pdf)
[en.pdf](http://www.legislation.gov.uk/ukxi/2013/3134/pdfs/ukxi_20133134_en.pdf) 최종방문 2016.10.30.)

電子契約導入のポイント

(<http://digitalstorage.jp/e-contract/law/> 최종방문 2016.10.30.)

特定商取引法の条文

(<http://www.no-trouble.go.jp/search/raw/P0203001.html/> 최종방문
2016.10.30.)

일본 소비자청의 소비자계약법

([http://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ystem/consumer_co](http://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ystem/consumer_contract_act/)
[ntract_act/](http://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ystem/consumer_contract_act/) 최종방문 2016.10.30.)

일본 소비자청 소비자계약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http://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ystem/consumer_contract_act/pdf/consumer_contract_act_0001.pdf 최종방문 2016.10.30.)

일본의 ‘특정전기통신역무제공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및 발신자 정보의 개시에 관한 법률(2010)’,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law-precedent/view.do?brdctsno=10075> 최종방문 2016.10.30.)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에 대한 OECD 이사회 권고’에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보도자료

(http://www.ftc.go.kr/policy/consumer/competView4.jsp?report_data_no=6650&tribu_type_cd=11&report_data_div_cd=&currpage=1&searchKey=&searchVal=&startdate=&enddate= 최종방문 2016.10.30.)

3. 법률안

강창일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431, 발의연월일 2014.5.1.)

권은희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039, 발의연월일 2012.12.7.)

김우남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2239, 발의연월일 2014.10.31.)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826, 발의연월일 2014.3.21.)

김영환의원 대표발의, 사이버물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5198, 발의연월일 2015.5.20.)

참 고 문 헌

- 김정훈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084, 발의연월일 2014.4.7.)
- 김희선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001, 발의연월일 2014.1.6.)
- 민경욱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563, 발의연월일 2016.8.12.)
- 박민수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3971, 발의연월일 2015.2.13.)
- 박민식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번호 17922, 발의연월일 2015.11.27.)
- 변재일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6569, 발의연월일 2013.8.28.)
- 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3755, 발의연월일 2015.1.20.)
-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14343, 발의연월일 2015.3.17.)
- 이상직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086, 발의연월일 2014.4.7.)
- 이찬열의원 대표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247, 발의연월일 2014.4.18.)
- _____,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9934, 발의연월일 2014.3.30.)
- 정부발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13, 제출연월일 2016.8.25.)

정부발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13418, 제출연월일 2014.12.30.)

정무위원회 대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641, 제안연월일 2016.3.2.)

부 록

【부록 1】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OECD 권고¹⁾

서문(Foreword)

OECD 이사회가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첫 번째 국제적인 법적 지침(이하 “1999년 권고”)을 채택한 1999년 이래, 전자상거래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2016년 3월 24일, 이 지침과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권고 사항을 개정(이하 “개정 권고”)한 OECD 이사회는 이제 새로운 최신 경향과 오늘날의 역동적인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과제들을 다루려고 한다.

국경 없는 세계 : 국제 전자상거래의 가능성 확인에 관해 1998년 OECD 각료회의가 요청한 바에 따라 1999년 권고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다음과 같은 핵심적 내용들을 제시하였다 :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및 광고 관행, 영업, 상품 및 서비스, 적절한 분쟁 해결 수단과 체계와 거래, 결제대금 보호수단, 사생활 보호와 교육

인터넷 경제의 미래에 관한 2008년 각료회의에서 도출된 각료들의 권고에 따라 다시 OECD는 소비자의 전자상거래 이용 기회를 더욱 확대시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1999년 권고의 검토에 착수하였다. 2009년 워싱턴DC에서 전자상거래 소비자 권리 증진 : 인터넷 경제에서 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를 시작으로 소비자정책에

1)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OECD Recommendation

(<http://www.oecd.org/sti/consumer/ECommerce-Recommendation-2016.pdf>) (최종방문 2016.10.30.). 이 권고는 이금노, OECD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 개정과 의의, 소비자정책동향(제70호), 한국소비자원, 2016.05.31.에서 이미 번역하여 소개하였는데, 이 연구에서는 해당 번역문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적합하지 아니하여 다시 번역하였다. 이 과정에서 해당 번역문을 참조하였기에 사용한 용어나 문장이 일부 유사하거나 같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관한 OECD 위원회(CCP)는 모바일과 온라인 결제, 무형의 디지털 콘텐츠 구매 그리고 참여형 전자상거래 관련 경향 및 정책적 과제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이 작업을 통하여 경쟁 가격에 관한 선택의 폭 확대나 편리하고 안전한 결제방법의 제공 등 전자상거래가 지난 십여 년 동안 소비자에게 가져다 준 많은 장점들이 정리되었다. 그러나 더 복잡해진 온라인 환경과 소비자 관련 위험들 역시 지적되었다. 예를 들어, 모바일 결제나 선불카드 같은 비전형적인 결제 방법으로 구매하는 경우, 또는 앱이나 전자책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권리나 의무를 이해하는 데에 종종 문제를 겪고 있었다.

OECD 소비자 정책 도구(Consumer Policy Toolkit)는 소비자가 “계속적”으로 전자상거래를 위하여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다면 경험적 기술을 근거로 판단을 내리려는 경향은 악화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에 따라 2014년 위원회는 확인된 쟁점을 심도 깊게 살피고, 시장에서의 개혁과 경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1999년 권고를 개정하기로 합의하였다. 전자상거래에 관한 새로운 발전의 핵심적 내용으로 개정 권고가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 **비금전적 거래.** 소비자들은 점점 자신의 개인적 정보를 교환하는 대가로 “무료” 상품과 서비스를 취득하고 있으며 이러한 거래는 이제 명시적으로 이 권고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온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이러한 거래에서 문제를 경험한 소비자들에게 배상 조치를 제공할 방법을 고려하도록 요구된다.
- **디지털 콘텐츠 상품.** 디지털 콘텐츠가 포함된 거래는 종종 기술상, 계약상의 접근 제한 또는 사용 제한의 문제에 부딪히고 많은 소비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다. 이러한 기능적 제한이나 정보처리 제한에 관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 권고에 새로운 문구들이 추가된다.

- **능동적 소비자.** 현재 전자상거래 사업 모델에서는 제품 홍보와 개발에 참여적 역할을 담당하고 다른 소비자들과 거래하는 소비자의 등장으로 점차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다. 따라서 권고의 범위는 더 확대되어 이제는 소비자 대 소비자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사업 활동까지 포함한다. 이 권고에 소비자의 홍보가 신뢰할 수 있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새로운 규정이 추가된다.
- **모바일 기기.** 전자상거래에서 모바일 기기의 사용 증가에 대응하여 (예를 들어, 작은 스크린 위에) 효과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소비자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몇 가지 기술적 과제들이 발생하였다. 이 권고는 기술적인 제한이나 사용 기기의 특수한 성질을 설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2개의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다.
- **사생활과 보안상의 위험.** 소비자 정보는 많은 전자상거래 서비스의 핵심에 있으며 사생활 침해와 보안상의 위험을 증대시킨다. 이 권고는 다른 OECD 지침과 일관되게 이러한 위험을 제시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B2C 전자상거래에서 특히 중요한 특별한 보호책을 강조하는 2개의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다.
- **결제 대금 보호.** 이 권고는 결제 대금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사용하는 결제시스템 유형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에게 결제시스템 전반에 걸친 소비자 보호의 최소 단계를 함께 개발하도록 요구한다.

- **제품 안전성.** 몇몇 나라에서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판매가 금지되거나 리콜이 된 불안정한 제품들이 전자상거래에서 거래가 가능하다. 불안정한 제품은 온라인에서도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해당 회사는 관련 기관과 함께 문제 상황을 공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새 규정이 추가된다.

이에 더하여, 개정 권고는 몇몇 규정을 개정하였다. 그 중 하나는 소비자 보호 기관의 본질적 역할과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는 권한을 강화할 필요성과 관련이 있으며 정보 교환 및 국제거래에서의 협업과 관련이 있다. 다른 하나는 정보와 행동경제학에서 도출된 통찰에 근거한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이 분야의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입증 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개정 권고는 기업, 시민사회 그리고 인터넷 기술 공동체와의 긴밀한 협의 속에서, 현 위원장인 Nathalie Homobono와 전 위원장인 Michael Jenkins의 지휘 하에 소비자정책위원회(CCP)에 의해 개발되었다. 권고를 준비하는 동안 소비자정책위원회는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국제소비자보호강화 네트워크(ICPEN)와 같은 다른 국제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이사회 권고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Consumer Protection
in E-commerce)
2016년 3월 24일 - C(2016)13

이사회는,

1960년 12월 14일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관한 협약 제5조 b)를 **고려하고**,

이 권고가 대체하게 될 전자상거래 환경 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C(99)184/최종]를 **고려하고**,

국경을 넘는 사기 및 기망적 상거래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c(2003)116] ; 소비자분쟁해결 및 피해배상을 위한 이사회 권고[C(2003)74] ; 인터넷 경제의 미래를 위한 선언 (서울 선언) [C(2008)99] ; 인터넷 정책 수립의 원칙에 관한 이사회 권고 [C(2011)154] ;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적 유통 지침에 관한 이사회 권고(사생활 지침) [C(80)58최종, 개정됨] ; 소비자 정책 결정에 관한 이사회 권고 [C(2014)30] ; 경제 및 사회변영을 위한 전자적 보안 위험 관리에 관한 이사회 권고 (보안 위험 권고) [C(2015)115]를 **고려하고**;

전자상거래로 인한 소비자들의 이익, 즉 확장된 사업자 집단이 경쟁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디지털 콘텐츠 등 여러 상품 및 서비스를 다양한 기기와 편리한 결제 수단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성격, 즉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수집, 비교, 검토, 공유하게 만들고 소비자 대 소비자 거

부 록

래를 가능하게 하는 등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증진시키는
성격을 **인식하고;**

언제 어디서나 특히, 국경을 넘어서까지 가능한 쉽고 신속한 거래는
소비자가 친숙하지 않은 상황을 조성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보 공개, 오도되거나 불공정한 거래 관행, 거래 확정과 지불수단,
사기와 신원 도용 그리고 분쟁해결과 피해구제에 관하여 소비자가 직
면한 과제들을 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능력을 가진 소비자
보호기관 설치의 필요성과 국경을 넘는 거래에서 정보 교환과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서 직면하는 사생활 및 보안상의 위험 증가와
관련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들의 신뢰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생활 보
호 지침과 보안상 위험에 관한 권고에 부합하도록 이러한 위험을 효
과적으로 해결할 필요성을 **고려하고;**

전자상거래에서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의 핵심적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추가적 수단에 의하여
보충될 수 있음)이 정부,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갖는 가치를 **인식하고;**

혁신적이고 기술중립적이며 정보와 행동경제학에서 도출된 근거와
통찰에 따른 전자상거래 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유연하고 국제적으로 확장가능
한 정책을 개발함에 있어 다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공통된 투명한
절차가 갖는 가치를 **인식하고;**

전자상거래 관련 행위자 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책임의 적절한 분배가 소비자 복지 증진과 신뢰 강화에 핵심적임을 강조하며;

소비자정책위원회(CCP)의 제안에 대해:

- I. 이 권고는 소비자 대 소비자 간 거래를 가능하고 용이하게 하는 사업자의 상거래 행위를 포함하는 사업자 대 소비자 간 전자상거래(이하 전자상거래)에 적용되며, 이는 대가의 지급 여부를 불문하고 상품과 서비스 및 디지털 콘텐츠(이하에서는 상품과 서비스)의 거래에 관련된 상거래 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 II. 이 권고를 채택하는 회원국과 비회원국(이하 채택국)에게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의 방법으로 정책시스템에 아래의 원칙들을 도입할 것과 투명하고 포괄적인 방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단체 및 다른 민간 사회단체들(이하, 이해관계자)과 협력할 것을 권고한다.

제 1 장 : 일반 원칙

A. 투명하고 효과적인 보호

- 1. 전자상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들은 다른 종류의 상거래에서 보장되는 소비자 보호의 최소 단계 이상으로 투명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를 보장받아야 한다.

- 2. 정부와 이해관계자들은 그러한 보호를 달성하기 위하여 함께 협력하여야 하고 아동과 사회적 약자 또는 장애를 가진 소비자의 문제를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의 특수한 상황에서 숙고할 필요가 있는 변화가 무엇인지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결정을 내림에 있어 정보와 행동경제학적 관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B. 공정한 영업, 광고 그리고 마케팅 관행

3.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사업자는 소비자의 이익에 관해 당연히 기울여야 할 배려를 제공하여야 하고, 신의성실의 일반원칙은 물론 공정한 영업과 광고 및 마케팅 관행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기망이나 오도하거나, 사기나 불공정해 보이는 관행을 표시하거나 생략하거나 이와 관련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이름, 용어, 그림, 오디오와(또는) 비디오를 통하여 전달되는 사실에 관한 묵시적 부실표시뿐만 아니라 은폐되거나 인식 또는 이해곤란한 면책사항 및 표시나 관행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일반적인 표현도 포함된다.
5. 사업자는 거래와 관련하여 소비자의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 같은 조건을 부실표시하거나 숨겨서는 안 된다.
6. 사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상 조건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7. 만약 계약 내용에 소비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전적 배상을 규정한 경우 그 배상은 야기될 손해에 비례하여야 한다.
8.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 수집이나 이용에 관련하여 기망적 관행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9. 사업자는 기망이나 오도하거나, 사기나 불공정한 관행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의 행위를 허용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10. 사업자는 어떠한 명시적 표시와 묵시적 표시가 계속되는 기간과 그 이후 상당 기간 동안 이를 입증해 줄 수 있어야 한다.

11. 사업자는 소비자와의 거래에 관하여 산업계의 자치 법규나 프로그램, 사생활 고지 또는 기타 정책과 관행을 준수하고 있다는 명시적 표현이나 묵시적 표시 내용을 지켜야 한다.
12. 사업자는 부정적인 후기(reviews), 분쟁 제기 또는 정부기관 및 기타 고발센터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려고 시도해서는 안 된다.
13. 광고와 마케팅은 광고와 마케팅이라는 사실이 분명히 식별되어야 한다.
14. 광고와 마케팅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밝히지 아니하면 기망이 되는 경우 그 사업자를 밝혀야 한다.
15.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광고나 마케팅이 실제 특성이거나 접근성 및 사용 조건과 일치한다는 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16. 사업자는 광고된 가격이 상품이나 서비스의 총 비용을 부실표시하거나 숨기는 것이 아님을 보장하여야 한다.
17. 광고와 마케팅에 사용된 추천들은 신뢰할 수 있고, 입증될 수 있어야 하며 지지자들의 의견과 실제 경험을 반영하여야 한다. 온라인 추천자와 사업자 간에 실질적 결연관계가 있는 경우 그 추천이 소비자에게 중요성과 신뢰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명확하고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18. 사업자는 아동, 사회적 약자 또는 장애인인 소비자 기타 제시된 정보를 완전히 이해할만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 또는 마케팅을 하는 경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19. 의무가 아니더라도 사업자들은 적절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확정된 거래를 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부 록

20. 사업자는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특징과 자신들이 목표하는 시장의 다양한 규제적 성격을 고려하여야 한다.
21. 사업자는 사업자의 신원이나 소재지를 감추거나 소비자보호 기준과/또는 집행체계를 준수하지 않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부당하게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22. 사업자는 이메일이나 다른 전자적 수단을 통한 일방적인 상업적 메시지를 수신할지 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편리한 절차를 개발하고 도입하여야 한다. 언제라도 소비자가 그러한 메시지 수신 거부를 요청하면, 그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23.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이나 안전에 불합리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광고하거나 마케팅해서는 안 된다. 사업자는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러한 위험을 야기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관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
24. 사업자들은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온라인 결제시스템을 만들 때 장애인들의 필요를 고려하여야 한다.

C. 온라인 정보공개

일반 원칙

25. 온라인 정보공개는 소비자가 명백하고 정확하며, 접근이 용이하고 뚜렷하게 거래에 관한 결정을 내리는 데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그러한 정보공개는 평이하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 적절한 시간에, 그리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에 관해 완전하고 정확하며 지속적인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6. 거래에서 1개 이상의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에 관한 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동일한 언어들로 제공하여야 한다. 언급된 모든 정보에서 내용상 비용이 분명한 경우가 아니라면 통용되는 통화로 비용을 적시하여야 한다.
27. 사업자는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술적 한계나 기기 또는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업자에 관한 정보

28. 소비자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최소한 i) 사업자명; ii) 신속하고 용이하며 효과적으로 소비자와 사업자가 통신할 수 있는 방법; iii) 제기된 분쟁에 대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해결 수단; iv) 국내 및 국외 분쟁에서의 법적 절차; 그리고 v) 사업장의 위치 등 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가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9. 이 정보에는 법률상의 상호와 거래시의 상호; 주된 사무소의 지리적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또는 다른 전자적 연락 수단; 소비자와 상업적 거래를 하는 웹사이트에 대한 정확한 도메인명의 등록 정보; 그리고 관련 정부 인허가 또는 면허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30. 사업자가 관련 자치규범 프로그램, 사업자 단체, 분쟁해결기관 또는 다른 단체의 회원임을 공시한 경우, 그 사업자는 소비자가 쉽게 그 기관들에 접근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용이한 방법과 그 조직에 관한 법규 및 실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 조직이 제공하는 분쟁해결 수단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

31. 소비자와의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사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정도로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32. 상품과 서비스의 유형 등 관련 요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i) 핵심적인 기능과 호환성;
 - ii) 소비자가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얻는 데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기술적 또는 계약적 요건, 제한 또는 조건;
 - iii) 안전과 건강 관련 정보; 그리고
 - iv) 모든 연령 제한.

거래에 관한 정보

33. 전자상거래에 관련된 사업자는 소비자가 거래에 관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에 충분한 정도의 거래 관련 조건 및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소비자는 거래의 모든 단계에서 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34.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거래 관련 조건들을 명확하고 완전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35. 거래와 관련하여 적용가능하고 적절한 정보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i) 사업자가 요청하고/하거나 부과하는 모든 부가비용을 포함한 최초 가격;
 - ii) 소비자가 거래를 확정하기 이전에 사업자가 요청하고/하거나 부과하는 다양한 필수적, 선택적 비용에 관한 정보;
 - iii) 제3자가 요청하고/하거나 부과하는 기타 정기적 비용의 존재에 관한 고지;

- iv) 자동적 계속거래와 정기구독 등에서의 계약존속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그러한 자동갱신을 해지하는 방법 등을 포함한 기간, 조건 및 결제 방법;
- v) 배송 또는 이행 기간;
- vi) 철회, 해제 또는 취소, 애프터서비스(after-sales service), 반품, 교환, 환불, 품질보증에 관련된 상세 조건;
- vii) 사생활 정책; 그리고
- viii) 이용가능한 분쟁해결 수단과 피해 구제 관련 정보.

D. 확정 절차

- 36. 사업자는 지급 의무가 발생하고 불이행시 계약상 책임을 지게 되는 시점인 소비자의 거래 확정 시점을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인해 주어야 하며, 이는 거래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 단계에서, 특히 새로운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 필요하다.
- 37.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거래확정을 요구하기 전에 배송과 가격에 대한 정보와 함께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정보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이 기회에 소비자는 거래를 확인하고 오류를 정정하거나 거래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 38. 사업자는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았다면 거래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 39. 사업자는 소비자가 거래확정을 위하여 사용한 기기나 플랫폼의 호환성과 관련하여 완전하고 정확하며 상당기간 지속적으로 거래 기록을 유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 결 제

40.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사용하기 쉬운 결제시스템을 제공하고 승인되지 않은 접근이나 개인정보의 사용, 사기나 신원도용과 같이 결제와 관련한 위험에 대응하는 보안장치를 도입하여야 한다.
41. 정부와 이해관계자는 전자상거래 결제의 유형에 관계없이 결제방법에 관한 소비자 보호의 최소 단계를 개발하는 데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호에는 미승인 또는 기망적인 비용 청구에 대하여 법규 또는 산업체 자율로 정한 소비자의 책임 제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에스크로 서비스와 같이 소비자의 상거래에 대한 신뢰를 강화시키는 다른 수단의 개발 또한 장려되어야 한다.
42. 정부와 이해관계자는 지역 간 결제대금의 보호 기준이 조화를 이루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다른 분야를 모색하고, 보호 수준이 다른 경우 국제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F. 분쟁해결과 피해구제

43. 소비자는 국내외 전자상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시에 공정하고, 사용이 용이하며, 투명하고 효과적인 메커니즘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가능한 추가적이고 불필요한 비용이나 부담이 없어야 한다. 여기에는 내부적 불만 처리나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와 같은 재판 외 메커니즘이 포함되어야 한다. 준거법과 관련하여 재판 외 메커니즘의 이용이 소비자로 하여금 다른 형태의 분쟁해결이나 피해구제를 막아서는 안 된다.

내부적 불만처리

44. 사업자의 내부적 불만처리 메커니즘은 소비자가 비공식적으로 직접 사업자와 함께 불만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 개발이 장려되어야 한다.

대체적 분쟁해결제

45. 소비자는 전자상거래에 관한 분쟁, 특히 소액사건이나 국가 간 거래에 관한 분쟁을 용이하게 해결하기 위한 온라인 분쟁해결제 등 ADR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제도가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더라도 개별 사건의 결과는 그 재정 기타 지원으로 인한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일관된 분쟁해결수단을 제공하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피해구제

46. 사업자는 결함이 있는 상품과 서비스로 인하여 기기에 손상을 입히거나, 광고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배송상의 문제가 생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구제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 정부와 이해관계자는 비금전적 거래와 관련하여 어떻게 적절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
47. 정부와 이해관계자는 소비자보호 집행기관과 소비자단체 및 소비자 불만사항을 다루는 자율규제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들이 금전적 피해배상을 포함하여 소비자를 위한 피해구제조치를 취하거나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G. 사생활과 보안

48. 사업자는 소비자의 정보 수집 및 이용이 적법하고 투명하며, 공정할 것을 보장함으로써 소비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참

부 록

여와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며, 합리적 수준의 보안 장치를 제공해야 한다.

49. 사업자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작용을 감소시키거나 경감시키기 위하여 디지털 보안 위험을 통제하고 보안 장치를 도입해야 한다.

H. 교육, 인식 및 디지털 역량

50. 정부와 이해관계자는 정보에 근거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소비자, 공무원 및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에 관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 그리고 온라인 활동과 관련하여 국내·외에서의 권리와 의무 등 소비자보호 체계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51. 정부와 이해관계자는 소비자가 전자상거래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디지털 환경 접속과 사용에 관한 지식 및 기술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 인식제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소비자의 디지털 역량을 제고시키고자 노력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나이, 소득 그리고 읽고 쓰는 능력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고안되어야 한다.
52. 정부와 이해관계자는 소비자와 사업자의 교육을 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로 가능해진 혁신적인 기술을 포함한 모든 효과적인 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제 2 장 이행원칙

53. 이 권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는 이해관계자들과 다음과 같은 협력을 해야 한다:

- i) 다음의 방법으로 증거에 기반한 전자상거래 정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 소비자 불만사항, 설문조사 및 트렌드 동향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분석, 그리고
 - 정보와 행동 경제학적 관점에 기초한 경험적 연구
- ii) 기술중립성의 원칙 하에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채택하여 적용
- iii) 사기, 오인 유발 또는 불공정한 상거래 관행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진 소비자보호집행기관, 그리고 그러한 권한의 효과적인 행사를 지원하는 자원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단체를 설립 및 유지
- iv) 국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 사업자의 사기 및 기망적 상업행위와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국외 사업자의 사기와 기망적 상업행위에 대하여 소비자보호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실시
- v) 효과적인 분쟁해결제도의 도입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에서의 신뢰 제고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상호 규제 및 자율규제 체제의 지속적인 개발을 장려
- vi) 소비자를 보호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장려
- vii) 소비자가 소비자 교육정보나 상담을 쉽게 접할 수 있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불만 제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역량을 함양

제 3 장 국제적 협력원칙

- 54. 정부는 국제적 전자상거래의 맥락에서 효과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을 하여야 한다:
 - i) 소통하고 협력하며, 가능하다면 국제적 수준에서 정부와 이해관계자들 간에 공동 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

부 록

- ii) 소비자보호 집행기관과 기타 관련 기관은 고지, 정보공유, 조사 지원 및 공동 행동을 통해 조사 및 이행시 상호 협력하고 조직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그 역량을 제고하며, 특히 정부는
 - 법집행과 규제 감독 그리고 집행 준수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가 최소한 사업장과 주사무소의 위치 등이 포함된 이용가능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청
 - 사업자의 영업비밀에 관한 정보나 개인정보에 대한 적절한 보호를 전제로 소비자보호집행기관이 정보 공유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
 - 소비자보호 집행기관의 재량 하에 있는 특정 사건이나 사건의 조사 시에 협조가 필요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지원과 협력을 단순화하고, 중복을 피하며,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의견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
- iii) 이러한 협력을 달성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기존의 국제 네트워크를 이용하고, 양자 간 그리고/또는 다자 간 협정이나 기타 협의를 체결
- iv) 소비자의 복지 증진과 신뢰 제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 보장 및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위하여 소비자 보호의 핵심적인 내용에 관해 지속적으로 국내 및 국제적 수준의 합의 도출
- v)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결과에 관한 판결, 그리고 사기나 오도 또는 불공정한 상업적 행위에 대한 법집행 관련 판결의 상호 승인 및 집행을 위한 협정이나 기타 협의 수단의 개발을 위하여 협력
- vi)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준거법과 재판관할권의 역할을 고려

Ⅲ. 이해관계자가 전자상거래에 접근할 때, 이 권고를 전파하고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Ⅳ. 채택국과 사무국장은 이 권고의 확산에 동참한다;

V. 비채택국에게도 이 권고를 고려하고 준수하도록 요청한다.

VI. 소비자정책위원회(CCP)는 다음의 사항을 하도록 지시한다:

- i) 이 권고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난 진전과 경험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포럼의 제공, 그리고
- ii) 이 권고의 실행을 모니터링하고 5년 내에 이사회에 그 채택과 이후 상황에 대한 내용의 보고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¹⁾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은,

유럽공동체 설립 조약, 특히 제47조(2), 제55조와 제95조를 고려하고,

위원회 제안을 고려하고²⁾,

경제사회위원회의 의견을 고려하고³⁾,

조약 제251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⁴⁾,

다음과 같은 전문에 따라 이 지침을 채택한다;

1)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f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http://eur-lex.europa.eu/legal-content/EN/TXT/PDF/?uri=CELEX:32000L0031&rid=1> 최종 방문 2016.10.30.). 이 지침은 이미 법제처에서 번역되어 일반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법제처의 “정보사회서비스의 법률적 측면, 특히 역내시장의 전자상거래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 2000” 번역문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EU/law/20669?astSeq=403> 최종 방문 2016.10.30.)), 이 연구에서는 해당 번역문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여 다시 번역하였고 그 과정에서 법제처의 번역문에서 사용한 단어나 문장의 일부가 활용되었음을 밝혀둔다.

2) OJ C 30, 5.2.1999, p.4.

3) OJ C 169, 16.6.1999, p.36.

4) 1999년 5월 6일 유럽의회 의견 (OJ C 279, 1.10.1999, p.389), 2000년 2월 28일 위원회 공통 입장 (OJ C 128, 8.5.2000, p.32)과 2000년 5월 4일 유럽의회 결정(아직 공보 발간 전)

부 록

- (1) 유럽연합은 회원국과 유럽인들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경제적·사회적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한다; 조약 제14조(2)에 따라 역내 시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제약이 없고 설립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내부적 제약 없는 이 지역 내의 정보사회서비스의 발전은 유럽 사람들을 가르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 (2) 모든 사람의 인터넷 접속이 가능해진다면, 정보사회에서의 전자상거래 발전은 유럽공동체, 특히 중·소규모의 기업에 중요한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유럽기업 주도의 혁신을 통하여 경제적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며, 유럽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
- (3) 유럽공동체법 및 법적 질서의 특징은 유럽인들과 유럽기업이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기회의 혜택을 온전히 받게 만드는 핵심적인 자산이다; 따라서 이 지침은 정보사회서비스에 있어 유럽공동체를 현실적으로 국경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하여 공동체의 법적 통합을 높은 단계로 확립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 (4) 전자상거래는 역내시장에 온전히 이익이 되는 것이며, 따라서 1989년 10월 3일 텔레비전 방송활동에 관한 회원국 사이의 법률, 규칙 또는 행정명령의 조정에 관한 의회 지침 89/552/EEC⁵⁾와 함께 높은 단계의 공동체 결속을 달성하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 (5) 설립의 자유와 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덜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법적 장애물들은 역내시장의 적정한 기능 보장을 통한 공동체 내 정보사회서비스의 발전을 방해한다; 이러한 방해는 입법 형식의 다양성과 서비스에 적용되는 국내법의 불확실성에 기인한다; 관련 영역에서 입법적 조정이 없다면 이러한 장애들은 EC법원의 판례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밖에 없다; 법적 불확실

5) OJ L 298, 17.10. 1989, p.23.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97/36/EC 지침으로 개정된 지침 (OJ L 202, 30.7.1997, p.60).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성은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에서 시작된 서비스를 관리하는 경우에 존재하게 된다.

- (6) 공동체의 목적과 조약 제42조, 제29조 그리고 부수적인 공동체법에 따라, 각 국내법을 조정하고 역내 시장의 적정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공동체에서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 하여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역내시장에서 제기되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다루기 때문에 조약 제5조에 규정된 보충성 원칙의 요건을 온전히 충족시킨다.
- (7) 법적 확실성의 보장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하여, 이 지침은 역내시장에서 전자상거래의 특정한 법적 측면을 포괄하는 명확하고 일반적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8) 이 지침의 목적은 회원국 사이의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며 형사법 영역을 통합시키는 것은 아니다.
- (9) 정보사회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은 많은 경우, 모든 회원국이 비준한 소위 인권과 기본적 자유권 보호를 위한 유럽인권조약 제10조(1)에 명기된 표현의 자유라는 일반적 원칙을 구체화한 공동체 법의 반영이다; 이런 이유에서 정보사회서비스의 공급에 관한 지침들은 정보사회서비스 활동들이 위 조항에 따라 자유롭게 행해지는 것을 보장하며 오직 조약 제46조(1)과 위 조문 2문단에 규정된 사유만을 제한 조건으로 한다; 이 지침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국가별 근본적 원칙이나 이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는 없다.
- (10)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 지침이 규정한 조치들은 역내시장의 적절한 작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로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 전자상거래를 이용함에 있어 실질적으로 역내장벽이 없는 공동체 지역을 만들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도, 이 지침은 일반 이익, 특히 미성년자와 인간의 존엄성, 소비자 보호와 공중 보건을 위하여 높은 수준의 보호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조약 제152조에 따라 공중보건의 보호는 다른 공동체 정책들의 핵심적 요소이다.

- (11) 이 지침은 특히 공중보건과 소비자이익 보호에 관해서는 공동체 법률들이 규정한 보호의 정도를 전혀 침해하지 않는다; 그 중 1993년 4월 5일 소비자계약의 불공정 조건에 관한 위원회 지침 93/13/EEC⁶⁾와 1997년 5월 20일 원거리계약에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지침 97/7/EC⁷⁾가 핵심적이다; 또한 이 지침들은 정보사회서비스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가능한 동일한 위원회 지침에는 특히 1984년 9월 10일 허위경쟁 광고에 관한 위원회 지침 84/450/EEC⁸⁾, 1986년 12월 22일 소비자 신뢰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행정명령의 조정에 관한 위원회 지침⁹⁾, 1993년 5월 10일 증권투자서비스에 관한 위원회 지침 93/22/EEC¹⁰⁾, 1990년 6월 13일 패키지 여행, 휴가에 관한 위원회 지침 90/314/EEC¹¹⁾, 1998년 2월 16일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품 가격 지시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98/6/EC¹²⁾, 1992년 7월 29일 일반 상품 안전에 관한 위원회 지침 92/59/EEC¹³⁾, 1994년 10월 26일 시간당 사용하는 부동산의 사용에 관한 계약에서의 구매자 보호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94/47/EC¹⁴⁾, 1998년 5월 19일 소비자 이익 보호를 위한 금지에

6) OJ L 95, 21.4.1993, p.29.

7) OJ L 144, 4.6.1999, p.19.

8) OJ L 250, 19.9.1984, p.17.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7/55/EC으로 개정된 지침(OJ L 290, 23.10.1997, p.18).

9) OJ L 42, 12.2.1987, p.48.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98/7/EC으로 개정된 지침(OJ L 101, 1.4.1998, p.17).

10) OJ L 141, 11.6.1993, p.27.

11) OJ L 158, 23.6.1990, p.59.

12) OJ L 80, 18.3.1998, p.27.

13) OJ L 228, 11.8.1992, p.24.

14) OJ L 280, 29.10.1994, p.83.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98/27/EC¹⁵⁾,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법률, 규칙, 행정명령의 조정에 관한 위원회 지침 85/374/EEC¹⁶⁾, 1999년 5월 25일 소비자 상품의 판매와 보증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1999/44/EC¹⁷⁾, 장래에 예정된 금융서비스의 원거리 마케팅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지침과 1992년 3월 31일 의약품 광고에 관한 위원회 지침 92/28/EEC¹⁸⁾이 포함되며; 이 지침은 역내 시장에 적용되는 1998년 7월 6일 담배 광고 및 후원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칙, 행정명령의 조정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¹⁹⁾이나 공중보건 보호에 관한 지침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위에서 언급한 지침, 특히 97/7/EC가 규정한 요건들을 지지한다.

- (12) 현 시점에서 자유롭게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조약으로 보장할 수 없는 분야이거나 부수적 입법이 존재하는 경우, 이 지침에서 특정 행위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 특정 행위를 제외하는 것이 역내시장의 적정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입증된 조치들까지 금지하지 것은 아니다; 세금, 특히 이 지침이 적용되는 다수의 서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이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13) 이 지침은 실제적인 의무를 부과하거나 전자상거래의 물리적 측면에 대한 공동체의 조치를 미리 설계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지 않다.

15) OJ L 166, 11.6.1998, p.51. 지침 1999/44/EC으로 개정된 지침(OJ L 171, 7.7.1999, p.12).

16) OJ L 210, 7.8.1985, p.29. 지침 1999/34/EC으로 개정된 지침(OJ L 141, 4.6.1999, p.20).

17) OJ L 171, 7.7.1999, p.12.

18) OJ L 113, 30.4.1992, p.13.

19) OJ L 95, 21.4.1993, p.29.

- (14)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사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는 1995년 10월 24일, 개인정보 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위원회 지침 95/46/EC²⁰⁾, 정보사회서비스에 전적으로 적용되는 1997년 12월 5일 전기통신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97/66/EC²¹⁾에 의하여 규율된다; 이 지침들은 이미 개인정보 분야에서 공동체의 법적 체계를 확립시켰기 때문에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 특히 회원국 간의 개인정보에 관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이 지침에서 관련 쟁점을 다시 다룰 필요는 없다; 이 지침의 이행입법 제정과 적용은 전적으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원칙, 특히 일방적 상업통신과 중개자의 책임에 관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지침은 인터넷과 같은 공개정보망에 익명으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
- (15) 통신비밀은 97/66/EC 지침의 제5조가 보장한다; 그 지침에 따라 회원국이 법률상 허락된 이외에, 송수신인을 제외한 제3자의 통신을 방해하거나 감시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 (16) 이 지침의 적용범위 중 도박행위에 대한 배제는 오직 금전적 내기를 하는 게임, 복권, 경매 거래 등에만 적용된다; 홍보 대상 상품이나 서비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홍보를 위한 광고나 상품 및 서비스의 판매 촉진을 위한 게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17) 정보사회서비스의 정의는 이미 1998년 6월 22일 정보사회서비스의 기술적 기준과 규칙에 있어서 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를 규정한 98/34/EC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²²⁾과 1998년 11월 20일 조건부

20) OJ L 281, 23.11.1995, p.31.

21) OJ L 24, 30.1.1998, p.1.

22) OJ L 204, 21.7.1998, p.37. 98/48/EC 지침으로 개정된 지침(OJ L 217, 5.8.1998, p.18).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접속서비스의 법적 보호에 관한 98/84/EC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²³⁾에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정의는 금전적 대가를 전제로, 원거리에서 정보처리(전자적 압축을 포함)와 저장을 위하여, 그리고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적 요청에 따라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서비스에 적용된다; 정보처리와 저장에 적용되지 않는 84/34/EC 지침의 부록 V에 명시된 목록의 서비스에는 이 정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 (18) 정보사회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광범위한 경제적 활동을 포함한다; 특히 이러한 활동에는 온라인 상품 판매가 포함된다; 오프라인 상의 구매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상품을 배송해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사회서비스는 온라인에서 체결된 계약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신자들이 금전적 대가를 지불하지는 않지만 경제적 활동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 예를 들어 온라인상의 정보, 상업광고의 제공 또는 정보의 검색, 접근, 복구를 위한 도구 제공과 같은 서비스도 포함한다; 또한 정보사회서비스는 정보통신망 접속서비스나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호스팅과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들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포함한다; EEC/89/552 지침이 의미하는 텔레비전 방송과 라디오 방송은 개별적 요청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정보사회서비스가 아니다; 반면, 주문형 동영상이나 전자메일에 의한 상업광고와 같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들은 정보사회서비스이다; 거래, 영업 또는 직업상 행위 이외의 행위를 하는 자연인의 전자메일 또는 이와 유사한 개인적 통신과 이러한 자연인 사이의 계약에 이용된 통신은 정보사회서비스가 아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계약적 관계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아니다; 법적 회계 감사나 환자에 대한 물리적 검사가 필요한 의사의 진단처럼 그 본질상 원거리에서 전

23) OJ L 320, 28.11.1998, p.54.

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이루어질 수 없는 활동들도 정보사회서비스가 아니다.

- (19)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장소는 불특정한 기간 동안 고정된 설비에 의하여 실제적인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판례가 제시하는 설립 개념을 존중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 요건은 회사가 한정된 기간에만 존속하는 경우에도 충족되어야 한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설립 장소는 웹사이트의 기술지원을 하는 장소나 웹사이트가 접속가능한 장소가 아니라 그 업체가 경제적 활동을 추구하는 장소여야 한다; 설립 장소가 여러 곳 있는 서비스제공자의 경우 서비스 설립의 장소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디에서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주된 활동을 하는 사무소를 설립지로 간주한다.
- (20) “서비스 이용자(recipient of a service)”의 정의는 인터넷 같은 공개정보망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과 개인적, 직업적 이유에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사람 모두를 포함하여 정보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유형의 사람들을 포괄한다.
- (21) 조정영역(coordinated field)의 범위는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미래의 공동체 합의나 공동체법에 따라 개별 국가차원에서 제정할 미래의 입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조정영역은 오직 온라인 정보,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온라인 계약과 같은 관련 요건에만 적용이 되며, 회원국 고유의 상품에 관한 안전기준, 표시의무, 법적 책임이나 의약품 거래를 포함한 상품 배송에 관한 요건들과는 관계가 없다; 조정영역은 공권력이 예술품 같은 특정 상품에 관하여 가지는 우선매수권(rights of pre-emption)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 (22) 정보사회서비스는 공적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활동의 근거지에서 감독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공공기관은 자국민에게 뿐만 아니라 모든 회원국의 국민들에게 이러한 공적 이익이 보장되도록 확인할 필요가 있다; 회원국 사이의 상호 신뢰를 강화시키기 위하여,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회원국의 이러한 책임을 명백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나아가 서비스 제공의 자유와 서비스 제공자와 수신자를 위한 법적 확실성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정보사회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의 법률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 (23) 이 지침은 권리 충돌에 관한 국제사법에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거나 법원의 관할권을 정하려는 목적은 없다; 이 지침의 규정과 더불어, 국제사법 규정들도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 (24) 이 지침의 내용상, 정보사회서비스의 근거에 대한 규제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 지침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회원국들이 정보사회서비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합법적이다.
- (25) 사적 분쟁을 다루는 민사법원을 포함한 국가법원은 이 지침이 규정한 조건을 준수하여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26) 회원국들은 범죄자에 대한 수사나 검거 및 기소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해당 조치를 고지할 필요 없이 이 지침에 규정된 조건을 준수하여 해당 국가의 형법 또는 형사소송법을 적용할 수 있다.
- (27) 이 지침은 장래에 입법될 금융서비스 소비자를 위한 원거리 마케팅 관련 유럽의회와 위원회의 지침과 함께 금융서비스의 온라인 제공에 관한 법적 체계를 구축한다; 이 지침은 해당 영역에서의

규범 조정과 관련하여 금융서비스 분야의 장래 계획을 미리 세우려는 것이 아니다; 회원국들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특정한 상황에서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분야의 특정 조치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28) 사전 허가에 의하여 정보사회서비스 활동 접근을 제한하지 말아야 할 회원국들의 의무는 1997년 12월 5일 역내 시장에서 공동체 우편서비스를 발전시키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일반원칙인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 97/67/EC²⁴⁾이 적용되는 전자메일 출력물의 물리적 배송과 같은 우편서비스와는 무관하며 전자서명 승인서비스와 같은 자발적인 승인시스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29) 상업통신은 정보사회서비스의 재정(financing)과 새롭고 다양한 무료서비스의 개발에 핵심적이다;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위하여 판촉물 제공이나 판촉 목적의 경기나 게임을 포함하는 통신은 몇 가지의 투명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러한 요건들은 97/7/EC 지침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 지침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업적 통신에 관한 지침, 특히 98/43/EC 지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30) 전자메일에 의한 요청하지 않은 상업통신의 고의 전송은 소비자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에게 바람직하지 못하고, 원활한 상호통신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 특정 형태의 요청하지 않은 상업통신의 수신에 대하여 수신자가 동의하였는지의 문제는 이 지침이 다루지 않지만 이미 97/7/EC와 97/66/EC가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전자메일에 의한 요청하지 않은 상업통신을 허용하는 회원

24) OJ L 15, 21.1.1998, p.14.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국에서는 적절한 산업적 필터링 체계 마련이 장려되어야 한다; 이에 더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산업적 필터링 체계의 작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전자메일에 의한 요청하지 않은 상업통신은 명백하게 상업적 통신으로 인식가능 하여야 한다; 전자메일에 의한 요청하지 않은 상업통신은 수신자에게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 (31) 수신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제공자가 전자메일로 요청하지 않은 상업통신을 할 수 있는 회원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고 이러한 상업통신의 수신을 원치 않는 자연인들이 스스로 등록한 수신거부의 의사를 존중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32) 법규상 전문 직업 종사자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공동체 내에서 국가 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방해가 되는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공동체 수준에서 소비자 보호나 공중보건과 관련된 직업 규범의 준수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공동체 수준에서의 행동규범 (code of conduct)은 상업통신에 적용되는 직업윤리 규범을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다; 이러한 규범의 제정 또는 도입은 직업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함 없이 장려되어야 한다.
- (33) 이 지침은 공동체법과 이 영역에서 유지되는 법규상 전문직업에 관한 해당 국가법을 존중한다.
- (34) 각 회원국은 전자적 수단에 의한 계약을 방해하기 쉬운 형식적 요건 등 일정한 요건이 포함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조정을 필요로 하는 입법의 검토는 계약 서류 보관을 포함한 계약 과정의 전 단계와 전 행위에 걸쳐 필요하다; 이러한 조정의 결과로 전자적으로 체결된 계약이 운용가능하게 되어야 한다; 전자서명의 법적 효과는 1999년 12월 13일 전자서명의 공동체 체

계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1999/93/EC²⁵⁾가 다룬다; 서비스 제공자가 수신을 인식하였다는 점은 해당 유료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확인된다.

- (35) 이 지침은 회원국이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에 관한 일반 요건 및 특별 요건, 특히 전자서명의 보호에 관한 요건을 유지하거나 구축할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 (36) 회원국들은 법원, 공공기관 또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전문가의 개입이 법률적으로 요청되는 유형의 계약에서 전자계약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은 법률상 확인이나 공증인의 공증을 요구하는 계약처럼 제3자효를 인정하려는 목적에서 법원, 공공기관 또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전문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계약에도 적용될 수 있다.
- (37) 전자계약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는 회원국의 의무는 오직 법적인 요건에서 기인한 장애와 관련이 있으며 특정 사안에서 전자적 수단의 사용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현실적 장애와는 무관하다.
- (38) 전자계약의 사용을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하는 회원국의 의무는 공동체법 상의 계약 관련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 (39) 이 지침이 규정하는 전자메일 또는 이와 유사한 개별 통신수단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예외 규정은 제공되어야 할 정보 및 주문 확인과 관련하여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자들에게 탈법을 위한 우회로를 허용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25) OJ L 13, 19.1.2000, p.12.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 (40) 중개자 역할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관련된 제정법과 판례법에 나타나는 기존의 또는 새로운 불일치의 문제는 역내 시장의 원활한 작용을 방해하며, 특히 국경을 넘는 거래의 발전을 악화시키고 경쟁력을 왜곡시킨다; 서비스 제공자들은 특정한 상황에서 불법적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단시킬 의무를 가진다; 이 지침은 불법적 정보에 대한 접근을 중단시키거나 차단시키는 신속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절차를 개발하기 위한 적절한 기초를 확립하여야 한다; 이러한 체계는 모든 관계자들 사이의 자발적인 동의 하에서 발전될 수 있으므로 회원국들은 이를 장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채택하여 이행하는 것은 정보사회서비스의 공급에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다; 책임에 관한 이 지침의 규정들은 지침 95/46/EC와 97/66/EC가 규정한 제한 범위 내라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자들이 기술적 보호와 인식 체계 및 전자기술에 의하여 가능해진 기술적 감시 도구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41) 지침은 현재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이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는 균형을 깨뜨리고, 산업계의 동의 하에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는 원칙을 확립한다.
- (42) 이 규정에 의한 책임면제는 오직 효과적인 전송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운용하거나 제공하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의 기술적인 활동에 국한된다; 이 활동은 단순히 기술적, 자동적, 수동적 성질을 가지며,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전송되거나 저장되는 정보를 알지 못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43) 서비스 제공자는 전송되는 정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에 “단순전송(mere conduit)”과 “캐싱(Caching)”에 관한 면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요건 중 하나는 자신이 전송하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요건은 정보의 무결성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조작에 적용되지 않는다.

(44)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하여 고의로 수신자와 공조하는 서비스 제공자는 “단순전송”이나 “캐싱”의 단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그 결과 이 활동에 대한 면책의 혜택을 누릴 수 없다.

(45) 이 지침이 규정한 서비스중개자의 책임 제한은 다른 종류의 명령들이 적용될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명령은 특히 불법적인 정보의 제거 또는 접근 제한과 같은 불법행위의 종료 또는 예방을 요구하는 법원 명령이나 행정 명령을 내용으로 한다.

(46) 면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보 저장과 관련된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자가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을 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관련 정보의 접근을 차단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차단이나 불능조치는 표현자유 원칙과 국가 차원에서 확립된 절차 규정을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지침은 회원국이 불법정보에 대한 접근 차단이나 불능조치 이전에 즉시 충족시켜야 할 특별요건을 따로 마련할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는다.

(47) 회원국들은 일반적인 의무로서 서비스 제공자를 모니터링할 의무를 부과받지 않는다; 이는 특정 영역에서의 모니터링과는 구별되는데, 특히 개별 국가 입법에 따른 행정명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8) 이 지침은 회원국이 불법행위를 탐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호스팅하는 서비스제공자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에게 국가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합리적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 (49) 회원국과 위원회는 행동규범의 제정을 장려하여야 한다; 이것은 행동규범의 본질인 자발성이나 이해당사자의 자유로운 채택 가능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 (50) 공동체 차원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침해에 대한 서비스중개자의 권리에 관한 명확한 법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보사회에서의 저작권 및 관련 권리의 조정을 위한 지침과 이 지침이 근접한 시간 내에 발효되어야 한다.
- (51) 각 회원국들은 필요하다면, 전자적 방법을 통해 재판 외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절차의 이용을 방해하는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그 개정의 결과, 이러한 분쟁해결 체계가 법률과 현실, 심지어 국경을 넘어서까지 실제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 (52) 역내 시장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분쟁해결 수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하는 것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는 그 신속성과 지리적 확장성으로 특징지어 진다; 이러한 특징과 개별 국가 공권력이 상호 신뢰를 손상시키지 않아야 할 필요성 때문에, 이 지침은 회원국이 적절한 소송 절차를 보장하도록 요구한다; 이 지침은 각 회원국들이 적절한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사법절차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요구한다.
- (53)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98/27/EC 지침은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의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소송 관련 체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체계는 높은 단계의 소비자 보호를 통하여 정보사회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에 기여할 것이다.

부 록

- (54) 이 지침에서 규정된 제재는 다른 제재나 개별 국가법이 규정한 구제절차를 침해하지 않는다; 회원국들은 이 지침의 이행입법이 규정한 행위 위반에 형사적 제재를 부과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 (55) 이 지침은 소비자계약에 관한 계약상 의무에 적용되는 법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이 지침은 상거소(habitual residence)가 위치한 회원국의 계약상 의무에 관한 강행법규에 의하여 소비자가 제공받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 (56) 소비자가 확정하는 계약에서 계약상 의무에 관한 이 지침의 내용 수정과 관련하여, 그러한 의무는 계약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소비자의 권리를 포함하여 계약 내용의 본질적 요소에 관한 고지 의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57) 법원은 일관되게 첫 번째 회원국에서 전부 또는 대부분의 영업활동을 하지만 그 국가의 법률 적용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된 서비스제공자에게 첫 번째 회원국이 조치를 취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 (58) 이 지침은 제3국에서 설립된 서비스제공자가 공급하는 서비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관점에서 공동체법이 국제법에 부합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 이 지침은 법적 쟁점에 관한 국제기구 간(WTO, OECD, Uncitral) 논의의 결과를 침해하지 않는다.
- (59) 전자상거래의 국제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역내 시장의 분열을 막기 위하여, 그리고 유럽 규범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EU 수준으로 국가 규제 수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정은 국제 포럼에서 일반적이고 강건한 협상 지위를 확립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 (60) 방해 없는 전자상거래의 발전을 위하여, 법적 체계는 명확하고 단순하며, 예측가능하고 국제 사회에 적용되는 규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서 이 분야의 유럽 산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혁신을 지연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 (61) 시장이 전 세계적 차원에서 실제로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다면, 유럽연합과 주요 비유럽 지역은 서로 호환될 수 있는 법률과 절차를 만들기 위하여 상호 관리할 필요가 있다.
- (62) 제3국가와의 협력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특히 지원국, 개발도상국과 유럽연합의 다른 교역국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63) 이 지침의 채택은 회원국이 정보사회의 도래가 초래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특히 언어의 다양성, 문화적 유산과 국가적, 지역적 특이성을 고려하여 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며 민주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리고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가능한 광범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회원국들이 공동체법을 준수하여 채택한 조치들을 방해하지 않는다; 언제나 정보사회서비스의 발전은 회원국 시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유럽의 문화적 자산에의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 (64) 전자통신은 회원국에게 문화, 교육과 언어 분야에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훌륭한 수단이다.
- (65) 1999년 1월 19일 정보사회의 소비자에 대한 결의안²⁶⁾에서 위원회는 소비자 보호가 이 분야에서 특별히 관심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위원회는 현존하는 소비자 보호 규정들로 정보사회에서 행해지는 보호의 정도가 충분한지를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입

26) OJ C 23, 28.1.1999, p.1.

법적 흠결과 추가적 조치가 요구되는 쟁점을 확인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위원회는 확인된 흠결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한 추가적 제안도 하여야 한다.

제 1 장 일반 규정(General Provisions)

제 1 조 목적과 범위

1. 이 지침은 회원국 간의 정보사회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는 역내시장의 적정한 작용에 이바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2. 이 지침은 위 1에 규정된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역내 시장, 서비스 제공자의 설립, 상업통신, 전자계약, 중개인의 책임, 행동규범, 재판 외 분쟁해결 방안, 법정 소송, 회원국 간의 협력 등에 관한 정보사회서비스 관련 특정 국가의 규정들을 유사하게 조정한다.
3.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는 한, 이 지침은 공동체 법률들과 개별 국가의 이행 입법이 규정한 보호의 정도, 특히 공중 보건과 소비자 이익의 보호의 정도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공동체법을 보충한다.
4. 이 지침은 국제사법에 규정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며 법원 사이의 관할권을 다루기 위한 것도 아니다.
5. 이 지침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세금 분야
 - (b) 95/46/EC와 97/66/EC가 적용되는 정보사회서비스 관련 쟁점
 - (c) 공정거래법이 규율하는 합의나 관행에 관한 쟁점
 - (d) 정보사회서비스 관련 다음과 같은 행위들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 공권력의 행사와 직접적이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에서 공증인 또는 유사 직업상의 활동
- 법정에서 고객 또는 피고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위
- 복권이나 경매를 포함하여 금전적 대가를 걸고 이루어지는 도박 활동

6. 이 지침은 공동체 또는 개별 국가 수준에서, 공동체 법률을 존중하며 문화와 언어의 다양성을 강화하고 다원주의를 보장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조치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 2 조 정의

이 지침과 관련하여 다음 용어들은 아래와 같은 뜻을 갖는다:

- (a)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 : 98/48/EC 지침에 의하여 개정된 98/34/EC 지침 제1조(2)의 의미 내에서 이루어지는 서비스;
- (b)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 :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c) “설립된 서비스제공자(established service provider)” : 불확정 기간 동안 고정 설비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영위하는 서비스 제공자. 기술적 수단의 존재와 사용, 그리고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술은 그 자체로 서비스 제공자의 설립이 되지 않는다.
- (d) “서비스이용자(recipient of the service)” : 영업의 목적을 불문하고, 특히 정보를 검색하거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보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 (e) “소비자(consumer)” : 거래, 영업 또는 직업 외의 목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자연인;
- (f) “상업통신(commercial communication)” : 직·간접적으로 물품, 서비스 또는 회사나 기관 또는 상업적,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활동 종사자나 법규상 전문직업(regulated profession) 종사자의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모든 형태의 통신. 다음의 것들은 그 자체로는 상업적 통신의 요소가 아니다;

- 회사, 기관 또는 사람에게 직접적 접근을 허용하는 정보로 특히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메일 주소
- 독자적인 방법으로, 특히 영리적 고려 없이 이루어진 상품, 서비스 또는 회사, 기관이나 사람의 이미지에 관한 통신

(g) “법규상 전문직업(regulated profession)” : 1998년 12월 21일 직업 교육 수료 및 최소 3년 이상의 훈련에 대한 고등교육 학위 수여 인정을 위한 일반적 위원회 지침 89/48/EEC의 제1조(d)²⁷⁾ 또는 89/48/EEC를 보완하는 1992년 6월 18일 직업 교육과 훈련에 관한 두 번째 일반 위원회 지침 제1조(f)²⁸⁾에서 정의된 의미이다.

(h) “조정영역(coordinated field)” :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나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회원국의 법적 체계가 요구하는 요건들로 일반적 성질의 것인지 특별히 의도된 것인지 불문한다.

(i) 조정영역은 서비스 제공자가 준수하여야 할 다음과 같은 요건들과 관련이 있다:

- 면허, 허가, 인가와 같이 정보사회서비스 서비스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것
- 서비스 제공자의 행위 관련 요건, 광고와 계약 등에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이나 품질에 관한 요건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관한 요건과 같이 정보사회서비스 활동을 추구하기 위한 것

(ii) 조정영역은 다음과 같은 요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 상품 그 자체에 적용되는 요건
- 물건의 배송에 적용되는 요건
- 비전자적 수단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요건

27) OJ L 19, 24.1.1989, p.16.

28) OJ L 209, 24.7.1992, p.25. 97/38/EC 지침이 개정된 지침 (OJ L 184, 12.7.1997, p.31).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제 3 조 역내시장(Internal Market)

1. 각 회원국들은 그 영토 내에서 설립된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사회서비스가 조정영역에서 문제되는 해당 국가의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조정영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국에서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3. 위 1과2는 부록(Annex)에 규정된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회원국들은 제공된 정보사회서비스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다면, 위 2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a) 그 조치가
 - (i) 다음 이유 중 하나를 위해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미성년자 보호와 인종, 성별, 종교나 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 조장과 개인의 인간 존엄성 침해에 대한 대응 등의 공공정책, 특히 범죄의 예방, 수사, 검거, 공소제기에 있어서의 정책
 - 공중 보건의 보호
 - 국가 안보와 국방을 포함한 공공 안전
 - 투자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보호
 - (ii) (i)에서 언급된 목적을 침해하거나 이러한 목적을 침해할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 (iii) 이러한 목적에 비례하여야 한다.
 - (b) 문제된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예심 절차 및 형사수사체제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포함한 법원의 절차를 위반함 없이, 회원국은:
 - 위 1에서 언급한 회원국에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거나 취해진 조치가 부적절하여야 하고

부 록

- 위 1이 언급한 조치의 목적을 위원회와 회원국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 5. 회원국은 긴급한 상황에서, 위 4(b)에 명시된 조건들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그 조치는 가능한 신속하게 위원회와 위 1에서 언급된 회원국에게 긴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이유의 적시와 함께 통보되어야 한다.
- 6. 회원국이 문제된 조치를 진행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위원회는 통보된 조치가 공동체법과 양립 가능한지 최대한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 그 조치가 공동체 법과 양립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위원회는 문제된 회원국에게 제시된 조치를 제한하거나 그 조치를 긴급히 종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 2 장 원칙

제 1 부 : 설립과 정보에 관한 요건

제 4 조 사전 허가 배제의 원칙

1.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 활동의 유지와 진행이 사전 허가나 이와 유사한 다른 요건을 전제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위 1은 정보사회서비스를 대상으로 특정하여 배타적으로 구축되지 않은 일반허가체계나 1997년 4월 10일 전기통신 영역에서 일반 허가과 개별 면허의 일반체계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97/13/EC²⁹⁾가 적용되는 허가체계를 침해하지 않는다.

29) OJ L 117, 7.5.1997, p.15.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제 5 조 제공되어야 할 일반 정보

1. 공동체법이 규정한 다른 정보 관련 요건에 추가하여, 회원국은 서비스제공자로 하여금 이용자와 관계기관이 쉽고, 직접적이고 지속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a) 서비스 제공자의 이름;
 - (b) 서비스 제공자가 설립된 지리적 주소;
 - (c) 전자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신속하게 연락하고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방법 등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세부 사항;
 - (d)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자 등록이나 유사 등록을 한 경우 그 사업자 등록 내용 및 등록 번호 또는 이와 유사하게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 (e) 해당 활동이 인가의 대상인 경우, 관련 감독기관에 관한 세부 사항;
 - (f) 법규상 전문직업과 관련하여:
 - 서비스제공자가 등록된 직업 단체 또는 유사 기관
 - 직업상 명칭(professional title)과 해당 명칭이 인정된 회원국
 - 설립된 회원국에서 적용 가능한 직업 규칙과 이에 접근하는 방법
 - (g) 서비스 제공자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인 활동을 하는 경우, 1977년 5월 17일 매출세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간 조화-부가가치세의 공동체제: 균일한 평가 기준에 관한 제6차 유럽 위원회 지침 77/388/EEC 제22조 제1항³⁰⁾에 규정된 식별번호
2. 공동체법이 규정한 정보 관련 요건에 추가하여,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의 가격이 제시된 경우 최소한 명백하고 모호함 없이 가격을 확인하고, 특히 세금 및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30) OJ L 145, 13.6.1977, p.1. 1999/85/EC 지침으로 최종 개정된 지침(OJ L 277, 28.10.1999, p.34).

제 2 부 : 상업통신

제 6 조 제공되어야 할 정보

공동체법이 규정한 정보 관련 요건에 더하여, 회원국은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상업통신이 최소한 다음의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a) 상업통신은 명백하게 상업적 통신으로 인식될 것;
- (b) 통신의 대상인 자연인 또는 법인이 명백하게 식별될 것;
- (c)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 제공, 경품과 선물 등이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에서 허용되는 경우, 명백하게 판촉용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이를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은 쉽게 접근 가능하며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될 것.
- (d) 홍보용 대회나 게임이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에서 허용되는 경우, 명백하게 홍보용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참가 자격에 관한 내용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될 것.

제 7 조 원하지 않은 상업통신

1. 공동체가 규정한 다른 요건에 추가하여, 전자메일을 통하여 요청하지 않은 상업통신을 허용한 회원국들은 서비스 제공자에 의한 상업통신을 수신자가 받자마자 명백하고 분명하게 상업통신이라고 인식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97/7/EC지침과 97/66/EC 지침을 침해하지 않고, 회원국들은 전자메일을 통하여 요청하지 않은 상업통신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정기적으로 감독을 받고 수신을 원치 않는 자연인이 스스로 등록한 수신 거부의 의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제 8 조 법규상 전문직업(Regulated Profession)

1. 회원국은 법규상 전문직업 종사자의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상업통신은 해당 직업의 독립성, 존엄성, 명예, 직업상 비밀과 고객 및 다른 직업에 대한 공정성에 관련된 직업 규칙의 조건 하에 허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직업 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원국과 위원회는 위 1에서 언급된 직업 규칙을 준수하고 상업통신에 제공되는 정보 유형을 결정하기 위하여 직업 단체들이 공동체 수준의 행동규범을 제정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3. 정보와 관련한 역내시장의 적정한 작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위 2에서 언급된 공동체 규범을 제안할 때, 위원회는 공동체 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행동규범을 고려하고 관련 직업단체와의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이 지침은 법규상 전문직업 활동에 관한 접근 및 행사에 관한 지침들에 부가하여 적용된다.

제 3 부 :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되는 계약

제 9 조 계약의 처리

1. 회원국은 해당 법체계가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체결되는 계약을 허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특히 계약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적 요건이 전자계약의 체결에 장애가 되거나 전자적 수단을 사용한다는 이유로 법적 효율성과 유효성을 박탈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부 록

2. 회원국들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모든 또는 특정 계약에 위 1이 적용되지 않음을 확인해야 한다:
 - (a) 임차권을 제외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에 관한 계약
 - (b) 법률이 법원, 공공기관 또는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전문가의 개입을 요건으로 하는 계약
 - (c) 보증계약 및 거래, 영업 또는 직업과 관계없는 목적으로 행위하는 사람이 제공하는 부수적 보증에 관한 계약
 - (d) 친족상속법이 규율하는 계약

3. 회원국들은 위 1이 적용되지 않는 위 2의 카테고리를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왜 1이 적용되지 않는 2(b)의 카테고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매 5년마다 위원회에 위 2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1. 공동체법이 규정한 정보 관련 다른 요건에 추가하여 소비자가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소한 다음과 같은 정보를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분명하게 서비스 이용자의 주문 이전에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 (a)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각각의 기술적 단계
 - (b) 서비스 제공자가 체결된 계약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보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 (c) 주문확정에 앞서 입력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
 - (d) 계약 체결에 사용된 언어

2. 소비자가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국들은 서비스 제공자가 청약에 적용되는 행동규범 및 그 규범을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어떻게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이용자에게 제시되는 약관은 이를 저장하고 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4. 위 1과 2는 전자메일 교환이나 이와 유사한 개별 통신을 통하여 배타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1조 주문의 발송(Placing of the order)

1. 회원국들은 소비자가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이용자가 전자적 수단으로 주문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원칙이 적용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 서비스 제공자는 불필요한 지연 없이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수신자의 주문에 대한 수신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 주문과 수신 확인은 당사자가 이에 접근할 수 있는 때에 수신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국들은 소비자가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제공자가 주문에 앞서 입력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소비자에게 제시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3. 위 1의 첫 번째 들여 쓴 단락과 2는 전자메일 교환이나 이와 유사한 개별 통신에 의하여 배타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4 부 : 중개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12조 단순전송(mere conduit)

1.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연결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회원국들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서비스제공자가 전송된 정보에 책임이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가

- (a) 전송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고;
- (b) 전송의 수신자를 선택하지 않았으며;
- (c) 전송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경우.

2. 위 1에서 언급된 정보 전송행위와 정보통신망 연결 행위는 그것이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의 목적으로만 이루어졌고, 전송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넘어서 저장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중간에 일시적으로 전송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이 조문은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회원국의 법체계를 준수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법규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3조 캐싱(Caching)

1.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다음의 경우에, 서비스제공자가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다른 수신자에게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송하려는 목적에서 자동적으로 중간에 일시적으로 전송 정보를 저장한 것에 책임이 없다는 점을 보장하여야 한다.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 (a) 제공자는 정보를 수정하지 않았고;
 - (b) 제공자는 정보 접근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였고;
 - (c) 제공자는 업계에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방법으로 정보의 업데이트에 관해 명시된 규칙을 준수하였고;
 - (d) 제공자는 정보사용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업계에 널리 알려지고 사용되는 기술의 합법적인 사용을 방해하지 않았고;
 - (e) 제공자가 최초 전송한 정보에 관한 자료가 정보통신망에서 삭제되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법원이나 관계기관이 그러한 삭제나 접근 금지를 명령하였다는 사실을 실제 인식한 경우,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정보 접근을 금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경우
2. 이 조문은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회원국의 법체계를 준수하여 서비스제공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4조 호스팅(Hosting)

1.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저장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에 있어서 회원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이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저장한 정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서비스 제공자는 위법한 행위나 정보에 대하여 실제 인식하지 못하였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나 정보로 생각되는 사실이나 상황을 알지 못하였으며;
 - (b) 제공자는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신속하게 정보접근을 금지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경우
2. 위 1은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자의 허가나 관리 하에 행동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부 록

3. 이 조문은 법원이나 공공기관이 회원국의 법체계를 준수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법규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거나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나 회원국이 정보 접근의 금지나 불가능에 관한 절차를 마련할 가능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5조 일반적 감시 의무의 부존재

1. 회원국들은 제12조, 제13조, 제14조가 적용되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들이 전송하거나 저장하는 정보를 감시할 일반적 의무나 불법행위처럼 보이는 사실이나 상황을 찾기 위하여 활동할 일반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
2. 회원국들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에게 스스로 인지한 불법행위나 서비스 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관계기관에게 즉시 알려줄 의무를 부과하거나 관계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저장에 동의한 수신자들의 식별정보를 알려줄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제 3 장 이행

제16조 행동규범

1. 회원국들과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장려하여야 한다:
 - (a) 사업자단체, 직업단체와 소비자단체 또는 관련 기관이 제5조에서 제15조까지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공동체 수준의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
 - (b) 국가적 또는 공동체 차원의 행동 규범안을 위원회에 자발적으로 전송하는 것;
 - (c) 전자적 수단을 이용하여 공동체 언어로 이러한 행동 규범들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 (d) 사업자단체, 직업단체와 소비자단체 또는 관련기관이 그러한 행동 규범의 적용이 전자상거래에 관한 실무와 관행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회원국들과 위원회와 소통하는 것;
 - (e) 미성년자와 인간존엄성의 보호에 관한 행동규범을 마련하는 것
2. 회원국들과 위원회는 위 1(a)에 따라 행동규범을 작성하고 이행하는 데에 소비자를 대변하는 단체나 기관을 포함시키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필요하다면 특별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등 장애인을 대표하는 기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재판 외 분쟁해결

1. 회원국들은 정보사회서비스제공자와 소비자 사이의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경우,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절한 전자적 방법 등의 분쟁해결을 위한 재판 외 절차를 이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담당기관이 관련 당사자들에게 적절한 절차를 보장하여 소비자분쟁 등에 관한 재판 외 절차를 운용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3. 회원국들은 재판 외 분쟁해결에 관한 담당기관이 위원회에 정보사회서비스에 관한 중요한 결정 등을 제공하고 전자상거래에 관한 관례, 용례, 관습 등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주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18조 소송

1. 회원국들은 국가법에 따른 소송을 통하여 인지된 불법행위를 중단시키고 장래의 관련 이익에 관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정적 조치를 포함한 신속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부 록

2. 98/27/EC 지침의 부록은 다음과 같이 보완된다:

“11. 2000년 6월 8일,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에 관한 특정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 (전자상거래 지침) (OJ L 178, 17.7.2000, p.1).”

제19조 협력

1. 회원국들은 이 지침을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필요한 관리와 조사에 적합한 수단을 마련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자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2. 회원국들은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한다; 이를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연락처를 지정하여 다른 회원국들 및 위원회와 세부 사항에 대하여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3. 회원국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국내법을 준수하여, 다른 회원국이나 위원회가 요구하는 적절한 전자장비를 비롯한 도움이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4. 회원국들은 최소한 전자적으로 연락 가능하고 서비스제공자와 수신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연락처를 설치하여야 한다.
 - (a) 분쟁 발생시, 절차 이용에 필요한 실제적 내용 등 이의제기 절차와 피해배상 절차 및 계약상 권리와 의무에 관한 일반적 정보의 수집
 - (b) 더 자세한 정보나 실무적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관, 단체나 기구에 관한 세부 사항의 수집
5. 회원국들은 정보사회서비스와 전자상거래에서의 관례, 용례, 관습에 관련된 분쟁에 대한 중요한 행정적, 사법적 결정을 위원회에 알리도록 장려한다. 위원회는 이 결정들을 다른 회원국들에게 알릴 것이다.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제20조 제재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른 국내 이행 입법을 위반하였을 때 가할 제재를 결정하여야 하고 그것을 강제하는 데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그들이 규정한 제재들은 효율적이고, 비례적이며 합리적이어야 한다.

제 4 장 마지막 규정

제21조 재검토

1. 2003년 7월 17일 이전, 그리고 이후에는 2년 마다 위원회는 유럽 의회와 위원회 및 경제사회위원회에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필요하다면, 정보사회서비스의 법적, 기술적·경제적 발전, 특히 범죄 예방, 미성년자 보호, 소비자 보호와 역내 시장의 원활한 작용을 위한 조정 제안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이 지침을 조정할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보고서는 특히 하이퍼링크와 위치기반 툴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통지와 접속 차단(notice and take down) 절차, 그리고 접속 차단에 따른 책임 분배의 필요성을 상세히 분석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기술적 발전의 측면에서 제12조와 제13조 규정된 면책 관련 추가적 조건의 필요성과 전자메일에 의한 일방적 상업 통신에 대한 역내 시장 원칙의 적용 여부도 분석하여야 한다.

제22조 전환

1. 회원국은 이 지침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법률, 규칙, 행정명령을 2002년 1월 17일 이전에 발효하여야 한다. 이는 위원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부 록

2. 회원국이 1에 언급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지침에 대한 인용을 포함하거나 공식 출판본 발간시 그러한 인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인용 방법은 회원국이 정한다.

제23조 발효

이 지침은 유럽공동체의 관보에 게시되는 날 발효된다.

제24조 수범자

이 지침은 회원국을 수범자로 한다.

2000년 6월 8일 룩셈부르크에서

유럽 의회 의장 N. Fontaine
유럽 회의 의장 G. d'Oliveira Martinez

【부록 2】 2000년 6월 8일, 역내 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와 위원회 지침 2000/31/EC(전자상거래지침)

《 부록 제3조의 부분 수정 》

제3조(3)에 규정된 바와 같이, 제3조(1)과 (2)는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침 87/54/EEC³¹⁾와 지침 96/9/EC³²⁾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산업재산권
- 회원국의 2000/46/EC 지침 제8조(1)³³⁾의 수정 조항 적용에 관한 관례에 따른 전자 화폐의 발행
- 85/611/EEC 지침의 제44조(2)³⁴⁾
- 92/49/EEC 지침 제30조와 제4장³⁵⁾, 92/96/EEC 지침 제4장³⁶⁾, 88/357/EEC 지침 제7조와 제8조³⁷⁾ 그리고 90/619/EEC 지침 제4조³⁸⁾
- 계약 당사자가 적용 가능한 법을 선택할 자유
- 소비자 계약에 관한 계약상 의무
- 부동산이 위치한 회원국의 법률이 의무적, 공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부동산 관련 계약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계약의 공식적 유효성
- 전자메일을 통한 요청하지 않은 상업적 통신의 허용가능성

31) O.J. L24, 27.1.87, p.36.

32) O.J. L77, 27.3.96, p.20.

33) 공보 발간 전

34) OJ L 375, 31.12.1985, p.3. 95/26/EC 지침으로 최종 개정된 지침 (OJ L 168, 18.7.1995, p.7).

35) OJ L 228, 11.8.1992, p.1. 95/26/EC 지침으로 최종 개정된 지침.

36) OJ L 360, 9.12.1992, p.2. 95/26/EC 지침으로 최종 개정된 지침.

37) OJ L 172, 4.7.1988, p.1. 92/49/EC 지침으로 최종 개정된 지침.

38) OJ L 330, 29.11.1990, p.50. 92/96/EC 지침으로 최종 개정된 지침.

【부록 3】 영국의 전자상거래법제

I. 2002년 전자상거래규칙(2002 No. 2013 전기통신)

작성	2002년 7월 30일
의회 상정	2002년 7월 31일
시행	
제16조	2002년 10월 23일
그 외	2002년 8월 21일

산업고용부 장관(Secretary of State)은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하여 1972년 유럽공동체법(European Communities Act)¹⁾의 제2조(2)의 목적을 위하여 임명된 각료로서²⁾ 그 조항이 부여한 권한으로 다음과 같이 규칙을 제정한다:

인용 및 시행

1. - (1) 이 규칙은 2002 전자상거래(EU 지침)규칙이라고 인용될 수 있으며, 규칙 16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은 2002년 8월 21일부터 시행된다.
(2) 규칙 16은 2002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된다.

정의

2. - (1) 동 규칙 및 별표(Schedule)에서-
“상업통신(commercial communication)”은 그 형태에 관계없이 상업적, 산업적 또는 수공업적 활동을 하거나 법규상 전문직업(regulated profession)

1) 2002 No. 2013 ELECTRONIC COMMUNICATIONS The Electronic Commerce (EC Directive) Regulations 2002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02/2013/pdfs/ukxi_20022013_en.pdf 최종방문 2016.10.30.)
2) S.I. 2001/2555.

부 록

을 수행하는 자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이미지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하도록 고안된 통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다음의 경우는 제외된다.

- (a) 지리적 주소, 도메인 이름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해당 사람의 활동에 대한 직접적 접근을 허용하는 정보만으로 구성된 통신; 또는
- (b) 그 사람의 물품, 서비스 또는 이미지와 관련된 것으로 통신을 제공하는 사람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이루어진 통신(반증이 없는 한 영리적 고려 없이 이루어진 통신은 독자적인 것으로 추정한다);

“위원회(the Commission)”는 유럽연합(EC) 집행위원회를 의미한다;

“소비자(consumer)”는 거래나 영업 또는 직업 이외의 목적으로 행위하는 모든 자연인을 의미한다;

“조정영역(coordinated field)”은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나 정보사회서비스에 적용될 수 있는 요건들을 의미하고 그것이 일반적 요건인지 특수한 요건인지는 불문하며, 다음과 관련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준수해야 하는 요건을 포함한다.

- (a) 자격, 권한 또는 고지 관련 요건과 같은 정보사회서비스 활동의 유지, 그리고
- (b) 서비스제공자의 행위 관련 요건이나 광고와 계약에 적용되는 서비스의 품질 또는 내용 관련 요건 또는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관련 요건 등과 같은 정보사회서비스 활동의 수행,

그러나 상품 자체나 상품의 배달, 또는 전자매체를 통해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침(the Directive)”은 2000년 6월 8일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특정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전자상거래지침) 2000/31/EC을 의미한다³⁾.

3) O.J. L178, 17.7.2000, p.1.

“EEA 협정(EEA Agreement)”은 1992년 5월 2일에 오포르토(Oporto)에서 서명된 유럽경제지역협정(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으로 1993년 3월 17일 브뤼셀에서 서명한 의정서에 따라 수정된 것을 의미한다.⁴⁾;

“입법(enactment)”은 북아일랜드법을 구성하는 입법과 스코틀랜드 의회법을 구성하거나 그 수권을 받아 이루어진 입법을 의미한다;

“집행행위(enforcement action)”는 형식을 불문한 집행행위로서, 특히 다음과 같은 행위를 포함한다 -

- (a) 법률에 의해 또는 법률에 따라서 부여된 법적 요건과 관련하여, 이를 준수하지 못한 데 대하여 제재(형사적 제재이든 아니든 관계없이)를 가하려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그리고
- (b) 허가(permission)나 인가(authorisation)와 관련하여 이를 없애거나 제한하려는 행위;

“집행기관(enforcement authority)”은 사법권을 포함하지 않으며, 집행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자를 의미하며 그 권한이 법률에 의한 것인지는 여부는 불문한다;

“설립된 서비스제공자(established service provider)”는 회원국의 국민 또는 조약 제48조에서 규정된 회사나 기업으로서, 불확정 기간 동안 회원국에서 고정설비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경제적 활동을 추구하는 서비스제공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기술적 수단의 존재와 사용, 그리고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필요한 기술 그 자체만으로는 서비스제공자의 설립이 인정되지 않는다; 서비스가 여러 곳에서 제공되어 어디서 제공된 것인지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공자가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는 곳을 서비스제공자의 설립 장소로 간주한다; 설립 예정인 서비스제공자나 서비스제공자의 설립에 관한 판단 기준은 상황에 맞춰서 해석해야 한다;

4) O.J. L1, 3.1.94, p.3 과 p.572.

부 록

“정보사회서비스(information society services)”(지침 제안이유 17이 “일반적으로 격지 간에서 대가를 받고 (디지털압축을 포함한) 데이터의 처리와 저장을 위한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개별 요청에 따라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라고 요약됨)는 지침 제2조(a)가 규정한 의미(1998년 7월 20일 지침 98/48/EC에 의해 개정된⁵⁾ 1998년 6월 22일 기술 표준과 규제 분야에서 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유럽이사회 지침 98/34/EC⁶⁾ 제1조 2항과 관련됨)를 갖는다.

“회원국(member State)”은 EEA협정의 계약 당사국을 포함한다.

“서비스 이용자(recipient of the service)”는 직업적 목적이나 기타 다른 목적으로, 특히 정보를 조회하거나 정보에 접근하기 위하여 정보사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의미한다.

“법규상 전문직업”은 1988년 12월 21일 3년 이상의 직업 교육·훈련 종료 후 수여된 고등교육증서 인정의 일반 체제에 관한 유럽이사회 지침 89/48/EEC 제1조 (d)⁷⁾ 또는 1992년 6월 18일 지침 89/48/EEC⁸⁾을 보완하는 직업 교육·훈련 인정을 위한 2차적 일반 체제에 관한 유럽이사회 지침 92/51/EEC 제1조 (f)상의 직업을 의미한다.

“서비스제공자(service provider)”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한다.

“조약(the Treaty)”은 유럽공동체조약을 의미한다.

5) O.J. L217, 5.8.98, p.18.

6) O.J. L204, 21.7.98, p.37.

7) O.J. L19, 24.1.89, p.16. Directive as last amended by Directive 2001/19/EC; O.J. L206, 31.7.2001, p.1.

8) O.J. L209, 24.7.92, p.25. Directive as last amended by Directive 2001/19/EC; O.J. L206, 31.7.2001, p.1.

- (2) 제4조와 제5조에서의 “요건(requirement)”은 대영제국이나 그 구성국의 법률 하에서의 모든 법적 요건을 의미한다.
- (3) 위 (1)의 용어 외에 지침에서 사용된 용어들은 지침에서 쓰인 용어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예외

- 3. - (1) 다음의 경우 동 규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 (a) 세금 분야;
 - (b) 데이터보호지침(Data Protection Directive)⁹⁾과 전기통신데이터 보호지침(Telecommunication Data Protection Directive)¹⁰⁾, 그리고 2002년 7월 12일 전기통신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2/58/EC¹¹⁾에서 다루는 정보사회서비스와 관련된 문제;
 - (c) 카르텔법에 의해 규율되는 협정이나 관행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 (d) 다음과 같은 정보사회서비스 활동
 - (i) 공적 권한 행사와 직접적이고 특정한 관련이 있는 공증인이나 유사 직업인의 활동
 - (ii) 법정에서의 의뢰인의 대리 및 그 이익을 위한 변호, 그리고
 - (iii) 금전적 대가를 거는 투기활동을 포함한 내기, 게임 또는 복권
- (2) 동 규칙은 제정일부터 그 이후에 통과된 법률에 관한 문제 또는 그 이후의 법률 제정 권한 행사에 관한 문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동 규칙에서

9) O.J. L281, 23.11.95, p.31.

10) O.J. L24, 30.1.98, p.1

11) O.J. L201, 31.7.2002, p.37.

부 록

“카르텔법”은 시장 분할이나 고정 가격을 담합하기 위한 사업자 간의 합의, 사업자단체의 결정 또는 합의된 관행과 관련된 법규를 의미한다.

“데이터보호지침”은 1995년 10월 24일 개인정보의 처리 및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서 개인의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5/46/EC를 의미한다.

“전기통신데이터보호지침”은 1997년 12월 15일 텔레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사생활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97/66/EC를 의미한다.

국내시장(Internal Market)

4. - (1) 아래 (4)에 따라, 조정 영역에 관한 요건은 대영제국에서 설립된 서비스제공자(정보사회서비스가 대영제국 내에서 제공되는지 다른 회원국에서 제공되는지는 불문)의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에 적용되어야 한다,
- (2) 아래 (4)에 따라, (1)의 요건에 관련한 주관 집행기관은 대영제국에서 설립된 서비스제공자(서비스가 대영제국 내에서 제공되는지 다른 회원국에서 제공되는지는 불문)의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집행행위를 위한 권한, 구제 방법이나 절차는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3) 아래의 (4), (5), (6)에 따라 타 회원국이 대영제국에 있는 자에게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되므로 대영제국 외의 회원국에서 설립된 서비스제공자의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에는 어떠한 요건도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 (4) 위 (1), (2), (3)은 별표에 제시된 지침의 부속서가 규정한 영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5) 위 (3)이 설명한 타 회원국의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의 자유를 제한하는 요건에는 공동체법 상의 공중보건이나 소비자 이익의 수준 유지를 위한 요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 (6) 동 규칙의 내용이 형법상 새로운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약식재판(summary conviction)에 따른 3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급 이하의 벌금형(일수벌금이 아닌 경우) 또는 하루 100 파운드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¹²⁾.

규칙 제4조의 부분적 수정(Derogations from Regulation 4)

5. - (1) 위 규칙 제4조(3)에도 불구하고, 집행기관은 특정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하여 규칙 제4조(3)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요건을 적용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러한 조치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고, 그 목적에 비례하는 것이어야 한다.
- (a) 공공정책, 특히 미성년자 보호와 인종, 성별, 종교 또는 국적을 이유로 한 증오 조장 방지, 개인의 인간 존엄성에 대한 침해 등 형법상 범죄에 관한 예방, 수사, 탐지 및 공소제기
 - (b) 공중보건의 보호
 - (c) 국가안보와 방위를 포함한 공공안전 또는
 - (d) 투자자를 포함한 소비자의 보호
- (2) 위 규칙 제4조(3)에도 불구하고, 문제된 요건과 관련된 주관 집행기관이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 법률이나 요건의 적용이 위 (1)이 규정한 목적의 필요성과 비례성을 충족한다면, 법원은 개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규칙 제4조(3)에서 적용될 수 없다고 한 요건들을 적용할 수 있다.
- (3) 위 (1)과 (2)는 오직 정보사회서비스가 (1)(a)부터 (d)까지의 목적에 심각하고 중대한 위험을 끼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2) 1972 유럽공동체법 제1조 1항 (d)의 별표2에 따라 허용되는 벌금 상한액.

- (4) 아래 (5)와 (6)의 전제 하에 집행기관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라면 위 (1)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
 - (a) 집행기관이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에 대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였는데 회원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취한 조치가 부적절한 경우; 그리고
 - (b) 집행기관이 위원회와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에 대하여 그러한 조치를 취할 의사가 있음을 고지한 경우
- (5) 위 (4)는 예심절차 및 범죄수사 과정에서 행해지는 행위를 포함한 법원의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6) 집행기관은 사안이 급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 (4)의 예외를 인정하여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에 1차적 청구를 하거나 위원회와 해당 회원국에 공지하지 않고서도 (1)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7) 위 (6)에 따라 조치가 취해진 경우 집행기관은 가능한 빨리 해당 조치에 대하여 위원회와 관련 회원국에 급하게 처리된 이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 (8) (2)에서 “법원”은 모든 법원이나 재판소를 의미한다.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제공해야 하는 일반정보

- 6. - (1)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 집행기관이 쉽게 직접적이고 상시적으로 다음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 (a) 서비스제공자의 이름;
 - (b)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지리적 주소;
 - (c) 서비스제공자와 신속하게 연락하고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의사소통 할 수 있는 전자메일주소를 포함한 서비스 제공자에 관한 세부사항

- (d) 서비스제공자가 일반에 공개된 사업자 등록이나 유사 등록을 한 경우 서비스제공자의 등록에 관한 세부사항과 등록번호 기타 등록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
 - (e) 서비스 공급이 인가(authorisation) 대상인 경우, 관련 감독기관에 관한 세부사항
 - (f) 서비스제공자가 법규상 전문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 (i) 서비스제공자가 등록된 직업 단체 또는 유사 기관의 세부사항
 - (ii) 직업상 명칭(professional title)과 해당 명칭이 인정된 회원국
 - (iii) 서비스제공자가 설립된 회원국의 직업 관련 법규 및 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의 목록
 - (g) 서비스제공자가 부가가치세의 대상인 활동을 하는 경우, 1977년 5월 17일 매출세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간 조화-부가가치세의 공동체제: 균일한 평가 기준에 관한 제6차 유럽 위원회 지침 77/388/EEC 제22조 제1항에 언급된 식별번호¹³⁾
- (2) 정보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가격을 언급하는 경우, 가격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시되어야 하며, 특히 여기에 세금과 배송비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상업통신(commercial communications)

7.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제공하고, 정보사회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는 모든 상업통신에 대하여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 (a) 상업통신으로 명백하게 인식 가능할 것
 - (b) 상업통신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백히 밝힐 것
 - (c) (할인, 경품 또는 선물을 포함한) 홍보용 판촉은 홍보용 판촉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고, 이를 받기 위하여 충족해야 할 조건은 쉽게 접근 가능하며 명확하고 분명하게 제시될 것, 그리고

13) O.J. L145, 13.6.77, p.1. Directive as last amended by Directive 2002/38/EC; O.J. L128, 15.5.2002, p.41.

- (d) 홍보용 대회나 게임은 홍보용 대회나 게임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참가 자격에 관한 내용은 쉽게 접근 가능하고 명확하며 분명하게 제시될 것

원하지 않은 상업통신

- 8.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전자메일로 상대가 요청하지 않은 상업통신을 보낸 경우, 수신자가 수령하는 시점에 즉시 명백하고 분명하게 그러한 성격의 상업통신으로 인식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전자적 수단으로 체결된 계약에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 9. - (1) 소비자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계약이 전자적 수단을 통해 체결된다면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 이용자의 주문 이전에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분명한 방식으로 (a)에서 (d)까지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a)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따라야 할 각각의 기술적 단계
 - (b) 서비스제공자가 체결된 계약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는지 여부와 그러한 보존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지 여부
 - (c) 주문확정에 앞서 입력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 그리고
 - (d) 계약 체결에 사용된 언어
- (2) 소비자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관련된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및 그러한 행위규범을 어떻게 전자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3) 서비스제공자는 수신자에게 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을 제시할 때 수신자가 이를 저장하고 복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4) 위 (1)과 (2)의 요건은 전자메일 교환이나 이와 유사한 개별 통신을 통하여 배타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타 정보 요건

10. 위 제6조, 제7조, 제8조과 제9조(1)은 공동체법을 이행하는 법률상의 다른 정보 요건과 함께 적용된다.

주문의 발송(Placing of the order)

11. - (1) 소비자가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한, 서비스 이용자가 기술적 수단을 통해 주문하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

- (a) 부당한 지체 없이 서비스 이용자에게 전자적 수단을 통해 주문을 수신했음을 알려야 하고,
- (b) 서비스 이용자가 주문에 앞서 입력 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율적이며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위 (1)(a)과 관련하여

- (a) 발송된 주문이나 수신 확인은 당사자들이 접근할 수 있을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그리고
- (b) 수신확인은 해당 서비스가 정보사회서비스인 경우, 서비스의 공급으로 이루어진다.

(3) 위 (1)의 요건은 전자메일이나 이와 유사한 개별 통신을 통해 배타적으로 체결되는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문(order)”의 의미

12. “주문”이 계약의 청약인 위 제9조(1)(c) 및 제11조(1)(b)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문”은 제9조와 제11조와 관련하여 계약의 청약을 의미할 수 있지만 반드시 그러할 필요는 없다.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13. 위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1), 그리고 제11조(1)(a)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는 법률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서비스제공자에게 가해지는 조치를 통하여 강제되어야 한다.

제9조(3)의 준수

14. 서비스제공자가 위 제9조(3)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수신자는 계약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요건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계약취소권(Right to rescind contract)

15. 다음과 같은 경우 해당 계약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 서비스제공자에게 달리 명령하지 않는 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한다.
- (a) 동 규칙이 적용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 (b) 서비스제공자가 제11조(1)(b)에 따라 입력오류를 확인하고 정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2001 즉시중지명령규칙(Stop Now Orders Regulations 2001, E.C. 지침)에 대한 개정

16. - (1) 2001 즉시중지명령규칙(E.C. 지침)¹⁴⁾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2) 제2조(3)의 끝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k) 2002 전자상거래규정(E.C. 지침)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그리고 제11조”

14) S.I. 2001/1422.

(3) 별표 I 의 끝에 다음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11. 2000년 6월 8일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특정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전자상거래지침) 2000/31/EC”¹⁵⁾

단순전송

17. - (1)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거나 정보통신망에 연결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의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전송의 결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기타 금전배상 또는 형사적 제재에서 면책된다. 서비스제공자가

- (a) 전송을 먼저 시작하지 않았고
- (b) 전송의 상대방(수신자)을 선택하지 않았으며;
- (c) 전송시에 포함된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은 경우

(2) 다음을 조건으로, 위 (1)에서 기술된 전송행위와 정보통신망 연결 행위는 전송된 정보의 자동적, 중간적,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 (a) 정보통신망에서 전송의 수행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고,
- (b) 전송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이상 정보가 저장되지 않은 경우

캐싱(Caching)

18.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전송의 결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기타 금전배상 또는 형사적 제재에서 면책된다.

15) O.J. L178, 17.7.00, p.1.

- (a) 정보가 자동적, 중간적, 일시적 저장 대상인 정보로서 이러한 저장이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의 재송신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목적만을 위한 것이고
- (b) 서비스제공자는
 - (i) 정보를 수정하지 않았고;
 - (ii) 정보접근에 관한 조건을 준수하였고;
 - (iii) 정보의 업데이트에 관한 모든 규칙, 특히 일반적인 업계 관행을 준수하였고;
 - (iv) 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정보 사용 기록을 얻는 기술의 합법적 사용을 방해하지 않고
 - (v) 전송된 최초 정보가 네트워크에서 삭제되었거나 접근이 불가능하게 되었거나, 또는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그러한 정보의 삭제나 접근금지를 명령했다는 점을 실제로 인식한 경우, 즉각적으로 저장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 경우

호스팅(Hosting)

19. 수신자가 제공하는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정보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저장의 결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이나 기타 금전배상 또는 형사적 제재에서 면책된다.

- (a) 서비스제공자가
 - (i) 불법행위나 정보에 관하여 실제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법행위나 불법정보임이 분명한 상황에 대하여 사실상 또는 정황상 인식하지 못하였고
 - (ii)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근을 불가능하게 한 경우
- (b)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권한이나 통제에 따라 행동하지 않은 경우

권리의 보호

20. - (1) 위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어떠한 규정도
- (a) 다른 계약 조건에 동의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 (b)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할 당사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 (2) 권리 침해를 예방하거나 중지시키기 위한 행정기관의 권한은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계속 적용된다.

형사절차에서의 항변: 입증책임

21. - (1) 동 규칙은 서비스제공자가 제17조, 제18조, 제19조와 관련된 전송이나 정보통신망 연결 또는 저장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상 범죄 혐의를 받고,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항변을 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 (2) 항변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제시된 경우, 검찰이 반대 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하지 않는 한 법원이나 배심원단은 항변이 이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실제 인식을 위한 고지

22. 서비스제공자가 위 제18조(b)(v)와 제19조(a)(i)의 규정상 실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법원은 관련성 있어 보이는 모든 사안을 고려해야 하는데, 특히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a) 제6조(1)(c)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가능한 연락 수단을 통하여 통지 받았는지 여부와
 - (b) 다음과 같은 통지에 포함된 내용

부 록

- (i) 통지 발송자의 성명과 주소
- (ii) 문제된 정보의 상세 위치, 그리고
- (ii) 해당 불법행위의 성질 및 정보의 세부사항

Alan Johnson,
산업고용부 장관(Minister of State for Employment Relations Industry and the
Regions)

2002년 7월 30일 무역산업과(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별표(Schedule)

제4조(4)

1. 저작권, 저작인접권, 지침 87/54/EEC¹⁶⁾와 지침 96/9/EC¹⁷⁾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와 산업재산권
2. 계약 당사자가 적용 가능한 법을 선택할 자유
3. 소비자계약에 관한 계약상 의무
4. 부동산이 위치한 회원국의 법률이 의무적, 공식적 요건을 요구하는 부동산 관련 계약의 경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설정하거나 이전하는 계약의 공식적 유효성
5. 전자메일을 통한 일방적인 상업통신의 허용가능성

16) Council Directive 87/54/EEC of 16 December 1986 on the legal protection of topographies of semiconductor products; O.J. L24, 27.1.87, p.36.

17) Directive 96/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rch 1996 on the legal protection of databases; O.J. L77, 27.3.96, p.20.

주석(Explanatory Note)

(동 주석은 규칙의 일부가 아니다)

동 규칙은 2000년 6월 8일 역내시장에서의 정보사회서비스, 특히 전자상거래 관련 특정 법적 쟁점에 관한 유럽의회 및 위원회 지침(전자상거래지침) 2000/31/EC¹⁸⁾(이하 “지침”)에서 아래 문단에서 언급하는 조치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제3조, 제5조, 제6조, 제7조(1), 제10조에서 제14조, 제18조(2), 그리고 제20조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동 규칙은 전자상거래지침(금융서비스와 시장)규칙 2002(S.I. 2002/1775),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2000 (규제대상 행위) (개정) (No. 2) 명령 2002(S.I. 2002/1776), 전자상거래지침(금융서비스 및 시장)(개정)규정 2002(S.I. 2002/2015), 그리고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2000(금융감독)(개정)(전자상거래지침)(머지않아 작성되어 2002년 8월 21일에 시행될 것으로 기대되는) 명령 2002와 함께 해석되어야 한다. 이 규정들은 금융서비스와 시장법 2000의 금융서비스감독원(Financial Services Authority)의 규제를 받는 영역에서 병존하는 규정들이다.

규칙 제3조(1)는 동 규칙의 적용 범위에서 배제된 사항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3조(2)는 동 규칙이 소급효를 가지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4조(1)는 서비스가 대영제국에서 제공되었는지, 아니면 그 외 다른 회원국에서 제공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대영제국에서 설립된 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정보사회서비스의 제공에 적용되는 조정영역의 요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2조 (1)은 조정영역을 정보사회서비스 활동의 유지와 수행에 대한 조건으로 정의하고, 정보사회서비스는 지침 제2조(a)의 정의를 반영하여 규정하고 있다.) 집행기관은 제4조(2)

18) O.J. L178, 17.7.2000, p.1.

에 따라 이러한 조건의 준수를 보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반대로 제4조(3)은 조정영역에 속하는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자유를 제한하게 된다는 이유로, 다른 회원국에서 설립된 서비스제공자에 의하여 제공된 정보사회서비스에는 당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4조(4)에 따라 이러한 조항들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규칙 제5조는 집행기관, 또는 집행기관이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이 제4조(3)이 적용되지 않는 정보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예외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데, 이는 공공정책, 공중보건, 공공안전,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이유로 필요하고, 그러한 목적에 비례하는 경우여야 한다.

규칙 제6조는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수신자가 특정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규칙 제7조는 서비스 제공자에게 그가 제공하는 정보사회서비스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형성하는 모든 상업통신이 특정 요건을 준수할 것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규칙 제8조는 서비스제공자에게 그가 발송한 일방적인 상업통신이 이를 수신한 시점에서 명백히 그리고 분명하게 일방적인 상업통신으로 인식 가능하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규칙 제9조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소비자가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계약이 전자적 수단에 의해 체결된 경우에는 특정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규칙 제10조는 제6조에서 제9조(1)이 공동체법의 다른 정보 관련 요건에 부가하여 효력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소비자보호규칙 2000(원거리판매)(S.I.2000/2334)에 규정된 요건이 포함된다.

부 록

규칙 제11조는 소비자가 아닌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지 않은 경우 서비스제공자에게 주문과 관련한 요건을 부과하고 있다.

규칙 제13조에서 제15조는 제6조에서 제9조 및 제11조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규칙 제16조는 즉시중지명령규칙 2001(E.C. 지침)을 개정함으로써 법원이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침해하는 지침 위반행위를 중단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동 규칙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및 제11조는 2001 규정이 적용되는 지침을 위한 대영제국의 이행 법률 목록에 추가된다.

규칙 제17조와 제19조는 중개서비스 제공자가 동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전송, 캐싱, 그리고 호스팅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0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가 다른 계약 조건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법원에 소를 구할 수 있는 당사자의 권리, 또는 권리 침해를 방지거나 중지시키기 위한 행정기관의 권한을 방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1조는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형사절차상의 입증책임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서비스제공자가 제18조(b)(v)와 제19조(a)(i)의 목적을 위하여 실제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 법원이 고려해야 하는 사항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지침의 주요 요소들이 어떻게 법률과 규제영향평가로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이행입법 기록(transposition note)은 양원의 도서관에 위치해 있다. 또한 복사본은 Bay 206, 151 Buckingham Palace Road, London SW1W 9SS에 위치한 무역산업부 국제통신연합에서 이용 가능하다.

II. 2013년 소비자계약규칙¹⁹⁾ 제2장 제3절 철회권

제3절의 적용

27. - (1) 이 절은 아래 (2),(3)과 규칙 제6조와 제28조의 조건 하에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원격 및 영업장소 외의 계약(distance and off-premises contracts)에 적용된다.

(2) 이 절은 다음 범위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 (a) 처방 의사에 의한 투약이나 처방 의사의 처방전이나 지시서에 따른 의약품 공급에 관한 계약
- (b) 건강관리 서비스의 일부로 제공되는 건강관리 전문가 또는 관련 업계 종사자에 의한 제품 공급에 관한 계약
- (c) 여객 수송 서비스 계약

(3) 이 절은 소비자 지불액이 42파운드 이하인 영업장소 외의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위 (2)의 (a)와 (b)에서 규칙7(5)에 정의된 용어는 그 항목에서의 내용을 의미한다.

적용 제한 : 철회가 제한되는 상황

28. - (1) 이 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되지 않는다-

- (a) 공급 가격이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에서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 (i) 물품 또는
 - (ii) 물, 가스, 전기, 난방을 제외한 서비스의 공급

19) Consumer Contract (Information, Cancellation and Additional Charges) Regulations 2013 (http://www.legislation.gov.uk/uksi/2013/3134/pdfs/uksi_20133134_en.pdf 최종방문 2016.10.30)

- (b) 해당 소비자에게 특화된 것이거나 명백하게 개별 주문에 의한 상품의 공급
 - (c) 상하거나 쉽게 변질되는 상품의 공급
 - (d) (i) 판매계약 체결 마지막 단계에 가격이 결정되고
 - (ii) 배송이 30일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 (iii) 가격이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시장에서 유동적으로 정해지는 주류의 공급
 - (e) 소비자가 긴급 보수나 유지를 위해 특별히 사업자의 방문을 요구한 계약
 - (f) 정기구독 계약을 제외한 신문이나 정기간행물의 공급계약
 - (g) 공경매에서 체결된 계약
 - (h) 숙박시설, 물품 배송, 자동차 렌탈 서비스, 케이터링이나 레저 관련 서비스로 계약 내용에 특정 날짜나 기간이 규정된 경우
- (2) 위 (1)(e)는 다음과 같은 계약에 이 절이 적용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 (a) 긴급수리나 유지보수에 부가된 서비스
 - (b) 사업자가 소비자의 요청으로 방문 당시 수리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사용한 대체부품을 제외한 상품
- (3) 이 절에서 언급된 권리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중단된다-
- (a) 건강 보호나 위생상의 이유로 교환이 적합하지 않은 밀봉된 상품의 공급계약에서 상품이 배송 후 개봉된 경우;
 - (b) 밀봉된 오디오, 비디오,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공급계약에서 배송 후 개봉된 경우;
 - (c) 판매계약에서 상품이 배송 후 (물건의 특질상) 다른 상품과 분리하기 어렵게 혼합된 경우

철회권

29. - (1)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철회기간 내에는 어떤 이유나 추가비용의 부담 없이 자유롭게 원격 및 영업장소 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a) 규칙 제34조(3) (소비자가 배송방법을 강화한 경우)
 - (b) 규칙 제34조(9) (소비자에 의하여 상품 가치가 감소된 경우)
 - (c) 규칙 제35조(5)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한 경우)
 - (d) 규칙 제36조(4) (소비자가 서비스의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경우)
- (2) 철회기간은 계약이 체결된 때에 시작되고 규칙 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종료된다.
- (3) 위 (1)항목은 특별한 이유나 추가적 부담 없이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언제라도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일반적인 철회기간

30. (1) 철회기간은 규칙 제31조가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은 때에 종료된다.
- (2) 계약이
- (a) 서비스 계약이거나
 - (b) 유형적 매체에 의하여 공급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 계약인 경우
- 철회기간은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14일이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다.
- (3) 계약이 매매계약이고 아래 (4)에서 (6)까지의 어떤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경우, 철회기간은
- (a) 소비자 또는

부 록

(b) 배송인 이외의 자로서 소비자에 의해 점유를 확인해 주는 자가 물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게 된 날로부터 14일이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다.

(4) 하나의 주문에 의하여 다수의 물품매매계약이 이루어졌으나 각 상품의 배송 시기가 다른 경우 철회기간은

(a) 소비자 또는

(b) 배송인 이외의 자로서 소비자에 의해 점유를 확인해 주는 자가 마지막 배송에 의하여 상품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게 된 날로부터 14일이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다.

(5) 서로 다른 날짜에 배송되는 수개의 부품들이 하나의 상품을 구성하는 판매계약에서 철회기간은

(a) 소비자 또는

(b) 배송인 이외의 자로서 소비자에 의해 점유를 확인해 주는 자가 마지막 부품을 물리적으로 소지하게 된 날로부터 14일이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다.

(6) 하루 이상의 정해진 기간 동안 규칙적으로 상품 배송이 이루어지는 판매계약에서 철회기간은

(a) 소비자 또는

(b) 배송인 이외의 자로서 소비자에 의해 점유를 확인해 주는 자가 첫 번째 물건을 물리적으로 점유하게 된 날로부터 14일이 끝나는 시점에 종료된다.

정보제공 의무 위반에 따른 철회기간의 연장

31. (1) 제2부에 따라 별표2의 (1)항목이 요구하는 철회권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이 규정이 적용된다.

- (2) 사업자가 제30조 (2)에서 (6)까지가 언급한 14일의 첫 날 부터 시작하여 12개월 안에 소비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한 경우라면 소비자가 그 정보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14일이 끝나는 때에 철회기간이 종료된다.
- (3) 그렇지 않으면 규칙 제30조에서의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 끝나는 시점에 철회기간이 종료된다.

철회권의 행사

32. (1) 원격 및 영업장소 외 계약체결을 위한 청약을 철회하기 위하여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철회 결정을 알려야 한다.
- (2) 규칙 제29조(1)의 계약을 철회하기 위해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철회 결정을 알려야 한다.
 - (3) 위 (2)에 따라 사업자에게 알리기 위해서 소비자는
 - (a) 별표3 B부분의 철회 양식 예시(model)를 사용하거나
 - (b) 계약 철회 결정을 표명할 명확한 진술을 하여야 한다.
 - (4)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그러한 예시 양식이나 자신의 웹사이트 상에 있는 양식을 채워서 제출하도록 선택사항을 제시한 경우,
 - (a) 소비자는 그것을 이용할 필요는 없지만
 - (b) 만약 이용한다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확실한 방법을 통하여 철회의사를 전달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 (5) 소비자가 위 (2)에 따라 사업자에게 철회 의사를 알리는 경우 그 의사가 철회 기간 이전에 발신되었다면 소비자는 철회기간 내에 철회한 것으로 간주된다.
 - (6)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계약이 이 규칙에 따른 철회기간 내에 철회되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철회의 효과

33. - (1) 계약이 규칙 제29조(1)에 따라 철회된 경우
- (a) 그 철회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당사자의 의무는 종결되고,
 - (b) 규칙 제34조에서 제38조가 적용된다.
- (2) 규칙 제34조와 제38조는 소비자가 원격 및 영업장소 외 계약을 시작하기 위한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철회 또는 취소시 사업자의 환불

34. - (1) 사업자는 아래의 (10)을 조건으로 배송비를 제외한 소비자로 부터 받은 모든 비용을 환불하여야 한다.
- (2) 명시적으로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시하는 일반 비용의 보통 배송 방법 이상의 것을 선택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배송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 (3) 보통 배송 이상을 선택한 경우, 일반 비용이 드는 보통 배송 방법을 선택한 경우 소비자가 지불하였을 비용을 한도로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받은 배송비를 환불하여야 한다.
- (4) 환불은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하고, 어떤 경우에도 아래 (5), (6)에 특정된 기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 (5) 만약 계약이 매매계약이고 사업자가 상품 수거를 제안하지 않았다면, 환불기간은 다음으로부터 14일 후에 종료된다.
- (a) 사업자가 물건을 반환받은 날
 - (b) 위 보다 더 앞서, 소비자가 물건을 반환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날

- (6) 그렇지 않다면, 그 기간은 규칙 제44조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 철회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4일 후에 종료된다.
- (7)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가 아니라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최초에 사용한 것과 동일한 지불 방법을 사용하여 환불하여야 한다.
- (8) 사업자는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요구해서는 안 된다.
- (9) 만약 (매매계약에서) 소비자가 상품의 본질이나 성질 또는 기능의 확인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상품을 취급한 결과, 상품 가치가 감소되었다면 사업자는 계약 가격을 한도로 소비자로 부터 그 금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 (10) 위 (9)에 따른 보전 금액은 -
 - (a) (1)에 따라 환불될 범위에서 공제되거나 ;
 - (b) 그렇지 않다면,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11) 만약 사업자가 제2부에 따라 별첨 2의 (1)이 요구하는 철회권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못하였다면, 위 (9)는 적용되지 않는다.
- (12) 위 (9)와 관련하여 물품의 취급이 상점에서 합리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상품의 본질이나 성격 또는 기능의 확인에 필요한 정도를 넘는 취급이 된다.
- (13) 이 규칙의 규정이 계약 철회에 적용되는 경우 그 계약은 이 규정들을 계약 조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취급된다.

철회시 물품의 반환

35. - (1) 매매 계약이 규칙 제29조(1)에 따라 철회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상품을 수거하는 것이 사업자의 의무이다.
- (a) 사업자가 수거를 제안하였거나
 - (b)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였고 물건의 성질상 일반적으로 우편으로는 반품이 불가능한 방문판매의 경우에 상품이 소비자의 집으로 배달된 때
- (2) 위 (1)에 따라 상품의 수거가 사업자의 의무가 아니라면, 소비자는
- (a) 그것을 반환하거나
 - (b) 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허락한 사람에게 건네주어야 한다.
- (3) 위 (2)(a)에 따라 물건이 발송되어야 할 주소는 -
- (a) 사업자가 상품의 반환을 위해 지정한 주소;
 - (b) 반환 목적의 주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소비자가 사업자와 연락할 수 있도록 지정된 주소
 - (c) 위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주소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자의 영업 장소
- (4) 소비자는 과도한 지체 없이, 반드시 규칙 제32조(2)가 요구하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철회결정을 통지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위(2)(a)에 따라 물건을 반환하거나 (2)(b)에 따라 물건을 건네주어야 한다.
- (5)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소비자는 위 (2)에 따라 물건 반환에 필요한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a) 사업자가 그러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동의하거나
 - (b) 제2부에 따라 별표2 (m)의 상품 반환에 관한 직접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6) 위 (5)(b)가 적용되는 경우 (2)에 따른 소비자의 상품 반환에 드는 직접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계약의 조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된다.
- (7) 소비자는 위 (2)에 따라 상품 반환에 드는 비용 외의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8) 소비자가 비용 부담에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1)에 따른 상품 수거의 비용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철회기간 동안의 서비스 공급

36. - (1)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규칙 제30조(1)에서 규정한 철회기간의 종료 이전에 서비스 공급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 (a) 소비자가 명시적인 요청을 하고
 - (b) 영업장소 외 계약의 경우에 확실한 방법으로 그 요청이 이루어진 때
- (2) 물, 가스, 전기 또는 지역 난방의 공급을 제외한 서비스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규칙 제29조(1)에 따른 서비스 계약의 철회권은 중단된다. 서비스가 온전하게 제공되었고 서비스가
- (a) 위 (1)의 소비자 요청에 의하여 시작되었고
 - (b) 소비자가 일단 사업자가 계약을 온전히 이행한다면 철회권은 상실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때
- (3) 아래 (4)에서 (6)은 계약이 규칙 제29조(1)에 따라 철회되었고 서비스는 철회기간 내에 공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부 록

- (4) 위 (1)의 소비자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공급된 경우, 소비자는 (아래 (6)을 조건으로) 다음의 총액을 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
 - (a) 규칙 제32조(2)에 따라 계약의 철회 결정을 사업자에게 고지한 시점까지 서비스가 공급된 기간의 총 비용으로
 - (b) 계약 총액과 비교하여 공급된 양에 비례한 금액

- (5) 그 총액은 다음을 근거로 계산된다 -
 - (a) 계약에서 합의된 총액
 - (b) 총액이 과도하다면, 다른 사업자가 제공하는 동일 서비스와의 가격 비교를 통하여 계산된 제공 서비스의 시장 가격

- (6)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철회기간 동안에는 전부든 일부든 서비스 공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 (a) 사업자가 제2부에 따라 별표 2의 (l)이 요구하는 철회권에 관한 정보나 별표 2의 (n)이 요구하는 비용 지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 (b) 서비스가 위 (1)의 소비자 요청에 따라 공급된 것이 아닌 경우

철회기간 동안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 37. - (1)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업자는 물리적 수단을 매개로 하지 않는 디지털 콘텐츠 공급계약에서 규칙 제30조(1)이 규정한 철회기간의 종료 전까지 디지털 콘텐츠 공급을 시작하여서는 안 된다.
 - (a)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합의하였고
 - (b) 소비자가 규칙 제29조(1)에 규정된 계약의 철회권을 상실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 (2) 소비자가 철회기간 종료 이전에 위 (1)이 요구하는 합의와 인식이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을 시작하였다면 규칙 제29조(1)의 계약에 관한 철회권은 중단된다.
- (3) 아래 (4)는 계약이 규칙 제29조(1)에 따라 철회되었고 철회기간 이내에 유형적 수단을 통하지 않고 디지털 콘텐츠가 제공된 경우에 적용된다.
- (4) 소비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철회기간 동안에는 전부든 일부든 디지털 콘텐츠의 공급 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
 - (a) 소비자가 규칙 제30조에 규정된 14일의 기간 종료 전에 디지털 콘텐츠의 실행에 관한 동의를 사전 표시한 바 없거나
 - (b) 소비자가 동의를 하였으나 이로 인하여 철회권이 상실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 (c) 사업자가 규칙 제12조(5) 또는 제16조(3)이 요구한 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부수적 계약(ancillary contract)의 철회의 효과

38. - (1) 소비자가 원격 및 영업장소 외 계약을 개시하는 청약을 철회하거나 그러한 계약을 제29조(1)에 따라 철회한다면, 부수적 계약은 다음의 규정들에 따른 비용을 제외한 어떠한 소비자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고 자동적으로 종결된다 -
- (a) 규칙 제34조(3) (소비자가 배송방법을 강화하여 선택한 경우);
 - (b) 규칙 제34조(9) (소비자의 취급 방법 때문에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
 - (c) 규칙 제35조(5)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한 경우);
 - (d) 규칙 제36조(4) (소비자가 서비스의 조기 공급을 요청한 경우)

부 록

- (2)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규칙 제32조(1) 또는 (2)에 따라 청약 철회나 계약 취소를 고지한 경우, 사업자는 위 (1)에 의하여 종결되는 부수적 계약에 관련된 다른 사업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 (3) “부수적 계약”은 원격 및 영업장소 외 계약(“주 계약”)과 관련하여, 소비자가 주 계약에 관련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얻게 되는 계약으로,
 - (a) 사업자 또는
 - (b) 제3자와 사업자의 합의를 근거로 한 제3자가 그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4) 규칙 제6조(1)(b)(금융서비스 계약의 배제)는 이 규칙 상의 부수적 계약을 제한하지 않는다.

【부록 4】 독일의 전자거래통합법(특정한 전자 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률)¹⁾

제 1 장 통신미디어법(Telemediengesetz(TMG))

제 1 절 일반 규정

제 1 조 적용 범위

- (1) 이 법은 정보통신법 제3조 제24호에 규정된—통신망을 통한 신호 전송이 주가 되는 서비스인— 정보통신서비스(Telekommunikationsdienste), 통신법 제3조 제25호에 규정된 정보통신기반 서비스(Telekommunikationsgestützte Dienst) 또는 방송주간(州間)협약(Rundfunkstaatsvertrag) 제2조에 규정된 방송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전자정보 및 통신서비스에 적용된다(통신미디어). 이 법은 이용료의 징수 여부에 관계없이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급자에게 적용된다.
- (2) 이 법은 과세범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3) 정보통신법과 언론법은 영향받지 않는다.
- (4) 통신미디어의 내용에 관한 특별한 요구사항은 방송 및 통신미디어에 관한 주간협약(방송주간협약)을 근거로 한다.
- (5) 이 법은 국제적 사법(私法)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며, 법원의 관할권에 대하여도 규율하지 않는다.

1) Gesetz zur Vereinheitlichung von Vorschriften über bestimmte elektronische Informations- und Kommunikationsdienste (Elektronischer-Geschäftsverkehr-Vereinheitlichungsgesetz-ElGVG)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 웹사이트 (<https://www.gesetze-im-internet.de/aktuell.html> 최종방문 2016.10.30.)). 이 법률은 국내에서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는 문헌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제 2 조 개념 정의

이 법에서

1. 서비스제공자란 자신이나 타인의 통신서비스 이용을 제공하거나 그 이용을 위한 접속을 매개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개점서비스제공자(niedergelassender Dienstanbieter)란 고정설비를 이용하여 장기적으로 통신미디어를 사업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단지 기술설비의 소재지만이 사업자 개점의 근거가 되지는 못한다.
3. 이용자란 통신미디어를 특히 정보를 획득하거나 접속하기 위해 이용하는 자연인 혹은 법인을 말한다.
4. 중개서비스란(Verteildienste) 개인의 개별 요청 없이 정보를 동시에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텔레미디어를 말한다.
5. 상업통신이란 (상공업 또는 수공업이나 자유업에 종사하는) 기업·기타 조직 또는 자연인의 상품·서비스 또는 이미지의 직·간접적인 증진에 기여하는 모든 형태의 통신을 말한다; 다음과 같은 정보의 전달은 이러한 상업통신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다.
 - a) 기업이나 조직 또는 개인의 활동에 직접적 접속을 가능하게 하는(특히, 도메인 이름이나 전자우편 주소와 같은) 정보
 - b) 기업이나 조직 또는 개인의 상품·서비스 또는 이미지와 관련된(독립적이고 특히, 재정적 반대급부가 없는) 정보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인적회사는 법인과 동등하다.

제 3 조 소재지원칙(Herkunftslandprinzip)

- (1) 독일연방공화국에서 개점한 서비스제공자와 그 통신미디어는, 통신미디어가 역내시장의 정보사회서비스(특히, 전자상거래)의 특정 법적 측면들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2000년 6월 8일자 지침(2000/31/EG)의 적용범위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업무적으로 공급되거나 제공되는 경우에도 독일법의 적용을 받는다.

【부록 4】 독일의 전자거래통합법
(특정한 전자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률)

- (2)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자유롭게 통신미디어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도, 2000/31/EG 지침의 적용범위에 있는 다른 나라에서 개점한 서비스제공자가 영업적으로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통신미디어는 (독일법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5항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 (3) 다음의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법선택의 자유
 2. 소비자계약과 관련한 계약상의 채무관계에 관한 규정
 3.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의 취득 그리고 부동산 및 부동산에 준하는 권리에 대한 물권의 설정, 양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법률 규정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 (4) 제1항과 제2항은 다음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 공증인 업무 및 다른 직종 종사자의 고권적 업무
 2. 법정에서의 의뢰인 대리 및 의뢰인의 이익 대변
 3. 전자우편을 통한 요청되지 않은 상업통신의 허용
 4. 복권과 내기를 포함하는 금전적 가치의 상금을 걸고 도박으로 하는 사행성 놀이
 5. 중개서비스에 대한 요청
 6. 저작권, 유사 (피)보호권, 반도체 배치설계의 법적 보호에 관한 1986년 12월 16일 유럽이사회 지침(87/54/EG)과 데이터베이스의 법적보호에 관한 1996년 3월 11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96/9/EG) 및 산업 관련 (피)보호권
 7. 전자화폐 기구의 개시, 수행과 감독에 관한 2000년 9월 18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지침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적용 및 금융기관의 개시, 수행과 활동에 관한 2000년 3월 20일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2000/12/EG)의 적용이 면제된 법정 기구를 통한 전자 화폐의 발행
 8. 카르텔법의 적용을 받는 합의나 행동방식
 9. 보험감독법 제12조, 제13조a부터 제13조c, 제55조a, 제83조, 제110조a부터 제110조d 그리고 제111조c 보험보고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영역, 보험계약에 적용가능한 권리에 관한 규정 및 의무보험

(5) 2000/31/EG 지침의 적용영역에 있는 다른 국가에서 개점한 서비스제공자가 공급 또는 제공하는 통신미디어는 제2항의 예외로서 다음과 같은 국내법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러한 경우로는 이 국내법이

1. 특히 (청소년보호 및 인종·성별·종교·국적을 이유로 한 박해의 방지를 포함하는)범죄행위와 질서위반 및 개인인권 침해에 대한 예방, 수사, 진상규명, 기소와 집행 및 국가 안보·방위 보장과 관련한 공공의 안전과 질서
2. 공중 보건
3. 투자자 보호를 포함한 소비자 이익을 침해 또는 중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며, (이 국내법에 근거하여 고려되는) 그러한 조치가 위의 보호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경우이다. 제1문에 따른 조치의 개시에 관한 절차는, (임시 원심절차와 범죄행위 및 질서위반에 대한 기소(집행 포함)를 포함하는 재판절차에 관한 규정을 제외하고) 2000/31/EG지침 제3조 제4항과 제5항의 협의 및 정보제공 의무가 적용된다.

제 2 절 접근자유(Zulassungsfreiheit) 및 정보제공의무

제 4 조 접근자유

통신미디어는 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과 등록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 5 조 일반적인 정보제공의무

- (1) 서비스제공자는 상업적이고 일반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대가로서 제공되는 통신미디어(서비스) 관련하여 다음의 정보를 쉽게 식별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접속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부록 4】 독일의 전자거래통합법
(특정한 전자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률)

1. 성명 및 개업지로 등재되어 있는 주소, 법인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대표자
 2. 서비스제공자와의 신속한 전자교신 및 직접적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정보(전자우편 주소 포함)
 3. 서비스가 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공되거나 공급되는 경우 관할 감독청에 대한 정보
 4. 서비스제공자가 등재되어 있는 상업등기부, 사단등기부, 동업자등기부 또는 협동조합등기부 및 그 등록번호
 5. 서비스가 (최소 3년 이상의 직업교육을 이수하는) 대학교 학위 인정에 관한 일반규정인 1998년 12월 21일자 89/48/EWG 위원회 지침 제1조 d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또는 (1997년 6월 20일자 위원회 지침(97/38/EG)에 의해 최근 개정되고, 98/48/EWG 지침을 보완하는) 직업 자격증명서 인정에 관한 두 번째 일반규정인 1992년 6월 18일자 이사회 지침(92/51/EWG) 제1조 f가 정하는 바에 따르는 직업 수행 과정에서 제공되거나 공급되는 경우,
 - a) 서비스제공자 소속 협회,
 - b) 법률상의 직업명칭 및 그 직업 명칭을 부여한 국가,
 - c) 직업법 규정의 명칭 및 직업명 규정 적용에 관한 정보
 6. 서비스제공자가 판매세법 제27조a에 따른 소득세등록번호 또는 공과금법 제139조c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보유한 경우, 그 번호에 관한 정보
- (2) 그 밖의 규정에 따른 다른 정보 제공 의무는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6 조 상업통신에 있어서의 특별한 정보제공의무

- (1) 서비스 제공자는 (통신미디어 이거나 통신미디어의 한 구성요소인) 상업통신을 제공하는 경우 적어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상업통신은 상업통신으로서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2. 상업통신 제공을 위임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은 명확하게 식별될 수 있어야 한다.

3. 할인, 보너스 그리고 사은품과 같이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물은 명확히 그러한 홍보물로서 인식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홍보물을 요구하기 위한 조건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하고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4. 광고성 추첨은 명확하게 그러한 것으로 식별될 수 있어야 하고 참여조건은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명확하고 명료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 (2) 상업통신이 전자우편을 통해 전송되는 경우(즉, 스팸메일의 경우), 발신자와 (전송된 상업통신의) 광고성 성격을 (전자우편의) 머리말과 제목에서 감추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수신자가 그 통신의 내용을 보기 전에, 발신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나 (그 전자우편의) 광고성 성격에 대한 어떠한 정보를 얻지 못하거나 오도(誤導)된 정보를 얻도록 머리말과 제목이 의도적으로 형성된 경우가 (그러한) 감춤 또는 은폐에 해당한다.
- (3)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 3 절 책 임

제 7 조 일반원칙

- (1)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에 제공하는) 자신의 정보에 대하여 일반 법률에 따라 책임을 진다.
- (2) 제8조 내지 제10조가 의미하는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가 전달하거나 저장한 정보를 감시하거나 위법 행위를 암시하는 정황을 탐색해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한, 일반 법률에 따라 정보를 삭제하거나 이용을 차단할 의무는 제8조 내지 제10조에 따라 서비스제공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에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정보통신법 제88조에 따른 통신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제 8 조 정보의 (단순) 전달(면책규정)

- (1) 서비스제공자는 (서비스제공자가 통신망에서 전달하거나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 가능한 상태로 전송하는) 타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그 정보가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경우 책임지지 아니한다.

1. 서비스제공자가 그 전송을 유도하지 않았을 경우,
 2. 서비스제공자가 전달된 정보의 수신자를 선별하지 않았을 경우,
 3. 서비스사업자가 전달된 정보를 선별 내지 변경하지 않았을 경우.
- 제1문은, 서비스제공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용자와 서비스에 대하여 협력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2) 제1문에 따른 정보를 전달하고 그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속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는 것에는, 그 정보를 자동으로 단기 임시 저장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경우 그 임시 저장은 통신망에서의 전달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고 해당 정보는 그 전달에 통상적으로 필수적인 경우보다 장기적으로 저장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9 조 정보의 신속한 전달을 위한 임시저장

서비스 제공자는 (다른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타인의 정보를 그 이용자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에만 기여하는) 자동화되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임시저장에 대해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서비스제공자가,

1. 그 정보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2. 그 정보에 대한 접속 조건을 준수하고,
3. 그 정보에 대한 최근 (널리 인정되고 사용되는 산업표준에서 확정된) 규정을 준수하며,
4. 정보이용을 통한 데이터 수집에 이용되는 (널리 인정되고 사용되는 산업표준에서 확정된) 기술이 정당하게 사용되는 것을 저해하지 않으며,
5. 그 정보가 전송의 최초 기점에서 망으로부터 삭제되었거나 정보로의 접속이 차단되었거나 법원이나 행정관청이 삭제 또는 차단 명령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즉시,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저장된

정보를 삭제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지체 없이 행한 경우이다.

제 8 조 제1항 제2문이 준용된다.

제10조 정보의 저장

서비스제공자는 저장되는 타인의 정보에 대하여 다음의 경우에 책임 지지 아니한다.

1. 서비스제공자가 위법한 행위 또는 정보에 대하여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경우에는 위법한 행위나 정보라는 점을 명백하게 알만한 사실이나 상황이 없는 경우, 또는
2. 서비스제공자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지체 없이 그러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정보에 대한 접속을 차단하기 위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서비스제공자의 관할 하에 있거나 감독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 4 절 정보보호

제11조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계

- (1) 이 절의 규정은 통신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및 사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 서비스가,
 1. 직무 및 근무관계에서 전적으로 직업상 또는 업무상의 목적만으로 공급되는 경우 또는
 2. 비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내부에서 또는 비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 사이에서 전적으로 직업상 또는 업무상의 관리만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
- (2) 이 절에서 의미하는 이용자란, 특히 정보를 획득하거나 사용하기 위하여 통신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자연인이다.
- (3) 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호를 전송하는 통신미디어에는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과 관련하여 제12조 제3항, 제15조 제8항과 제16조 제2항 제2호 및 제5호에 의한 것만이 적용된다.

제12조 원칙

- (1) 서비스제공자는, 이 법 또는 명시적으로 통신미디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규에서 허용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통신미디어의 공급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2) 서비스제공자는 명시적으로 통신미디어와 관련이 있는 이 법 또는 다른 법규에서 허용하거나 또는 이용자가 동의했을 경우에만 통신미디어 공급을 위하여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 (3)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통신미디어로 접속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가능하지 않거나 무리한 방법으로만 가능할 경우 통신미디어 공급의 전제조건으로 이용자에게 자신에 관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 (4) 이와 관련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개별 규정은 비록 그 정보가 자동적으로 처리된 것이 아닌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3조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1) 서비스제공자는, 이용과정이 개시된 시점에 이용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사용의 종류·범위 및 목적 그리고 (개인정보 처리 시의 자연인 보호 및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에 관한 1996년 10월 24일자 유럽 이사회 및 의회 지침(95/46/EG)의 적용을 받지 않는 회원국에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이용자 정보가 처리되고 있다는 것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용자 식별을 차후에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수집 또는 사용을 선행하는 자동화된 절차의 경우 해당 절차가 개시된 시점에 이용자에게 고지되어야 한다. 고지내용은 이용자가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2) 서비스제공자가 다음을 보장할 때에 동의는 전자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부 록

1. 이용자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명확하게 동의하였고,
 2. 그러한 동의가 기록되도록 하며,
 3. 이용자가 그 동의의 내용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으며 그리고
 4. 이용자가 그 동의를 언제든지 장래에 철회할 수 있을 것.
- (3)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동의를 제시하기 전에 이용자에게 제2항 제4문에 따른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1항 제3문은 준용된다.
- (4) 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통하여 다음을 보장하여야 한다.
1. 이용자가 서비스의 사용을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고,
 2. 사용 또는 그 밖의 이용이 진행 후에 누적된 개인정보는 그 이용이 종료되는 즉시 삭제되거나 제2문의 경우 차단되도록,
 3. 이용자가 통신미디어를 제3자의 접속에 대비하여 보호되면서 사용할 수 있도록,
 4. 동일 이용자가 다양한 통신미디어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5. 제15조 제2항에 따른 정보는 단지 정산의 목적을 위해서만 통합될 수 있도록,
 6. 제15조 제3항에 따른 이용목록에는 가명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함께 통합될 수 없도록.
 7. 제1문 제2호에 따른 삭제가 법률, 규약 또는 계약상의 보존기간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삭제 대신 차단이 이루어진다.
- (5) 다른 서비스제공자에게 인계된 경우 이용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 (6) 서비스제공자는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통신미디어의 이용 및 그 지분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가능성에 관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 (7) 서비스제공자는 연방데이터보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이용자에게 그 자신 또는 그의 가명으로 저장된 정보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그 안내는 이용자가 요청할 경우 전자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14조 현황정보

- (1) 서비스제공자는 개인정보가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사이의 통신 미디어 이용에 관한 계약관계의 설정, 내용 형성 또는 변경에 필수적인 경우(현황정보)에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 (2) 서비스제공자는 형사소추의 목적이나, 연방과 주의 헌법수호청, 연방정보국 또는 군사정보국의 법률적 과제의 수행이나 또는 지적재산권 관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기관의 명령에 의하여 개별사안에서 현황정보에 관한 안내를 할 수 있다.

제15조 이용정보

- (1)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통신미디어의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정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이용정보), 이를 수집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때의 이용정보는 특히 다음과 같다.
 1. 이용자를 식별하기 위한 표지,
 2. 개별 이용의 개시와 종료 및 범위에 대한 정보 그리고
 3. 이용자가 사용한 통신미디어에 대한 정보.
- (2)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와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자의 다양한 통신미디어 사용을 통한 이용정보를 통합할 수 있다.
- (3)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광고·시장 조사의 목적 또는 통신미디어의 (수요에 상응하는) 구성을 위하여 이용목록을 가명으로 작성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에게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고지의 범위에서 (인정되는) 이용자의 이의 제기권에 대해 알려주어야 한다. 이때의 이용목록은 가명 사용자의 정보와 통합되어서는 안 된다.
- (4)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와의 정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정산정보), 이용과정이 경과된 이후에도 이용정보를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기존의 법적, 규약적 또는 계약적 보존기간을 준수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차단할 수 있다.
- (5) 서비스제공자는 이용료 산정과 이용자와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서비스제공자 또는 제3자에게 정산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서비스제공자가 제3자와 이용료 징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용료 산정과 이용자와의 정산이라는) 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제3자에게 정산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익명화된 이용정보는 다른 서비스제공자의 시장 조사를 위하여 전달될 수 있다. 제14조 제2항은 준용된다.

- (6) 통신미디어 사용에 대한 정산서는 (이용자가 개별증명을 요구하지 않는 한) 이용자가 사용한 특정 통신미디어의 제공자, 시점, 기간, 종류, 내용과 빈도를 제공하지 아니 한다.
- (7) 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특정 (통신미디어)상품 사용에 대한 개별증명서 작성을 위하여 처리하는) 정산정보를 계산서 발송 후 최대 6개월까지 저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중 요금청구에 대해 이의가 제기되거나 또는 지불요청에도 불구하고 지불되지 않을 경우, 정산정보는 이의가 최종적으로 해명되거나 청구된 요금이 지급될 때까지 계속해서 저장될 수 있다.
- (8) 서비스제공자가 (특정 이용자가 이용료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지불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서비스를 이용하였다는) 문서화된 실제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서비스제공자는 법적 조치 목적에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과 종료 시점 및 제7항에서 언급된 저장기간 넘어서 사용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는, 제1문에 따른 전제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법적 조치를 위하여 그 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가 추가하는 목적에 저해되지 않는 즉시, 해당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한다.

제 5 절 과태료 규정

제16조 과태료 규정

- (1) 제6조 제2항 제1문에 위반하여 의도적으로 발신자 또는 메시지의 상업적 성격을 위장하거나 감추는 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로 다루어진다.
- (2) 고의 또는 과실로

【부록 4】 독일의 전자거래통합법
(특정한 전자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률)

1. 제5조 제1항에 위반하여 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유지하거나 부정확 내지 불완전하게 유지하는 자,
 2. 제12조 제3항에 위반하여 통신미디어의 제공을 (제12조 제3항에서) 언급한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는 자,
 3. 제13조 제1항 제1문 또는 제2문에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고지 않거나, 완전하게 고지하지 않거나 적시에 고지하지 않은 자,
 4. 제13조 제2항 제1문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언급된 보장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4조 제1항 또는 제15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8항 제1문 또는 제2문에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사용하거나 삭제하지 않거나 적시에 삭제하지 않은 자 또는,
 6. 제15조 제3항 제3문에 위반하여 이용목록을 가명사용자의 정보와 통합하는 자는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로 다루어진다.
- (3)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하여 최고 5만 유로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제 2 장 청소년보호법의 개정

2004년 7월 23일자 법률 제2장에 의해 마지막으로 개정된, 2002년 7월 23일자 청소년보호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 된다:

제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3) 이 법에서 의미하는 통신미디어는 통신미디어법에 따라 전송되거나 이용되는 미디어를 말한다. 제1문에서의 전송 또는 이용으로 자신 또는 타인 (정보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 간주된다.”

2. 제28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 a) 제1호는“제12조 제2항 제1문 제1호에 위반하여”는 “제12조 제2항 제2문에 위반하여”로 대체된다.
- b) 제2호는“제12조 제2항 제2문에 따라”는 “제12조 제2항 제2문 제1호에 따라”로 대체된다.

제 3 장 접속통제서비스보호법의 개정

2002년 3월 19일자 접속통제서비스보호법 제3조 제1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다:

“ 1. “접속통제를 받는 서비스”

이용료를 전제로 하여 제공되며 오로지 접속통제서비스가 사용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는

- a) 방송국가협약 제2조가 의미하는 방송물,
- b) 통신미디어법 제1조가 의미하는 통신미디어 ”

제 4 장 전자서명법의 개정

2005년 7월 7일자 법률 제3조 제9항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된, 2001년 3월 16일자 전자서명법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제3조, 제17조 제4항 제3문과 제17조 제4항 제5문의 “정보통신 및 우편 담당 규제청”은 “전기, 가스, 통신, 우편 및 철도를 관할하는 연방망청(연방통신청)”으로 대체된다.
2. 제11조 제1항, 제17조 제2항 제5문, 제17조 제3항 제2문과 제21조 제1항 제4문의 “제5조 제1항 제2문”은 “제5조 제1항 제3문”으로 대체된다.
3. 제21조 제1항 제5호의 “제5조 제1항 제3문”은 “제5조 제1항 제4문”으로 대체된다.

제 5 장 효력의 발생 및 소멸

이 법은 주 정부의 제9차 방송주간협약 개정 내용이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동시에 (2001년 12월 14일자 법률의 제1장 및 제4장 제1조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정된) 1997년 7월 22일자 통신서비스법과 (2001년 12월 14일자 법률의 제3조 및 제4조

【부록 4】 독일의 전자거래통합법
(특정한 전자정보서비스 및 통신서비스 규정의 통합을 위한 법률)

제2항에 의하여 개정된) 1997년 7월 2일자 통신서비스정보보호법은 효력을 상실한다. 연방경제기술부는 이 법률의 효력 발생일을 연방 법률관보에 공고한다.

【부록 5】 일본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¹⁾

제 2 장 방문판매, 통신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 1 절 정 의

제 2 조(정의) 이 장 및 제58조의18 제1항에 있어 「방문판매」란 다음에 언급한 것을 말한다.

② 이 장 및 제58조의19에 있어 「통신판매」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우편 그 밖의 주무성령으로 정한 방법 (이하 「우편등」이라고 한다)으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받아 하는 상품 또는 지정권리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서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 2 절 방문판매 <생 략>

제 3 절 통신판매

제11조(통신판매에 대한 광고)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통신 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 또는 지정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 조건에 관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주무장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광고에 그 상품이나 권리 또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광고에 청구에 의해 이러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체 없이 교부 하거나 이러한 사항을 기록한 전자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는

1) 이 법률의 개정 사항을 담고 있는 국내에서 번역하여 소개하고 있는 문헌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연구자가 번역한 것임을 밝혀둔다.

사실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러한 사항의 일부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품이나 권리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판매가격에 상품의 배송료가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가격 및 상품의 배송료)
2. 상품이나 권리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지불시기 및 방법
3. 상품의 인도시기나 권리의 이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
4. 상품이나 지정권리의 매매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15조의 2제1항 단서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5. 전 각 호에 열거하는 것 외에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12조(과대광고등의 금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이나 지정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에 대하여 광고를 하는 때에는 그 상품의 성능 또는 권리나 용역의 내용, 그 상품이나 권리의 매매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매매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한다) 그 밖의 주무장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하거나 실제의 것보다도 현저하게 우량하거나 유리하다고 오인시키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의2(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 주무장관은 전조에서 규정하는 표시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표시를 한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그 표시를 뒷받침하게 되는 합리적인 근거를 나타내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그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의 적용에 대해서는 그 표시는 전조에서 규정하는 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의3(승낙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한 전자메일광고의 제공금지 등)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이나 지정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되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자메일광고[그 광고에 관한 통신문 그 밖의 정보를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송신하거나 이를 광고의 상대방이 사용하는 전자계산기의 영상면에 표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는 광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대방이 되는 자의 청구에 따라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이나 지정 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에 관한 전자메일 광고(이하 이 절에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라 한다)를 하는 때
2.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지정권리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한 자 또는 이들에 대한 매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그 청약이나 계약의 내용 또는 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때
3. 전 2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통상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전자메일을 하는 때
 -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승낙을 받거나 같은 항 제1호의 청구를 받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의 상대방으로부터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 받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표시를 받은 후에 다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그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거나 그 상대방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상대방의 승낙을 받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았다는 것에 대한 기록으로서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것을 작성하고,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에 제11조 각 호의 사항 외에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상대방이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 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전 2항의 규정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다른 자에게 다음에서 열거하는 업무 모두에 대해 일괄하여 위탁하고 있는 때에는 그 위탁에 관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것에 대해 그 상대방의 승낙을 받거나 그 상대방으로부터 청구를 받는 업무
2. 제3항에서 규정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는 업무
3. 전항에서 규정하는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 받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는 업무

제12조의4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로부터 전조 제5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업무 모두에 대해 일괄하여 위탁을 받은 자(이하 이 절과 제66조 제4항 및 제6항에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자」라 한다)는 다음에서 열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업무를 위탁한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이하 이 절에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위탁자」라 한다)가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이나 지정권리의 판매조건 또는 용역의 제공조건에 대하여 그 상대방이 되는 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상대방이 되는 자의 청구에 근거하여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위탁자에 관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때

2. 전호의 사항 외에, 통상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위탁자에 관한 통신 판매전자메일광고를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위탁자에 관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를 하는 때

② 전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자에 의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위탁자에 관한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는 「다음 조 제1항제2호」로 본다.

제13조(통신판매에서의 승낙등의 통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상품이나 지정관리 또는 용역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한 자로부터 그 상품의 인도나 권리의 이전 또는 용역의 제공에 앞서 그 상품이나 권리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하는 것으로 하는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에, 우편등에 의해 그 상품 또는 권리나 용역에 대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받고, 그 상품이나 권리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약을 승낙한다는 내용 또는 승낙하지 않는다는 내용(수령 전에 그 청약을 승낙한다는 내용 또는 승낙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그 청약을 한 자에게 통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그 밖에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상품이나 권리의 대금 또는 용역의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그 상품을 송부하거나 권리를 이전하거나 용역을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전항 본문에 따른 서면에 의한 통지를 대신하여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청약을 한 자의 승낙을 받아 통지하여야 하는 사항을 전자적 방법 그 밖에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그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는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지시) 주무장관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제5항을 제외한다) 또는 전조 제1항에 위반하거나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에 근거한 채무 또는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이나 용역제공계약의 해제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의 전부나 일부의 이행을 거부하거나 부당하게 지연시키는 것
2.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을 청약시키고자 하는 행위로서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것
3. 전 2호의 것들 외에, 통신판매에 관한 행위로서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것

② 주무장관은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자가 제1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위반하거나 다음에서 열거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1. 고객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위탁자에 대한 통신판매에 관한 매매계약 또는 용역제공계약의 청약을 시키고자 하는 행위로서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것
2. 전호의 것 외에, 통신판매에 관한 행위로서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주무장관령에서 정하는 것

제15조(업무의 정지 등) 주무장관은 판매업자 또는 용역제공사업자가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3(제5항을 제외한다) 또는 제13조제1항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

의 공정 및 구입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사업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판매업자나 용역제공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판매에 관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주무장관은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자가 제12조의4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12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위반하거나 전조 제2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의 공정 및 구입자나 용역을 제공 받는 자의 이익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자가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그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수탁사업자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통신판매전자메일광고에 관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주무장관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④ 주무장관은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의2(통신판매에서의 계약의 해제 등)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의 상품이나 지정권리의 판매조건에 대한 광고를 한 판매업자가 그 상품 또는 지정권리의 매매계약의 청약을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한 자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구입자(다음 항에서 「구입자」라 줄여 말한다)는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의 인도나 지정권리를 이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8일이 경과할 때까지는 그 매매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그 매매계약의 해제(이하 이 조에서 「청약철회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판매업자가 청약철회등에 대한 특약을 그 광고에 표시하여 한 경우(그 매매계약이 「전자소비자계약 및 전자승낙통지에 관한 민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2001년 법률 제95호)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전자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밖에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에 표시하고, 또한 광고

부 록

에 표시하는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주무성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에, 그 매매계약에 관련된 상품의 인도 또는 지정 권리의 이전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는 그 인수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구입자의 부담으로 한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u>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상행위(商行爲)를 하는 것을 말한다.</u></p> <p>3. (생략) <신설></p> <p>4. “통신판매중개”란 <u>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을 허락하거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거래 당사자 간의 통신판매를 알선하는 행위를 말한다.</u></p> <p>5. 6. (생략) <신설></p>	<p><u>『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u></p> <p>3. (현행과 같음)</p> <p>3의2. “전자상거래업자”란 <u>전자상거래를 업으로 하는 자 또는 그와의 약정에 따라 전자상거래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u></p> <p><삭제></p> <p>5. 6. (현행과 같음)</p> <p>7. <u>사이버몰이란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u></p>
<p>제3조(적용 제외) ①, ② (생략)</p> <p><u>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④ (생략)</p>	<p>제3조(적용 대상) ①·② (생략)</p> <p><삭제></p> <p>④ (생략)</p>

【부록 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u> 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하여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한다.	제 4 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u>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u> ----- ----- ----- ----- -----.
제 2 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제 2 장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
	<u>제 1 절 거래의 안정성 확보 등</u>
제 6 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u>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u> 에서의 표시·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 5 조(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 ----- <u>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u> ----- ----- ----- -----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 7 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생략)	제 6 조(조작 실수 등의 방지) (현행과 같음)
제 8 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생략)	제 7 조(전자적 대금지급의 신뢰 확보) (현행과 같음)
제 9 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① <u>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u> 에 따라 재화 등을 배송[『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8 조(배송사업자 등의 협력) ① <u>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u> -----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p> <p>4. 수사기관</p> <p>5. 그 밖에 분쟁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p>	
<p>제 9 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9호의 게시판을 운영하는 같은 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라 한다)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p> <p>1.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하고 권고할 것</p> <p>2.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이 법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제33조에 따른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기구에 소비자의</p>	<p><삭 제></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u>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것</u></p> <p><u>3. 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u>②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u></p> <p><u>③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과 소비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신원 확인 조치를 통하여 얻은 게시판 이용 통신판매업자등의 신원정보를 제공하여 그 분쟁의 해결에 협조하여야 한다.</u></p> <p><u>1. 제33조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u></p> <p><u>2. 공정거래위원회</u></p> <p><u>3.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u></p>	
<p><u>제11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위하여 소비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u></p>	<p><u>제 9 조(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이용 등) ① -----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u> ----- -----</p>

【부록 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같다)할 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이를 공정하게 수집하거나 이용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2절 통신판매</p>
<p>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생략)</p>	<p>제10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생략)</p>
<p>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생략)</p>	<p>제11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생략)</p>
<p>제14조(청약확인 등) (생략)</p>	<p>제12조(청약확인 등) (생략)</p>
<p>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 (생략)</p>	<p>제13조(재화등의 공급 등) (생략)</p>
<p>제17조(청약철회등) (생략)</p>	<p>제14조(청약철회등) (생략)</p>
<p>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생략)</p>	<p>제15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생략)</p>
<p>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생략)</p>	<p>제16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생략)</p>
<p>제20조(통신판매중개자의 의무와 책임)</p> <p>① <u>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라 한다)는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총리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u></p> <p>② <u>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업자”라 한다)는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자(이하 “통신판매중개의뢰자”라 한다)가 사</u></p>	<p><삭제></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u>업자인 경우에는 그 성명(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청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그 성명·전화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거래의 당사자들에게 상대방에 관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u></p> <p><u>③ 통신판매중개자는 사이버몰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그 원인 및 피해의 파악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과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20조의2(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책임) ①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1항의 고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u></p> <p><u>② 통신판매중개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소비자에게 정보 또는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u></p>	<p><u><삭 제></u></p>

【부록 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u>하지 아니하거나 제공한 정보가 사실과 달라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③ <u>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지에도 불구하고 통신판매업자인 통신판매중개자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통신판매업자의 의뢰를 받아 통신판매를 중개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약정하여 소비자에게 고지한 부분에 대하여는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책임을 진다.</u></p> <p>④ <u>통신판매중개의뢰자(사업자의 경우에 한정한다)는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 통신판매중개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면책되지 아니한다. 다만, 소비자에게 피해가 가지 아니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제20조의3(통신판매의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책임) 통신판매에 관한 거래</u></p>	<p><삭 제></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u>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 행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는 통신 판매업자가 해당 각 호의 각 목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이행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제7조 및 제8조 의 “사업자”와 제13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1항의 “통신판매업자” 는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본다.</u></p> <p>1. <u>통신판매중개업자가 청약의 접수 를 받는 경우</u> 가. <u>제13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정보의 제공</u> 나. <u>제14조제1항에 따른 청약의 확인</u> 다. <u>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2. <u>통신판매중개업자가 재화등의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u> 가. <u>제7조에 따른 조작 실수 등 의 방지</u> 나. <u>제8조에 따른 전자적 대금 지급의 신뢰 확보</u> 다. <u>그 밖에 소비자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p>	
<p><u>제21조(금지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u></p>	<p><u>제17조(금지행위) ① 통신판매업자는</u> ----- -----</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⑩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준용하되,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 제1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제13조 제1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로, “제37조제1항제3호”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로 보고, 같은 조 제9항 및 제10항 중 “이 법”은 각각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로 본다.</p>	<p>⑩ 통신판매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자는 ----- ----- ----- ----- ----- ----- ----- ----- ----- -----“통신판매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업자”로, -----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 ----- ----- “『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
<p>제24조의2(구매권유광고 시 준수사항 등)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또는 전자우편 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권유하는 행위(이하 “구매권유광고”라 한다)를 할 때에는 이 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삭 제></p>

【부록 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구매권유광고를 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원정보의 요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로 한정하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기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위반자의 신원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p>	
<p>제25조(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u>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u></p>	<p>제25조(통신판매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 <u>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u> ----- ----- ----- ----- -----.</p>
<p>제 4 장 조사 및 감독</p>	<p>제 4 장 조사 및 감독</p>
<p>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생략)</p>	<p>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등) (현행과 같음)</p>
<p>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① <u>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u></p>	<p>제27조(공개정보 검색 등) ① ----- ----- <u>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u>-----</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적인 방법 등을 이용하여 사업자나 <u>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u>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가 정보통신망에 공개한 공개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u>에서의 소비자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거나 공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p> <p>④ (생략)</p>	<p>-----</p> <p>-----</p> <p>----- <u>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u>-----</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p> <p>-----</p> <p>----- <u>통신판매나 전자상거래</u>-----</p> <p>-----</p> <p>-----.</p> <p>④ (현행과 같음)</p>
<p>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u>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u>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색된 정보 중 사업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나 그 밖에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p>	<p>제2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정보공개) ----- <u>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u>-----</p> <p>-----</p> <p>-----</p> <p>-----</p> <p>-----</p> <p>-----</p> <p>-----</p> <p>-----.</p>
<p>제29조(평가·인증 사업의 공정화)</p> <p>① <u>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의 평가·인증 등의 업무를</u></p>	<p><삭 제></p>

【부록 6】『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수행하는 자(이하 “평가·인증 사업자”라 한다)는 그 명칭에 관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평가·인증에 관한 기준, 방법 등을 공시하고, 그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인증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인증의 기준 및 방법은 사업자가 거래의 공정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한 노력과 그 성과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데에 적절한 것이어야 한다.</p> <p>③ 공정거래위원회는 평가·인증 사업자에게 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p>	
제30조(보고 및 감독) (생략)	제29조(보고 및 감독) (현행과 같음)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31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생략)	제30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현행과 같음)
제32조(시정조치 등)	제31조(시정조치 등)
<p>제32조의2(임시중지명령)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p>	<p>제32조(임시중지명령) ① ----- ----- 통신판매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사업자의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 ----- 통신판매업자 또는 전자상거래사업자에 대하여----- 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시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p> <p>1. <u>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u>가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p> <p>2. <u>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u>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고, 다수의 소비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p> <p>② <u>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 중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호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통신판매중개자,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해당 역무제공의 중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p> <p>③ 『<u>소비자기본법</u>』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는 <u>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가 제1항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전자상거래 또는</u></p>	<p>----- -----.</p> <p>1. <u>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u>----- -----</p> <p>2. <u>통신판매 또는 전자상거래</u>----- ----- ----- ----- -----</p> <p><삭 제></p> <p>② ----- ----- ----- <u>통신판매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사업자</u>----- ----- ----- ----- <u>통신판매업 또는</u></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居所(居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소 제기 당시 소비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 ----- ----- ----- ----- -----.</p>
<p>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u>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에 대한 신뢰도의 제고, 그 밖에 공동 이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사업자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할 수 있다.</u> ② (생략)</p>	<p>제37조(사업자단체의 등록) ① <u>통신판매업과 전자상거래</u>-----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생략)</p>	<p>제38조(권한의 위임·위탁) (생략)</p>
<p>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생략)</p>	<p>제39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준용) (생략)</p>
<p>제 7 장 별 칙</p>	<p>제 7 장 별 칙</p>
<p>제40조(벌칙) (생략)</p>	<p>제40조(벌칙) (생략)</p>
<p>제42조(벌칙)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u>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u> 2. 제24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u>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u></p>	<p><삭 제></p>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현행)	(가칭)통신판매 및 전자상거래에 관한 법률
<p><신 설></p> <p>4. 5. (생략)</p> <p><신 설></p> <p>6.~10. (생략)</p> <p>③ (생략)</p> <p>1.~3. (생략)</p> <p><신 설></p> <p>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표시·광고하거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자</p> <p>5. 6. (생략)</p> <p>④ (생략)</p>	<p>3의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p> <p>4. 5. (현행과 같음)</p> <p>5의2. 제23조제8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는 사실 또는 결제대금예치를 이용하도록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지를 제작하거나 사용한 자</p> <p>6.~10.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3. (현행과 같음)</p> <p>3의2.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의 신원정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p> <p>4. 제11조제2항에 따른 거래조건에 관하여 거짓 정보를 제공한 자 또는 제11조제2항을 ----- -----</p> <p>5. 6.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부록 7】『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의 신구조문대비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칙</p> <p>제 1 조(목적) 이 법은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 1 장 총칙</p> <p>제 1 조(목적) ----- <u>전자문서</u> ----- --- <u>전자문서</u>----- ----- ----- ----- -----.</p>
<p>제 2 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4. (생 략)</p> <p>5. “<u>전자거래</u>”란 재화나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u>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u>를 말한다.</p> <p>6. “<u>전자거래사업자</u>”란 전자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p> <p>7. “<u>전자거래이용자</u>”란 전자거래를 이용하는 자로서 전자거래사업자 외의 자를 말한다.</p> <p>8.~10. (생 략)</p>	<p>제 2 조(정의) ----- -----.</p> <p>1.~4. (현행과 같음) <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8.~10. (현행과 같음)</p>
<p>제 3 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에 적용한다.</p>	<p>제 3 조(적용범위) ----- ----- ----- <u>전자문서</u>----- -----.</p>
<p>제 4 조(전자문서의 효력) (생 략)</p>	<p>제 4 조(전자문서의 효력) (현행과 같음)</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제 5 조(전자문서의 보관) (생 략)	제 5 조(전자문서의 보관) (현행과 같음)
제 6 조(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생 략)	제 6 조(송신·수신의 시기 및 장소) (현행과 같음)
제 7 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생 략)	제 7 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 (현행과 같음)
제 8 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생 략)	제 8 조(수신한 전자문서의 독립성) (현행과 같음)
제 9 조(수신 확인) (생 략)	제 9 조(수신 확인) (현행과 같음)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생 략)	제10조(작성자와 수신자 간의 약정에 의한 변경) (현행과 같음)
제11조(전자서명에 관한 사항) 전자 거래 중에서 전자서명에 관한 사항은 「전자서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 제>
<p style="text-align: center;">제 3 장 전자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p> <p>제12조(개인정보 보호)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거나 관리할 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삭 제></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제13조(영업비밀 보호) ① 정부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전자거래사업자(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전자거래이용자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p> <p>③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당 이용자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비밀의 범위, 보호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제14조(암호제품의 사용) ①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암호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암호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암호화된 정보의 원문 또는 암호기술에의 접근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15조(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시행 등) ① 정부는 「소비자기본법」·</p>	<p><삭 제></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u>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u>」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전자거래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전자거래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자율적으로 행동규범을 제정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p>	
<p>제16조(소비자 피해의 예방과 구제)</p> <p>①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 피해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대한 정보의 제공, 교육의 확대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정부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의 불만과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7조(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 전자거래사업자는 전자거래와 관련되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p> <p>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와 그 밖에 자신에 관한 정보와 재화, 용역, 계약 조건 등에 관한 정확한 정</p>	<p><삭 제></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u>보의 제공</u></p> <p>2. <u>소비자가 쉽게 접근·인지할 수 있도록 약관의 제공 및 보존</u></p> <p>3. <u>소비자가 자신의 주문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u></p> <p>4. <u>청약의 철회,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교환, 반품 및 대금환급 등을 쉽게 할 수 있는 절차의 마련</u></p> <p>5. <u>소비자의 불만과 요구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의 마련</u></p> <p>6. <u>거래의 증명 등에 필요한 거래 기록의 일정기간 보존</u></p>	
<p><u>제18조(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한 인증)</u></p> <p>① <u>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거래 촉진 및 전자거래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전자거래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u></p> <p>② <u>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u></p> <p>③ <u>제1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절차와 제2항에 따른 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p><u>제18조의2(인증의 표시)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전자거래사업자(이하 “우수전자거래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전자거래사업자</u></p>	<p><u><삭 제></u></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u>임을 표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식에 의한 표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u></p> <p>② <u>우수전자거래사업자가 아닌 자는 제1항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제18조의3(인증의 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거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u> <u>2. 제17조에 따른 전자거래사업자의 일반적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u> <u>3. 제18조제3항에 따른 인증의 기준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u> 	<p><u><삭 제></u></p>
<p>제 4 장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p> <p>제19조(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정부는 전자문서 <u>이용 및 전자거래를</u>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에 관한 기본정책을 수립·시행하여</p>	<p>제 4 장 전자문서의 수립 및 추진체계</p> <p>제19조(전자문서기본정책의 원칙과 정부의 책무) ----- ----- <u>이용을</u> ----- ----- <u>전자문서</u>-----</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야 한다.</p> <p>1. 2. (생 략)</p> <p>3.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u></p> <p>4. (생 략)</p>	<p>-----.</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전자문서</u>-----</p> <p>-----</p> <p>4. (현행과 같음)</p>
<p>제20조(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정부는 제19조에 따른 <u>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정책</u>의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u>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u>”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1. <u>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u>의 기본 방향</p> <p>2.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u> 관련된 국제규범에 관한 사항</p> <p>3. 4. (생 략)</p> <p>5.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에</u> 관한 사항</p> <p>6.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에</u> 관한 사항</p> <p>7.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u> 관한 기술의 개발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p> <p>8. <u>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u> 촉진에 필요한 환경조성 및 수요창출에 관한 사항</p> <p>9.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u> 관련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p> <p>10. <u>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u> 촉진에 필요한 기반조성의 지원</p>	<p>제20조(전자문서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p> <p>----- <u>전자문서기본정책</u>-----</p> <p>-----“<u>전자문서촉진계획</u>”-----.</p> <p>1. <u>전자문서촉진계획</u>-----</p> <p>2. <u>전자문서</u>-----</p> <p>-----</p> <p>3. 4. (현행과 같음)</p> <p>5. <u>전자문서</u> -----</p> <p>6. <u>전자문서</u>-----</p> <p>7. <u>전자문서</u>-----</p> <p>8. ----- <u>이용의</u> -----</p> <p>-----</p> <p>9. <u>전자문서</u>-----</p> <p>-----</p> <p>10. ----- <u>이용의</u> -----</p> <p>-----</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에 관한 사항</p> <p>11. (생 략)</p> <p>12. 그 밖에 전자문서 <u>이용 및 전자거래</u>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p> <p>② <u>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u>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관 별 부문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할 때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p> <p>③ <u>전자문서·전자거래촉진계획</u>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별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한다.</p>	<p>-----</p> <p>11. (현행과 같음)</p> <p>12. ----- <u>이용을</u> -----</p> <p>-----</p> <p>② <u>전자문서촉진계획</u>-----</p> <p>-----</p> <p>-----</p> <p>-----</p> <p>-----</p> <p>-----</p> <p>-----</p> <p>-----</p> <p>③ <u>전자문서촉진계획</u>-----</p> <p>-----</p> <p>-----</p> <p>-----</p>
<p>제22조(전자문서·전자거래 진흥 전담 기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전자문서 <u>이용 및 전자거래</u>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p> <p>1. (생 략)</p> <p>2. 제24조에 따른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와 관련된 표준의 연구개발·보급사업 및 국제표준화 활동</p> <p>3. (생 략)</p> <p>4. 제28조에 따른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 통계의 실태조사의 지원</p> <p>5.~9. (생 략)</p> <p>10. 제32조에 따른 <u>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u>의 운영</p>	<p>제22조(전자문서 진흥 전담기관) ①</p> <p>-----</p> <p>----- <u>이용의</u> -----</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 <u>전자문서</u> -----</p> <p>-----</p> <p>3. (현행과 같음)</p> <p>4. ----- <u>전자문서</u> -----</p> <p>-----</p> <p>5.~9. (현행과 같음)</p> <p><삭 제></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② (생 략)</p> <p>③ 정부는 예산 또는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1조에 따른 정보통신진흥기금의 범위에서 전담기관이 전자거래의 촉진과 전자문서의 이용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전자문서----- ----- ----- -----.</p>
<p>제 5 장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과 그 기반조성</p>	<p>제 5 장 전자문서 이용의 촉진과 그 기반 조성</p>
<p>제24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표준화) ① 정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의 효율적 운용과 관련 기술의 호환성(互換性)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국내외 표준의 조사·연구·개발 3. 그 밖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된 표준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업 <p>② (생 략)</p>	<p>제24조(전자문서의 표준화) ① ----- 전자문서의----- -----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전자문서----- ----- 2. 전자문서----- ----- ----- 3. ----- 전자문서----- ----- ----- <p>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술개발의 추진) 정부는 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의 촉진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p>	<p>제25조(전자문서 기술개발의 추진) --- ----- 이용 ----- -----</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에 관한 기술수준의 조사, 기술의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활용에 관한 사항 2.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에 관한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3.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에 관한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 및 산학연(産學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에 관한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p>-----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자문서</u>----- ----- ----- ----- 2. <u>전자문서</u>----- ----- ----- 3. <u>전자문서</u>----- ----- ----- 4. ----- <u>전자문서</u>----- ----- -----
<p>제26조(<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 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u>전자문서 이용 및 전자거래</u>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p>	<p>제26조(<u>전자문서</u> 전문인력의 양성) ① ----- <u>이용을</u>----- ----- -----.</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7조(<u>공공부문의 전자거래</u> 추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u>」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이하 “<u>국가기관등</u>”이라 한다)은 그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의 조달이나 기관의 사업을 <u>전자거래</u>로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삭 제></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수 있다.</p> <p>② 정부는 국제기구에서의 <u>전자문서 및 전자거래</u>에 관련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대응하고, <u>전자거래사업자 및 전자문서</u> 관련 사업자의 <u>국외시장 진출을 활성화</u>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p> <p>② ----- <u>전자문서</u> -----</p> <p>-----</p> <p><u>전자문서</u> -----</p> <p>-----</p> <p>-----.</p>
<p><u>제30조(전자상거래지원센터)</u> ① 정부는 <u>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u>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p> <p>② <u>미래창조과학부장관</u>은 <u>중소기업의 전자거래를 촉진</u>하기 위하여 <u>전자거래와 관련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경영자문, 정보제공</u> 등을 지원하는 기관을 <u>전자상거래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u>로 지정할 수 있다.</p> <p>③ <u>지원센터의 지정기준, 사업추진 실적 보고 및 경비지원</u> 등에 필요한 사항은 <u>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삭 제></u></p>
<p><u>제30조의2(지원센터의 지정취소)</u> <u>미래창조과학부장관</u>은 <u>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u>할 수 있다. 다만, <u>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u>하여야 한다.</p> <p>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u>으로 <u>지원센터 지정</u>을 받은 경우</p> <p>2. <u>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사업추진실적이 없는 경우</u></p>	<p><u><삭 제></u></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p>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p> <p>⑤ 위원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u>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u></p> <p><u>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둔다.</u></p> <p><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3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u></p> <p><u>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정사건의 조정에서 제척(除斥)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u> <u>2.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u> <u>3.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u> <u>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u> <p><u>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한다.</u></p>	<p><u><삭 제></u></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당 사건의 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p>	
<p>제33조(분쟁의 조정)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와 관련한 피해의 구제와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는 제외한다.</p> <p>② 조정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에서 행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조정하기로 의결한 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행한다.</p> <p>③ 조정부의 위원은 사건마다 각각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32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④ 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에게 권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⑤ 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는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p>	<p><삭 제></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u>원상회복, 손해배상 및 그 밖에 피해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u></p> <p><u>⑥ 제4항 본문에 따른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위원회 또는 조정부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15일 이내에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수락한 것으로 본다.</u></p> <p><u>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정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33조의2(위법사실의 통보 등)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분쟁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u> <u>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u> 	<p><u><삭 제></u></p>
<p><u>제34조(자료 요청 등)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당</u></p>	<p><u><삭 제></u></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사자는 <u>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u></p> <p>② <u>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u></p>	
<p>제34조의2(조정외 거부와 중지) ① <u>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다른 법률에 따라 분쟁조정이 완료된 경우</u> 2. <u>사건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 3. <u>부정한 목적으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u> <p>② <u>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이 끝나기 전에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u></p> <p>③ <u>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조정을 거부하거나 중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u></p>	<p><u><삭 제></u></p>
<p>제35조(조정외 성립) ① <u>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성립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제33조제4항에 따른 조정안에 대하여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u> 2. <u>당사자가 위원회에 조정합의서를 제출한 경우</u> 	<p><u><삭 제></u></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당사자에게 보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조정조서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p>	
<p>제36조(조정외 불성립)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분쟁조정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분쟁의 조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당사자가 위원회의 조정안을 거부한 경우 	<p><삭 제></p>
<p>제36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제33조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분쟁조정의 신청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삭 제></p>
<p>제37조(조정비용 등) ① 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을 신청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p>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p>	<p><삭 제></p>
<p>제37조의2(비밀 유지) 위원회의 분쟁조정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중</p>	<p><삭 제></p>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현 행)	전자문서법 (개정안)
<p><u>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제41조(청문)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30조의2에 따라 지원센터의 <u>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u> 2. 3. (생 략)</p>	<p>제41조(청문) ----- ----- ----- <삭 제> 2. 3. (현행과 같음)</p>
<p>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2. (생 략) 3. <u>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u></p>	<p>제4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p>
<p>제46조(과태료) ① (생 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u>우수전자거래사업자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홍보를 한 자</u> 2. ~ 20. (생 략) ③ (생 략)</p>	<p>제4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삭 제> 2. ~ 2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부록 8】『전자서명법』의 신구조문대비표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생 략)	제 1 조(목적) (생 략)
제 2 조(정의) (생 략) 1. 2. (생 략) 3. “ <u>공인전자서명</u>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u>공인인증서</u> 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가.~라. (생 략) 4.~7. (생 략) 8. “ <u>공인인증서</u> ”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u>공인인증기관</u> 이 발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9. “ <u>공인인증업무</u> ”라 함은 <u>공인인증서</u> 의 발급, 인증관련 기록의 관리등 <u>공인인증역무</u> 를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10. “ <u>공인인증기관</u> ”이라 함은 <u>공인인증역무</u> 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를 말한다. 11. “ <u>가입자</u> ”라 함은 <u>공인인증기관</u> 으로부터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12. 13. (생 략)	제 2 조(정의)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3. “ <u>지정전자서명</u> ”----- ----- <u>지정인증서</u> ----- 가.~라. (현행과 같음) 4.~7. (현행과 같음) 8. “ <u>지정인증서</u> ”----- ----- <u>지정인증기관</u> ----- ----- 9. “ <u>지정인증업무</u> ”----- <u>지정인증서</u> ----- ----- <u>지정인증역무</u> ----- ----- 10. “ <u>지정인증기관</u> ”----- <u>지정인증역무</u> ----- ----- ----- 11. ----- <u>지정인증기관</u> ----- ----- ----- 12. 13. (현행과 같음)
제 3 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다른 법령에서 문서 또는 서면에 서명,	제 3 조(전자서명의 효력 등) ① ----- -----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을 요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u>공인전자서명</u>이 있는 때에는 이를 충족한 것으로 본다.</p> <p>② <u>공인전자서명</u>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서명이 서명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고, 당해 전자문서가 전자서명된 후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다고 추정한다.</p> <p>③ (생략)</p>	<p>----- -----<u>지정전자서명</u>----- ----- -----.</p> <p>② <u>지정전자서명</u>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는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추정한다.</p> <p>③ (현행과 같음)</p>
<p>제 2 장 공인인증기관</p>	<p>제 2 장 지정인증기관</p>
<p>제 4 조(공인인증기관의 지정)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u>공인인증업무</u> (이하 “인증업무”라 한다)를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u>공인인증기관</u>으로 지정할 수 있다.</p> <p>② <u>공인인증기관</u>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에 한한다.</p> <p>③ <u>공인인증기관</u>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재정능력·시설 및 장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갖추어야 한다.</p> <p>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u>공인인증기관</u>을 지정하는 경우 <u>공인인증시장</u>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법인과 특별법에</p>	<p>제 4 조(지정인증기관의 지정) ① ----- -----<u>지정인증업무</u>----- ----- -----<u>지정인증기관</u>-----.</p> <p>② <u>지정인증기관</u>----- -----.</p> <p>③ <u>지정인증기관</u>----- -----.</p> <p>④ ----- ----- <u>지정인증기관</u>----- ----- <u>지정인증시장</u>-----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설립목적에 따라 인증업무의 영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p> <p>⑤ <u>공인인증기관</u>의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 -----.</p> <p>⑤ <u>지정인증기관</u>----- -----.</p>
<p>제 5 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u>공인인증기관</u>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p> <p>1. 2. (생 략)</p>	<p>제 5 조(결격사유) ----- ----- <u>지정인증기관</u>----- -----.</p> <p>1. 2. (현행과 같음)</p>
<p>제 6 조(<u>공인인증업무준칙</u> 등) ① <u>공인인증기관</u>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u>공인인증업무준칙</u>(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1. 2. (생 략)</p> <p>3. <u>공인인증역무</u>(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p> <p>4. (생 략)</p> <p>② <u>공인인증기관</u>은 인증업무준칙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u>공인인증업무준칙</u> 작성표준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u>공인인증기관</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 6 조(<u>지정인증업무준칙</u> 등) ① <u>지정인증기관</u>----- ----- -----<u>지정인증업무준칙</u>-----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지정인증역무</u>----- -----</p> <p>4. (현행과 같음)</p> <p>② <u>지정인증기관</u>----- ----- <u>지정인증업무준칙</u>----- ----- -----.</p> <p>③ <u>지정인증기관</u>----- ----- -----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2. (생 략)</p> <p>3. <u>공인인증기관</u> 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p> <p>4. (생 략)</p>	<p>2. (현행과 같음)</p> <p>3. <u>지정인증기관</u> ----- -----</p> <p>4. (현행과 같음)</p>
<p>제 9 조(인증업무의 양수등) ① <u>공인인증기관</u>은 다른 <u>공인인증기관</u>의 인증업무를 양수하거나 다른 <u>공인인증기관</u>인 법인을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업무를 양수한 <u>공인인증기관</u> 또는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종전의 <u>공인인증기관</u>의 지위를 승계한다.</p>	<p>제 9 조(인증업무의 양수등) ①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인증기관</u>----- ----- <u>지정인증기관</u>----- ----- ----- ----- ----- ----- ② ----- ----- <u>지정인증기관</u>----- ----- ----- ----- <u>지정인증기관</u>----- -----.</p>
<p>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① <u>공인인증기관</u>이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지기간을 정하여 휴지하고자 하는 날의 3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지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p> <p>② <u>공인인증기관</u>이 인증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폐지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이를 가입자에게 통보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제10조(인증업무의 휴지·폐지등) ① <u>지정인증기관</u>----- ----- ----- ----- ----- ----- ----- ----- ----- ----- ----- ----- ② <u>지정인증기관</u>----- ----- ----- -----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관 합병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7. (생 략)</p> <p>8.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이 취소된 <u>공인인증기관</u>이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p> <p>9. 9의2. (생 략)</p> <p>10. 제1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u>공인인증서</u>의 효력을 정지 또는 회복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p> <p>11. 제1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u>공인인증서</u>를 폐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p> <p>11의2.~13. (생 략)</p>	<p><u>관</u>----- -----</p> <p>7. (현행과 같음)</p> <p>8. ----- ----- <u>지정인증기관</u>----- ----- -----</p> <p>9. 9의2. (현행과 같음)</p> <p>10. -----<u>지정인증서</u>----- ----- ----- -----</p> <p>11. ----- <u>지정인증서</u>----- ----- -----</p> <p>11의2.~13. (현행과 같음)</p>
<p>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u>공인인증기관</u>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p> <p>1.~5. (생 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u>공인인증기관</u>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다른 <u>공인인증기관</u>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p>	<p>제12조(인증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등) ① ----- <u>지정인증기관</u>----- ----- ----- ----- ----- ----- -----</p> <p>1.~5. (현행과 같음)</p> <p>② -----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인증기관</u>-----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사유로 인하여 가입자인증서등을 인계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10조제4항의 규정은 지정이 취소된 <u>공인인증기관</u>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p> <p>④ (생 략)</p>	<p>----- ----- ----- ----- ----- ----- ③ ----- ----- <u>지정인증기관</u>----- ----- ----- ④ (현행과 같음)</p>
<p>제14조(검사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및 가입자의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u>공인인증기관</u>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u>공인인증기관</u>의 사무실·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장부·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u>공인인증기관</u>의 신원확인 절차 및 방법의 적정 여부</p> <p>2. (생 략)</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검사 개시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 계획을 해당 <u>공인인증기관</u>에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14조(검사등) ① ----- ----- ----- ----- ----- <u>지정인증기관</u>----- ----- -----<u>지정인증기관</u>----- ----- ----- ----- ----- ----- 1. ----- <u>지정인증기관</u>----- ----- ----- 2. (현행과 같음) ② ----- ----- ----- ----- ----- ----- <u>지정인증기관</u>----- ----- ----- ③ (현행과 같음)</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제 3 장 공인인증서	제 3 장 지정인증서
<p>제15조(공인인증서의 발급) ① <u>공인인증기관</u>은 <u>공인인증서</u>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u>공인인증서</u>를 발급한다. 이 경우 <u>공인인증기관</u>은 <u>공인인증서</u>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u>공인인증기관</u>이 발급하는 <u>공인인증서</u>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생 략) 3. 가입자와 <u>공인인증기관</u>이 이용하는 전자서명 방식 4. <u>공인인증서</u>의 일련번호 5. <u>공인인증서</u>의 유효기간 6. <u>공인인증기관</u>의 명칭 등 <u>공인인증기관</u>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7. <u>공인인증서</u>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경우 이에 관한 사항 8. (생 략) 9. <u>공인인증서</u>임을 나타내는 표시 <p>④ <u>공인인증기관</u>은 <u>공인인증서</u>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u>공인인증서</u>의 이용범위 또는 용도를 제한하는 <u>공인인증서</u>를 발급할 수 있다.</p> <p>⑤ <u>공인인증기관</u>은 <u>공인인증서</u>의 이용범위 및 용도, 이용된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p>	<p>제15조(지정인증서의 발급) ① <u>지정인증기관</u>은 <u>지정인증서</u>----- -----<u>지정인증서</u>----- ----- <u>지정인증기관</u> 은 <u>지정인증서</u>----- -----.</p> <p>②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인증서</u>-----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현행과 같음) 3. ----- <u>지정인증기관</u>----- ----- 4. <u>지정인증서</u>----- 5. <u>지정인증서</u>----- 6.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인증기관</u>----- ----- 7. <u>지정인증서</u>----- ----- 8. (현행과 같음) 9. <u>지정인증서</u>----- <p>④ <u>지정인증기관</u>은 <u>지정인증서</u>----- ----- <u>지정인증서</u>----- ----- <u>지정인증서</u>----- -----.</p> <p>⑤ <u>지정인증기관</u>은 <u>지정인증서</u>----- -----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사실을 인지한 경우</p> <p>3. 가입자의 사망·실종신고 또는 해산 사실을 인지한 경우</p> <p>4.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된 사실을 인지한 경우</p> <p>② 공인인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인증서를 폐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p> <p>3. 4. (현행과 같음)</p> <p>② 지정인증기관----- -----지정인증서----- ----- ----- -----.</p>
<p>제18조의2(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다른 법률에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본인임을 확인하는 것을 제한 또는 배제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p>	<p>제18조의2(지정인증서를 이용한 본인확인) -----지정인증서----- ----- ----- -----지정인증기관-----지정인증서----- -----.</p>
<p>제18조의3(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령이 정하는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18조의3(지정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 지정인증기관----- ----- ----- -----.</p>
<p>제19조(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 공인인증기관은 자신이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유효한지의 여부를 누구든지 항상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 등 인증업무에 관한 시설 및 장비를 안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p>	<p>제19조(인증업무에 관한 설비의 운영) ① 지정인증기관은----- ----- 지정인증서----- ----- -----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② <u>공인인증기관</u>은 제1항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운영 여부를 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점검받아야 한다.</p> <p>③ <u>공인인증기관</u>은 공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장비를 변경하는 경우 지체없이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진흥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 여부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p>	<p>② <u>지정인증기관</u>----- ----- ----- -----.</p> <p>③ <u>지정인증기관</u>은 <u>지정인증기관</u>----- ----- ----- ----- -----.</p>
<p>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u>공인인증기관</u>은 가입자 또는 <u>공인인증서를</u>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u>공인인증기관</u>에 제시된 시점을 <u>공인전자서명</u>하여 확인할 수 있다.</p>	<p>제20조(전자문서의 시점확인) <u>지정인증기관</u>-----<u>지정인증서</u> ----- -----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전자서명</u>----- -----.</p>
<p>제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① 가입자는 자신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고, 이를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u>공인인증기관</u>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지체없이 이용자에게 <u>공인인증기관</u>에 통보한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p>	<p>제21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관리) ① ----- ----- ----- -----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인증기관</u>-----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② <u>공인인증기관</u>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통보하거나 고지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p> <p>③ <u>공인인증기관</u>은 가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외에는 가입자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되며, 가입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의 전자서명생성정보를 보관하는 경우 당해 가입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하거나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u>공인인증기관</u>은 자신이 이용하는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전자서명생성정보가 분실·훼손 또는 도난·유출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진흥원에 통보하고 인증업무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u>지정인증기관</u>----- ----- ----- -----.</p> <p>③ <u>지정인증기관</u>----- ----- ----- ----- ----- ----- -----.</p> <p>④ <u>지정인증기관</u>----- ----- ----- ----- ----- ----- -----.</p>
<p>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 <u>공인인증기관</u>은 가입자의 <u>공인인증서</u>와 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여야 한다.</p> <p>② <u>공인인증기관</u>은 가입자인증서등을 당해 <u>공인인증서</u>의 효력이 소멸된 날부터 10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p>	<p>제22조(인증업무에 관한 기록의 관리) ①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인증서</u>----- -----.</p> <p>② <u>지정인증기관</u>----- ----- <u>지정인증서</u>----- -----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제22조의2(공인인증서의 관리 등) ① <u>공인인증기관</u> 및 가입자는 <u>공인인증서</u>의 유효기간 이내에 당해 <u>공인인증서</u>의 기재사항 또는 <u>공인인증서</u>와 결부된 정보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유지되도록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p> <p>② <u>공인인증기관</u>은 이용자가 <u>공인인증서</u>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공인인증기관</u>의 명칭 등 <u>공인인증기관</u>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 2. 가입자가 당해 <u>공인인증서</u>가 발행된 당시에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는 사실 3. <u>공인인증서</u>의 발행 전에 전자서명생성정보가 유효한 사실 <p>③ <u>공인인증기관</u>은 이용자가 다음 각호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쉬운 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u>공인인증서</u>의 사용목적이나 사용금액에 대한 제한 3. <u>공인인증기관</u>이 부담하는 책임의 범위 또는 정도 	<p>제22조의2(<u>지정인증서</u>의 관리 등) ①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인증서</u>----- <u>지정인증서</u>----- <u>지정인증서</u>----- ----- -----.</p> <p>②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인증서</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인증기관</u>----- 2. ----- <u>지정인증서</u>----- ----- 3. <u>지정인증서</u>----- ----- <p>③ <u>지정인증기관</u>-----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 <u>지정인증서</u>----- ----- 3. <u>지정인증기관</u>----- -----
<p>제22조의3(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① <u>공인인증기관</u>은 인증업무를 제공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장</p>	<p>제22조의3(인증업무의 장애발생 신고) ① <u>지정인증기관</u>-----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신고하고 신속히 장애를 복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p> <p>① 누구든지 타인의 전자서명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②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로 <u>공인인증서</u>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누구든지 <u>공인인증서</u>가 아닌 인증서 등을 <u>공인인증서</u>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u>공인인증서</u>의 사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④ 누구든지 <u>공인인증서</u>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⑤ 누구든지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u>공인인증서</u>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u>공인인증서</u>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서는 아니된다.</p>	<p>제23조(전자서명생성정보의 보호 등)</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u>지정인증서</u>----- -----.</p> <p>③ ----- <u>지정인증서</u>----- ----- <u>지정인증서</u>----- ----- <u>지정인증서</u>----- -----.</p> <p>④ ----- <u>지정인증서</u>----- -----.</p> <p>⑤ ----- ----- <u>지정인증서</u>----- ----- ----- <u>지정인증서</u>----- -----.</p>
<p>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① <u>공인인증기관</u>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p>	<p>제24조(개인정보의 보호) <u>지정인증기관</u>-----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 인터넷진흥원은 전자서명을 안전하고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u>공인인증기관</u>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u>공인인증기관</u>을 지정하는 경우 <u>공인인증기관</u>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심사 지원</p> <p>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u>공인인증기관</u>에 대한 검사 지원</p> <p>3. 4. (생략)</p> <p>5. <u>공인인증기관</u>에 대한 <u>공인인증서</u> 발급·관리 등 인증업무</p> <p>6.~8. (생략)</p> <p>② 제6조, 제7조, 제15조 내지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의 규정은 인터넷진흥원의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u>공인인증기관</u>”은 “인터넷진흥원”으로, “가입자”는 “<u>공인인증기관</u>”으로 본다.</p> <p>③ 인터넷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술지원·점검 및 <u>공인인증서</u> 발급 등 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p>	<p>제25조(전자서명인증관리업무) ① --- ----- ----- -----<u>지정인증기관</u>----- ----- -----.</p> <p>1. -----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인증기관</u>----- ----- -----</p> <p>2. ----- <u>지정인증기관</u>-----</p> <p>3. 4. (현행과 같음)</p> <p>5. <u>지정인증기관</u>----- <u>지정인증서</u>-----</p> <p>6.~8.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u>지정인증기관</u>”----- ----- “<u>지정인증기관</u>”----- -----.</p> <p>③ ----- ----- ----- <u>지정인증서</u>----- -----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제25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제15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의 <u>공인인증서</u> 기재사항 등에 의하여 <u>공인전자서명</u>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목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가. <u>공인인증서</u>의 유효 여부의 확인 나. <u>공인인증서</u>의 정지 또는 폐지 여부의 확인 다. (생략)</p>	<p>제25조의2(이용자의 준수사항) ----- ----- ----- <u>지정인증서</u>----- -----<u>지정인증서명</u>----- ----- ----- 가. <u>지정인증서</u>----- 나. <u>지정인증서</u>----- ----- 다.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의3(특정 <u>공인인증서</u> 요구 금지) 누구든지 <u>공인인증서</u>를 이용하여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특정 <u>공인인증기관</u>의 <u>공인인증서</u>만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5조의3(특정 <u>지정인증서</u> 요구 금지) ----- <u>지정인증서</u>----- ----- ----- <u>지정인증기관</u>의 <u>지정인증서</u>----- ----- -----.</p>
<p>제26조(배상책임) ① <u>공인인증기관</u>은 인증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가입자 또는 <u>공인인증서</u>를 신뢰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u>공인인증기관</u>이 과실 없음을 입증하면 그 배상책임이 면제된다.</p> <p>② <u>공인인증기관</u>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p>	<p>제26조(배상책임) ① <u>지정인증기관</u>----- ----- -----<u>지정인증서</u>----- ----- ----- ----- <u>지정인증기관</u>----- ----- ----- ② <u>지정인증기관</u>----- ----- -----.</p>
<p>제26조의2(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생략)</p> <p>1.~9. (생략)</p>	<p>제26조의2(전자서명인증제도의 발전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현행과 같음)</p> <p>1.~9. (현행과 같음)</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10. <u>공인인증기관의 안전성 확보</u>를 위한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p> <p>11.~13. (생략)</p>	<p>10. <u>지정인증기관</u>----- -----</p> <p>11.~13. (현행과 같음)</p>
<p>제27조의2(상호인정) ① (생략)</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외국의 인증기관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이 발급한 인증서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u>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u>와 동일한 법적 지위 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정이 체결된 경우 외국의 전자서명 또는 인증서는 <u>공인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u>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p>	<p>제27조의2(상호인정)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u>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인증서</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지정전자서명 또는 지정인증서</u>----- -----.</p>
<p>제28조(요금 부과) <u>공인인증기관은 공인인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또는 인증역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u></p>	<p>제28조(요금 부과) <u>지정인증기관은 지정인증서</u>----- ----- ----- -----.</p>
<p>제31조(벌칙) (생략)</p> <p>1. 2. (생략)</p> <p>3.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의 명의로 <u>공인인증서</u>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한 자</p>	<p>제31조(벌칙) (현행과 같음)</p> <p>1. 2. (현행과 같음)</p> <p>3. ----- ----- <u>지정인증서</u>--- ----- -----</p>

전자서명법 (현 행)	전자서명법 (개정안)
<p>제32조(벌칙) (생 략)</p> <p>1. (현행과 같음)</p> <p>3. 제2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u>공인인증서</u>를 이용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p> <p>4. 제23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사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u>공인인증서</u>를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u>공인인증서</u>를 양도 또는 대여 받은 자</p>	<p>제32조(벌칙)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3. ----- ----- <u>지정인증서</u>----- -----</p> <p>4. ----- ----- ----- <u>지정인증서</u>----- ----- ----- <u>지정인증서</u>----- -----</p>
<p>제34조(과태료) ①(생 략)</p> <p>1.~4. (생 략)</p> <p>5. 제10조제3항 또는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u>공인인증기관</u>에게 가입자인증서 등을 인계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p> <p>6.~7의2. (생 략)</p> <p>8.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u>공인인증서</u>가 아닌 인증서 등을 <u>공인인증서</u>로 혼동하게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유사한 표시를 사용하거나 허위로 <u>공인인증서</u>의 사용을 표시한 자</p> <p>9. 제25조의3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 <u>공인인증기관의 공인인증서</u>만을 요구한 자</p> <p>10. (생 략)</p> <p>②~⑤ (생 략)</p>	<p>제34조(과태료) ①(현행과 같음)</p> <p>1.~4. (현행과 같음)</p> <p>5. ----- ----- <u>지정인증기관</u>----- -----</p> <p>6.~7의2. (현행과 같음)</p> <p>8. ----- ----- <u>지정인증서</u>----- ----- <u>지정인증서</u>----- ----- ----- <u>지정인증서</u>-----</p> <p>9. ----- ----- <u>지정인증기관의 지정인증서</u>----- -----</p> <p>10. (현행과 같음)</p> <p>②~⑤ (현행과 같음)</p>

【부록 9】『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신구조문대비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p><신 설></p>	<p>제45조의4(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제한)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그 호의 분류에 따라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1. 정보통신서비스의 수정 없이 디지털 콘텐츠를 송신하거나 경로를 지정하거나 연결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과정에서 디지털 콘텐츠를 그 송신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내에서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p> <p>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 콘텐츠등의 송신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p> <p>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디지털 콘텐츠등이나 그 수신자를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p> <p>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정</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p><u>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u></p> <p><u>라. 디지털 콘텐츠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권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u></p> <p>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디지털 콘텐츠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디지털 콘텐츠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p> <p><u>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u></p> <p><u>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 디지털 콘텐츠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u></p> <p><u>다.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 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디지털 콘텐츠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p>라. <u>디지털 콘텐츠등을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마. <u>디지털 콘텐츠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u></p> <p>바. <u>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디지털 콘텐츠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디지털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p><u>에 그 디지털 콘텐츠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u></p> <p>3. <u>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u></p> <p><u>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u></p> <p><u>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u></p> <p><u>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45조의5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u></p> <p><u>라. 제45조의5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u></p> <p>4. <u>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디지털 콘텐츠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p>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p> <p>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p>
<p><신 설></p>	<p>제45조의5(복제·전송의 중단)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제45조의4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p><u>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u></p> <p><u>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45조의4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u>④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p>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p> <p>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p> <p>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행)</p>	<p>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p>
	<p>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미래 창조과학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제45조의6(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4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정 계정의 해지 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 <p>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침해금지청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불법복제물의 삭제 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 3. 특정 계정의 해지 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p><u>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u></p>
<p><u><신 설></u></p>	<p><u>제45조의7(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u></p> <p><u>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u></p> <p><u>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u></p> <p><u>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u></p>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현 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p>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u><신 설></u></p>	<p>제45조의8(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디지털 콘텐츠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저작권법 (현 행)	저작권법 (개정안)
<p><u>적으로 침해하는 자의 계정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를 식별·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이용권한 계좌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03조의2, 제133조의2 및 제133조의3에서 같다)을 해지하는 방침을 채택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이행한 경우</u></p> <p><u>라. 디지털 콘텐츠등을 식별하고 보호하기 위한 기술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표준적인 기술조치를 관리자가 이용한 때에는 이를 수용하고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u></p> <p><u>2. 서비스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송신된 디지털 콘텐츠등을 후속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거나 수신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그 디지털 콘텐츠등을 자동적·중개적·일시적으로 저장하는 행위</u></p> <p><u>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u></p> <p><u>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그 디지털 콘텐츠등을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u></p> <p><u>다. 제공되는 디지털 콘텐츠등에 접근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지킨</u></p>	

저작권법 (현 행)	저작권법 (개정안)
<p><u>이용자에게만 임시저장된 디지털 콘텐츠등의 접근을 허용한 경우</u></p> <p>라. <u>디지털 콘텐츠를 복제·전송하는 자(이하 “복제·전송자”라 한다)가 명시한, 컴퓨터나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데이터통신규약에 따른 디지털 콘텐츠등의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지킨 경우. 다만, 복제·전송자가 그러한 저장을 불합리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현행화에 관한 규칙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u></p> <p>마. <u>디지털 콘텐츠등이 있는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 이용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적용한, 그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기술의 사용을 방해하지 아니한 경우</u></p> <p>바. <u>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 본래의 사이트에서 그 디지털 콘텐츠등이 삭제되었거나 접근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법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그 디지털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할</u></p>	

저작권법 (현 행)	저작권법 (개정안)
<p><u>수 없게 하도록 명령을 내린 사실을 실제로 알게 된 경우에 그 디지털 콘텐츠등을 즉시 삭제하거나 접근할 수 없게 한 경우</u></p> <p>3. <u>복제·전송자의 요청에 따라 디지털 콘텐츠등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컴퓨터에 저장하는 행위</u></p> <p>가. <u>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u></p> <p>나. <u>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침해행위를 통제할 권한과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침해행위로부터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얻지 아니한 경우</u></p> <p>다. <u>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침해를 실제로 알게 되거나 제103조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통하여 침해가 명백하다는 사실 또는 정황을 알게 된 때에 즉시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킨 경우</u></p> <p>라. <u>제103조제4항에 따라 복제·전송의 중단요구 등을 받을 자를 지정하여 공지한 경우</u></p> <p>4. <u>정보검색도구를 통하여 이용자에게 정보통신망상 디지털 콘텐츠등의 위치를 알 수 있게 하거나 연결하는 행위</u></p>	

저작권법 (현 행)	저작권법 (개정안)
<p>가. 제1호가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p> <p>나. 제3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 의한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책임 제한과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의 서비스 안에서 침해행위가 일어나는지를 모니터링하거나 그 침해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조사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p>	
<p>제103조(복제·전송의 중단) 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제102조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서비스를 이용한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에 따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자신의 권리가 침해됨을 주장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권리주장자”라 한다)는 그 사실을 소명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킬 것을 요구할 수 있다.</p>	<p><삭 제></p>

저작권법 (현 행)	저작권법 (개정안)
<p>② <u>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권리주장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0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그 디지털 콘텐츠등의 복제·전송자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u></p> <p>③ <u>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복제·전송자가 자신의 복제·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임을 소명하여 그 복제·전송의 재개를 요구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재개요구사실 및 재개예정일을 권리주장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그 예정일에 복제·전송을 재개시켜야 한다. 다만,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소를 제기한 사실을 재개예정일 전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④ <u>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중단 및 그 재개의 요구를 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수령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자신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u></p>	

저작권법 (현 행)	저작권법 (개정안)
<p><u>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u></p> <p><u>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4항에 따른 공지를 하고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그 디지털 콘텐츠 등의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거나 재개시킨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의한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복제·전송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을 면제한다. 다만, 이 항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다른 사람에게 의한 디지털 콘텐츠 등의 복제·전송으로 인하여 그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가 침해된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제1항에 따른 중단을 요구받기 전까지 발생한 책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u>⑥ 정당한 권리 없이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그 디지털 콘텐츠 등의 복제·전송의 중단이나 재개를 요구하는 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u></p> <p><u>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명, 중단, 통보, 복제·전송의 재개, 수령인의 지정 및 공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u></p>	

저작권법 (현 행)	저작권법 (개정안)
<p><u>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u></p>	
<p><u>제103조의2(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법원 명령의 범위) ①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특정 계정의 해지</u> <u>2. 특정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합리적 조치</u> <p><u>② 법원은 제10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제123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만을 명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불법복제물의 삭제</u> <u>2. 불법복제물에 대한 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u> <u>3. 특정 계정의 해지</u> <u>4. 그 밖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최소한의 부담이 되는 범위에서 법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u> 	<p><u><삭 제></u></p>

저작권법 (현 행)	저작권법 (개정안)
<p>제103조의3(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의 청구) ① 권리주장자가 민사상의 소제기 및 형사상의 고소를 위하여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해당 복제·전송자의 성명과 주소 등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이를 거절한 경우 권리주장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그 정보의 제공을 명령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으면 제122조의6에 따른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p> <p>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제2항의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정보를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한 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라 해당 복제·전송자의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p>	<p><삭 제></p>

저작권법 (현 행)	저작권법 (개정안)
<p><u>정보를 제1항의 청구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 <u>⑤ 그 밖에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p><u>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디지털 콘텐츠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이하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라 한다)는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디지털 콘텐츠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권리자의 요청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u></p>	<p><u><삭 제></u></p>